## 안동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 1. 감사 개요

가. 감사기간 : 2020. 7. 6. ~ 7. 17. [10일간]

나. 감사인원 : 14명

#### 2.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유형별 지적건수

구 분	조직·인사	예산·회계	입시·학사	산단·연구비	시설·재산	계
지적건수	13	9	9	10	5	46

나. 세부지적 및 처분 : "붙임" 처분서 참고

감사결과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학교(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감사결과 실명이 공개된 모든 학교(기관)가 비리에 연관되어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	전임교원 신규채용 기초심사 부적정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대학의	ㅇ 주의(1명)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교육공무원임용령」제4조의3 제3항에	
	따르면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은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며 기초심사는 채용	
	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을	
	심사하며, 「안동대학교 전임교원 공개채용 심사지침」	
	'8-다. 심사방법 및 심사내용'에 따르면 기초심사는 최종 하이노므과 케용보아이어 그저도 기다 여그시저므기	
	학위논문과 채용분야와의 근접도, 기타 연구실적물과 채용분야와의 근접도 등을 참조하여 전공일치 여부를	
	결정하며 10점 만점 중 6점 미만일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0/12/ 1/ 2/ 1/	
	- 안동대학교 ○과 교수 A은 2017학년도 2학기와	
	2018학년도 1학기 ○과 교수공채를 위한 기초심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전공적격 여부를 심사하면서, 지원자	
	B가 위 학기별 교수초빙 공고상의 초빙분야 및	
	지원자격이 ◢ 전공자로 ▶ 강의 가능자로 동일하고,	
	학위논문 등 심사자료와 학과의 채용요구서의 채용	
	분야 및 채용사유 또한 동일한데도 【붙임】"○과	
	교수공채 기초심사 결과"와 같이 위 지원자에 대하여	
	2017학년도 2학기에는 "적격(6.25점)"으로, 2018학년도 1학기에는 "부적격(2.5점)"으로 각각 평가한 사실이 있음	
	1 키 / [에도 구 기수(스/jg) 스포 시수 경/[인 //[길이 있급	

#### 【붙임】

#### ○과 교수공채 기초심사 결과

#### □ 2017-2학기(지원분야 : ◢)

학년도- 학기	접수 번호	지원자		내부위원		외부	위원	판정
			BE	BF	Α	BG	ВН	
2017-2	6	В	7.50	6.25	6.25	6.25	6.25	일치

※ 기초심사는 전체위원 중 1/2 이상이 적격(6점 이상)으로 결정하면 '전공일치'로 결정 (안동대 전임교원 공개채용 심사지침)

#### □ 2018-1학기(지원분야 : ◢)

학년도- 접수 지원 학기 번호 지원		지원자	내부위원			외부위원		판정	
			BE	BF	Α	BI	ВЈ		
2018-1	4	В	6.25	7.50	2.50	10.00	6.25	일치	

※ 기초심사는 전체위원 중 1/2 이상이 적격(6점 이상)으로 결정하면 '전공일치'로 결정 (안동대 전임교원 공개채용 심사지침)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	시간강사 위촉 부당	
	○「국가공무원법」제56조 및 제59조에 따르면 모든	ㅇ 경징계(2명)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 공정	
	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안동대학교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 제6조 및 제9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	
	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되고,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안동	
	대학교 겸임교원 등의 임용에 관한 규정」제33조에 따르면	
	시간강사는 학과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안동대학교 □과 교수 C은 자신의 정년퇴직	
	(2018.2.28.)으로 2018학년도 1학기 □과 '◎'과목을	
	시간강사에게 배정하는 것으로 2017학년도 2학기말	
	경 결정되자, 2018년 1월초 학과 교수회의에서 위	
	과목 관련 전공자가 아니며 강의경력이 없는 정보	
	산업공학 박사학위 소지자인 자신의 아들 ${ m D}^{1)}$ (박사학위	
	취득: 2015.2, 세부전공: 혁신경영)을 게임 관련 저서(저서명: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 실적을 근거로 해당 과목의 시간강사로 추천하	
	였으며, C과 D이 부자관계임을 알고 있던 학과장	
	교수 E은 해당 과목을 담당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시간강사를 찾기 위한 노력없이 D에 대한 학위 및	
	전공, 저서 실적에 대한 위 C의 구두설명만으로 2018	
	학년도 1학기 □과(석사과정) '♡' 과목의 시간강사 추천	
	대상자로 위 D을 확정하고 2018.1.25. 시간강사 추천	
	공문을 □과로 제출한 사실이 있음	
	1) 박사학위 <del>논문</del> : - 영향	
	1) 국사극자 근군ㆍ 08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	조교채용 부적정	
	<ul> <li>「교육공무원법」제2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를 말하며, 「국가공무원법」제2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고, 「안동대학교 조교 인사관리 지침」제7조에 따르면 학과에</li> </ul>	ㅇ 경고(2명)
	근무하는 조교는 소속 학과장과 단과대학장의 추천 으로 총장이 임용하며, 학과에서 조교 추천 시 공개 채용 절차(홈페이지 공고 등)를 거쳐 추천하도록 하고 있고, 매 학년도 학기 이전 □과에서 시행하는 '조교 신규임용 추천 안내' 공문에 따르면 조교의 신규 임용은 학과별로 기본자격, 우대조건 등을 포함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한 후 공개채용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 안동대학교 △과 F은 △과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다는 이유로 2017학년도 1학기 조교 신규임용 대상자를 채용공고 절차없이 학과 교수 추천으로 교육대학원 『전공 졸업자인 G를 2017.1.12. 조교 임용 대상자로 결정하고 □과에 추천하는 등 【붙임】 "채용공고없이 임용한 조교 현황"과 같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위 △과 F 등 2명은 조교 신규임용을 채용공고 절차없이 신규임용 대상자를 결정하고 □과로 추천한 사실이 있음	

### 【붙임】

### 채용공고없이 임용한 조교 현황

연번	학과명	임용일자	조교 임용자	채용공고	학과장	비고
1	△과	2017.3.1.	G	×	F	
2	<b>△</b> 과	2019.3.1.	Н	×	I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	무기계약직 연가보상비 미지급	
	○ 「국가공무원법」제56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ㅇ 경고(6명)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제3조, 제5조 및 제60조에 따르면 이	ㅇ 통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 무기계약직 연가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8,926,260원을 지급 하기 바람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0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고 있고,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안동	
	대학교 무기계약직 취업규칙」제14조에 따르면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도,	
	- 안동대학교는 ▷과 J의 2017년도 연가잔여일수가 13일	
	인데도 무기계약직 연가보상비 예산 미편성을 이유로	
	연가보상비 1,489,33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붙임】	
	"무기계약직 연가보상비 미지급 현황"과 같이 2017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년부터 2018년까지 무기계약직 연가보상비 예산	, =
	미편성을 이유로 위 J 등 무기계약직 총 18명에 대한	
	연가보상비 합계 8,926,26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붙임】

### 무기계약직 연가보상비 미지급 현황

(단위 : 원)

연도	연번	부서	직급	성명	근로기준법상 연가일수	사용 일수	잔여 일수	연가보상비 미지급액	비고
2017	1	▷과	무기계약직	J	20	7	13	1,489,330	
2017	2	-	무기계약직	-	19	13	6	375,040	
2017	3	■실	무기계약직	-	19	18	1	62,500	
2017	4	-	무기계약직	-	18	16	2	215,420	
2017	5	-	무기계약직	ı	17	9	8	517,200	
2017	6	<b>◀</b> 과	무기계약직	1	17	12	3	168,110	연가저축(2일)
2017	7	-	무기계약직	-	17	11	6	387,900	
2017	8	-	무기계약직	-	16	12	4	510,310	
2017	9	-	무기계약직	-	18	13	5	476,550	
2017	10	-	무기계약직	-	3	1	2	161,080	
			2017년 소개					4,363,440	
2018	11	-	무기계약직	J	21	5	16	1,960,420	
2018	12	-	무기계약직	-	20	15	5	345,640	
2018	13	■실	무기계약직	ı	20	19	1	69,120	
2018	14	-	무기계약직	-	18	10	8	570,480	
2018	15	-	무기계약직	-	17	16	1	135,880	
2018	16	-	무기계약직	-	14	11	3	329,560	
2018	17	-	무기계약직	-	14	11	3	329,560	
2018	18	-	무기계약직	-	19	11	8	822,160	
	'		2018년 소개	1				4,562,820	
			합계					8,926,260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5	일상감사 미실시	
	○ 「안동대학교 일상감사 지침」제4조에 따르면 일상감사	○기관경고
	대상 분야 및 감사사항은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1천	
	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제조·처분 또는 용역 계약	
	(재산 취득·처분 포함) 등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안동대학교는 2017. 2. 24. '전자문서 및 자료관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용역'계약(계약금액 14,000천원)을 하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붙임】 "일상감사 미실시 현황"과 같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위 '전자문서	
	및 자료관 시스템운영 유지보수 용역'등 총 45건의	
	일상감사 대상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일상감사 미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회계명	연도별	사업명	계약일	계약금액	근 거 법 령	사 유
1	대학회계	2017	전자문서 및 자료관 시스템운영 유지보수 용역	2017-02-24	14,00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제3호	소프트웨워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2	대학회계	2017	-	2017-03-01	14,40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5호 다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
3	대학회계	2017	-	2017-03-02	14,60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 자목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대학회계	2017	-	2017-06-19	17,7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2호 차목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5	대학회계	2017	-	2017-06-19	21,2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2호 차목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6	대학회계	2017	-	2017-07-05	15,00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호 2항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7	대학회계	2017	-	2017-12-18	40,8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5호 가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8	대학회계	2017	-	2017-12-19	148,3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 자목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9	대학회계	2017	-	2018-01-12	13,04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 자목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10	대학회계	2017	-	2018-02-05	30,9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 자목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11	대학회계	2017	-	2018-02-05	27,6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 자목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12	발전기금 회계	2017	-	2017-05-01	11,66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2호 바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
13	발전기금 회계	2017	-	2017-05-08	10,67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2호 바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
14	발전기금 회계	2017	-	2017-09-07	13,50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2호 바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
15	대학회계	2018	-	2018-02-28	14,60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 자목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연번	회계명	연도별	사업명	계약일	계약금액	근 거 법 령	사 유
	-1/11/0		7 1 8 0	71111	711-111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16	대학회계	2018	-	2018-03-01	14,400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5호 다목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
17	대학회계	2018	-	2018-05-28	849,00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4호 라목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18	대학회계	2018	-	2018-07-06	19,85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 계약
19	대학회계	2018	-	2018-07-09	12,24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호 2항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2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0	대학회계	2018	-	2018-07-11	13,5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호 2항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1	대학회계	2018	-	2018-10-23	11,00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5호 가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
22	대학회계	2018	-	2018-11-29	15,00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마목
23	대학회계	2018	-	2018-12-10	164,2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 자목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4	대학회계	2018	-	2018-12-19	41,10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5호 가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25	대학회계	2018	-	2018-12-31	33,39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 자목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6	대학회계	2018	-	2019-02-20	19,90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5호 가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
27	대학회계	2019	-	2019-02-28	14,60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 자목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8	대학회계	2019	-	2019-03-01	14,40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5호 다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
29	대학회계	2019	-	2019-03-31	13,77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 자목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0	대학회계	2019	-	2019-05-23	19,50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 계약
31	대학회계	2019	-	2019-07-08	12,25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5호 가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
32	대학회계	2019	-	2019-07-12	20,84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5호 가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
33	대학회계	2019	-	2019-07-15	13,4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 계약

연번	회계명	연도별	사업명	계약일	계약금액	근 거 법 령	사 유
34	대학회계	2019	-	2019-10-01	13,95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5호 가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
35	대학회계	2019	-	2019-12-12	15,40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5호 가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
36	대학회계	2019	-	2019-12-17	177,6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 자목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7	대학회계	2019	-	2019-12-17	43,29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5호 가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38	대학회계	2019	-	2019-12-18	21,32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 자목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9	대학회계	2019	-	2019-12-19	22,70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 자목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0	대학회계	2019	-	2019-12-19	18,59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5호 가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
41	대학회계	2019	-	2020-01-14	18,00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6호 가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
42	대학회계	2020	-	2020-02-28	11,00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 계약
43	대학회계	2020	-	2020-02-28	15,30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 자목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4	대학회계	2020	-	2020-02-28	10,79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 자목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5	대학회계	2020	-	2020-03-01	14,40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5호 다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6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 부적정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및 제78조에 따르면	ㅇ경고(5명)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대통령 훈령)」 제4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의 범죄사건 중 혐의없음 결정은 내부	
	종결처리 하되,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안동대학교는 2018. 1. 4. △과 K이 ⊠청으로부터	
	폭행죄, 모욕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대한 검토 없이 2018. 6. 8. 임의로 내부종결처리하는	
	등【붙임】"공무원 범죄통보사건 임의 내부종결 처리	
	현황"과 같이 2017. 1.부터 2018. 1.까지 위 K 등 교직원	
	2명의 범죄사실 통보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대한 검토 없이 임의로 내부종결처리한	
	사실이 있음.	

### 【붙임】

### 공무원 범죄통보사건 임의 내부종결 처리 현황

연번	통보기관 (통보일)	직	성명	죄명	처분내용	범죄사실
1	⊠청 (2018. 1. 4.)	-	K	폭행, 모욕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2	⊠청 (2017. 1. 24.)	ı	ВК	절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7	교육공무원 징계 감경 부당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4조에	○ 경징계(1명)
	따르면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 경고(1명)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하고, 징계	
	위원회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칙」 별표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폭력 비위의 징계기준은 비위의 정도 과실에 따라	
	파면, 해임으로 되어 있고,「국가공무원법」제82조 제2항	
	및「교육공무원 징계령」제20조의2에 따르면 징계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	
	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징계의결을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직근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	
	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도,	
	- 안동대학교는 2019. 1. 7. ⊕청으로부터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재물손괴(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비위사실을 통보받은 ▲과 L에 대해	
	'공무원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의 사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하였음에도, 안동대학교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BD)는	
	2019. 1. 28. 위 L에 대해 징계처분을 의결하면서 성폭력	
	범죄 행위(징계기준, 파면 또는 해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데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성폭력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징계를 감경하여 정직3개월로 처분	
	의결한 사실이 있고,	
	· M은 2019. 1. 29. 위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직근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하지 않고 '정직3개월'로 처분한 사실이 있음.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8	복무 미처리 공무외 국외여행 등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3조 및 제24조에	ㅇ경고(3명)
	따르면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	ㅇ주의(2명)
	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고,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ㅇ통보
	결근으로 처리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8조에	- 중무의 목의역앵글
	따르면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관리하며,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 등을	규정에 따라 복무 처리를 하도록 철저히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과리하기 바람
	되어 있고,「안동대학교 무기계약직 취업규칙」제5조,	
	제15조 및 제27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법령 및 직무상	○시정(회수)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종	- 부당하게 지근 바으
	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질병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연기보상비 347,790원,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근 예정일 전날	결단 시네시 6/개에
	까지 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1 2 ( 010 01 0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근에 대하여는 무단결근	관련자들로부터
	으로 보고, 결근일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해당 일분을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감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세입조치하기 바람
	- 안동대학교 ▽과 N는 복무처리를 하지 않은 채	
	2020. 1. 15.(수)부터 2020. 1. 19.(일)까지 공무외 국외	
	여행을 하는 등 【붙임1】 "복무 미처리 공무외	
	국외여행 현황"과 같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위 N 등	
	교직원 5명은 총 5회에 걸쳐 복무처리를 하지 않은 채	
	공무외 국외여행을 실시한 사실이 있고,	
	· 나아가, 〈관 O는 복무 미처리 공무외 국외여행일	
	[2018.3.23.(금)~2018.3.26.(월)]을 연가에서 공제하지	
	않고 연가보상비 180,900원을 지급받는 등 【붙임2】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연가보상비 및 보수 과다 수령 내역"과 같이 2018년부	
	터 2019년까지 위 O 등 교직원 3명은 복무 미처리	
	공무외 국외여행일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 347,790원과	
	결근처리 시 공제되어야 할 보수 229,020원 합계	
	576,810원을 더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붙임1】

### 복무 미처리 공무외 국외여행 현황

연번	소속	ス) ユ	성명	여행기	기간
선빈	公告	직급		출발	도착
1	▽과	-	N	2020-01-15(수)	2020-01-19(일)
2	<b>★</b> 과	-	-	2017-02-22(수)	2017-03-04(토)
3	</td <td>-</td> <td>0</td> <td>2018-03-23(금)</td> <td>2018-03-26(월)</td>	-	0	2018-03-23(금)	2018-03-26(월)
4	-	-	-	2018-08-15(수)	2018-08-19(일)
5	-	-	-	2019-06-08(토)	2019-06-11(화)

#### 【붙임2】

### 연가보상비 및 보수 과다 수령 내역

연번	소속	직급	성명	복무미 처리일	기지급	수 연가보상		연가보상	결근일	결근시	회수액합계
언민	소득	석합	78 18	시디딜 (a)	일수 (b)	연가보상비	일수 (a+b)	연가보상비	설근됩	공제보수액	외구백합계
1	<1 관	-	0	3	12	723,600	9	542,700	-	-	180,900
2	-	-	-	2	0	-	0	-	2	229,020	229,020
3	-	-	-	2	2	166,890	0	-	-	-	166,890
					합계						576,810

<sup>※ [</sup>붙임1] 연번 1~2은 연가보상비 미지급자

9 복무 미처리 대학원 강의수강 등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8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 경고(2명)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에는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장계 관련에규(인사형신처예규)」 제9장에는 공무원은 개인별 법정연가일수범위 안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수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연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 「안동대학교 무기계약지취업규칙」 제5조,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근로자는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하여야 하며질서를 존종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9시부터 2017학년도 2학기까지 안동대학교 ●원 ◇과 석사과정에 재학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4조에는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하도록되어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제9장에는 공무원은 개인별 법정연가일수범위 안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수학할 수 있으며,이경우 허가권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연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 「안동대학교 무기계약직취업규칙」제5조,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근로자는법령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하여야 하며질서를 존중하여야하고,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9시부터 18시하지로 하고,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4조에는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하도록되어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장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제9장에는 공무원은 개인별 법정연가일수범위 안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수학할 수 있으며,이 경우 허가권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연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안동대학교 무기계약직취업규칙」제5조,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근로자는법령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하여야하며질서를 존종하여야하고,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 안동대학교 ◇과 P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7학년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4조에는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하도록되어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제9장에는 공무원은 개인별 법정연가일수범위 안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수학할 수 있으며,이 경우 허가권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연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 「안동대학교 무기계약직취업규칙」제5조,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근로자는법령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하여야하며질서를 존종하여야하고,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 안동대학교 ◇과 P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7학년도
에는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 혁신처 예규)」 제9장에는 공무원은 개인별 법정연가일수 범위 안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수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연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 「안동대학교 무기계약직취업규칙」 제5조,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근로자는법령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하여야하며질서를 존종하여야하고,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 안동대학교 ◇과 P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7학년도
되어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 혁신처 예규)」제9장에는 공무원은 개인별 법정연가일수 범위 안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수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 「안동대학교 무기계약직취업규칙」제5조,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종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 안동대학교 ◇과 P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7학년도
혁신처 예규)」제9장에는 공무원은 개인별 법정연가일수 범위 안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수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안동대학교 무기계약직취업규칙」제5조,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종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 안동대학교 ◇과 P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7학년도
범위 안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수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안동대학교 무기계약직취업규칙」제5조,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종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 안동대학교 ◇과 P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7학년도
이 경우 허가권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 「안동대학교 무기계약직취업규칙」제5조,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종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 안동대학교 ◇과 P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7학년도
취업규칙」제5조,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종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9시 부터 18시까지로 하고,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 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 안동대학교 ◇과 P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7학년도
취업규칙」제5조,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종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9시 부터 18시까지로 하고,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 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 안동대학교 ◇과 P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7학년도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종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 안동대학교 ◇과 P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7학년도
부터 18시까지로 하고,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 안동대학교 ◇과 P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7학년도
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 안동대학교 ◇과 P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7학년도
- 안동대학교 ◇과 P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7학년도
2학기까지 안동대학교 ●원 ◇과 석사과정에 재학하
면서 복무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근무시간에 '즉
(목요일 9:00~11:50)' 등 10개 교과목을 총 151회(합계 408시간)에
절쳐 수강하는 등 【붙임1】 "복무 미처리 대학원 수강 현황"과 같이 2015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2학기
까지 위 P 등 교직원 5명은 복무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근무시간 중에 본교 대학원 석·박사과정 36개
교과목을 총 479회(합계 1,138시간)에 걸쳐 수강한 사실이
있음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 나아가, 위 P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복무 미처리	
	대학원 수강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 813,140원을	
	지급받는 등 【붙임2】"연가보상비 및 보수 과다	
	수령 내역"과 같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위 P 등	
	교직원 5명은 근무시간 중 대학원 수강으로 공제되어야	
	할 연가보상비 1,830,290원과 결근처리 시 공제되어야	
	할 보수 5,609,430원 합계 7,439,720원을 더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붙임1】

### 복무 미처리 대학원 수강 현황

순	소속	직급	성명	학위 과정	학년도	과목명	일자	요일	교시	수업시간	연가미		비고
					2016-1	-	2016-03-03	목	1,2,3	09:00~11:50	9:00	11:50	2:50
					2016-1	-	2016-03-10	목	1,2,3	09:00~11:50	9:00	11:50	2:50
					2016-1	-	2016-03-17	목	1,2,3	09:00~11:50	9:00	11:50	2:50
					2016-1	-	2016-03-24	목	1,2,3	09:00~11:50	9:00	11:50	2:50
					2016-1	-	2016-03-31	목	1,2,3	09:00~11:50	9:00	11:50	2:50
					2016-1	-	2016-04-20	수		09:00~11:50	9:00	11:50	2:50
					2016-1	-	2016-04-21	목		09:00~11:50	9:00	11:50	2:50
					2016-1	-	2016-04-28	목	1,2,3	09:00~11:50	9:00	11:50	2:50
					2016-1	-	2016-05-05	목		09:00~11:50	9:00	11:50	2:50
					2016-1	-	2016-05-12	목		09:00~11:50	9:00	11:50	2:50
					2016-1	-	2016-05-19	목		09:00~11:50	9:00	11:50	2:50
					2016-1	-	2016-06-01	수		09:00~11:50	9:00	11:50	2:50
					2016-1	-	2016-06-02	목	1,2,3	09:00~11:50	9:00	11:50	2:50
					2016-1	=	2016-06-09	목		09:00~11:50		11:50	2:50
					2016-1	-	2016-06-16	목		09:00~11:50	9:00	11:50	2:50
					2016-1	-	2016-03-07	월	1,2,3	09:00~11:50	9:00	11:50	2:50
					2016-1	-	2016-03-14	월	1,2,3	09:00~11:50	9:00	11:50	2:50
					2016-1	-	2016-03-21	월		09:00~11:50	10:00	11:50	1:50
					2016-1	-	2016-03-28	월		09:00~11:50	9:00		2:50
					2016-1	=	2016-04-04	월	1,2,3	09:00~11:50	9:00	11:50	2:50
					2016-1	-	2016-04-11	월	1,2,3	09:00~11:50	9:00	11:50	2:50
					2016-1	-	2016-04-18	월	1,2,3	09:00~11:50	9:00	11:50	2:50
					2016-1	-	2016-04-25	월	1,2,3	09:00~11:50	9:00	11:50	2:50
					2016-1	-	2016-05-02	월		09:00~11:50	10:00	11:50	1:50
					2016-1	-	2016-05-09	월	1,2,3	09:00~11:50	9:00	11:50	2:50
					2016-1	-	2016-05-16	월	1,2,3	09:00~11:50	9:00	11:50	2:50
					2016-1	-	2016-05-23	월	1,2,3	09:00~11:50	9:00	11:50	2:50
					2016-1	-	2016-05-30	월	1,2,3	09:00~11:50	9:00	11:50	2:50
1	◇과	-	Р	석사	2016-1	-	2016-06-10	금	1,2,3	09:00~11:50	9:00	11:50	2:50
					2016-1	-	2016-06-20	월	1,2,3	09:00~11:50	9:00	11:50	2:50
					2016-1	-	2016-03-02	수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6-1	-	2016-03-09	수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6-1	-	2016-03-16	수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6-1	-	2016-03-23	수		13:00~15:50			2:50
					2016-1	-	2016-03-30	수		13:00~15:50			2:50
					2016-1	-	2016-04-06	수		13:00~15:50			2:50
					2016-1		2016-04-13	수		13:00~15:50	-		2:50
					2016-1		2016-04-20	수		13:00~15:50			2:50
					2016-1		2016-04-27	수		13:00~15:50			2:50
					2016-1		2016-05-04	수		13:00~15:50			2:50
					2016-1	-	2016-05-17	화		09:00~11:50			2:50
					2016-1	-	2016-05-18			13:00~15:50			2:50
					2016-1	-	2016-05-25	수		13:00~15:50			2:50
					2016-1	-	2016-06-01	수		13:00~15:50			2:50
					2016-1	-	2016-06-08	수		13:00~15:50			2:50
					2016-2	-	2016-09-02	금		13:00~15:50			2:50
					2016-2	=	2016-09-09	금		13:00~15:50			2:50
					2016-2	=	2016-09-16	금		13:00~15:50			2:50
					2016-2	-	2016-09-23	금		13:00~15:50			2:50
					2016-2		2016-09-30	급		13:00~15:50			2:50
					2016-2	-	2016-10-07	금		13:00~15:50			2:50
					2016-2	-	2016-10-14	금		13:00~15:50			2:50
					2016-2	-	2016-10-21	급		13:00~15:50			2:50
					2016-2	-	2016-10-28	급		13:00~15:50			2:50
					2016-2	-	2016-11-04	급		13:00~15:50			2:50
					2016-2	-	2016-11-11	급		13:00~15:50			2:50
					2016-2		2016-11-18	금	5,6,7	13:00~15:50	13:00	15:50	2:50

				청. 이							어기기	1 =1 -1	
순	소속	직급	성명	학위 과정	학년도	과목명	일자	요일	교시	수업시간	연가미 시		비고
				478	2016.2		2016 11 25	금	E 6 7	13:00~15:50			2.50
					2016-2	-	2016-11-25	금	5,6,7				2:50
					2016-2	-	2016-12-02		5,6,7	13:00~15:50			2:50
					2016-2	-	2016-12-12	월	5,6,7	13:00~15:50			2:50
					2016-2	-	2016-12-16	금	5,6,7	13:00~15:50			2:50
					2016-2	-	2016-09-07	수	1,2,3	09:00~11:50		11:50	2:50
					2016-2	-	2016-09-21	수		09:00~11:50		11:50	2:50
					2016-2	-	2016-09-28	수		09:00~11:50		11:50	2:50
					2016-2	-	2016-10-05	수	1,2,3	09:00~11:50		11:50	2:50
					2016-2	-	2016-10-12	수	1,2,3	09:00~11:50		11:50	2:50
					2016-2		2016-10-19	수	1,2,3	09:00~11:50		11:50	2:50
					2016-2		2016-10-26	수		09:00~11:50		11:50	2:50
					2016-2	-	2016-11-02	수	1,2,3	09:00~11:50		11:50	2:50
					2016-2	-	2016-11-09	수	1,2,3	09:00~11:50		11:50	2:50
					2016-2	=	2016-11-16	수	1,2,3	09:00~11:50		11:50	2:50
					2016-2	-	2016-11-23	수	1,2,3	09:00~11:50		11:50	2:50
					2016-2	-	2016-11-30	수		09:00~11:50		11:50	2:50
					2016-2	-	2016-12-07	수		09:00~11:50		11:50	2:50
					2016-2	-	2016-12-08	목		09:00~11:50		11:50	2:50
					2016-2	-	2016-12-14	수	1,2,3	09:00~11:50		11:50	2:50
					2016-2	-	2016-09-01	목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6-2	-	2016-09-08	목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6-2	-	2016-09-22	목	5,6,7	13:00~15:50			2:50
					2016-2	-	2016-09-29	목		13:00~15:50	13:00	15:50	2:50
					2016-2	-	2016-10-06	목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6-2	-	2016-10-13	목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6-2	-	2016-10-20	목	5,6,7	13:00~15:50			2:50
					2016-2	-	2016-10-27	목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6-2	-	2016-11-03	목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6-2	-	2016-11-10	목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6-2	-	2016-11-17	목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6-2	-	2016-11-24	목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6-2	-	2016-12-01	목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6-2	-	2016-12-09	금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6-2	-	2016-12-15	목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7-1	-	2017-03-02	목	1,2,3	09:00~11:50	9:00	11:50	2:50
					2017-1	-	2017-03-09	목	1,2,3	09:00~11:50	9:00	11:50	2:50
					2017-1	=	2017-03-16	목	1,2,3	09:00~11:50		11:50	2:50
					2017-1	-	2017-03-23	목		09:00~11:50		11:50	2:50
					2017-1	-	2017-03-30	목	1,2,3	09:00~11:50	9:00	11:50	2:50
					2017-1	-	2017-04-06	목	1,2,3	09:00~11:50	9:00	11:50	2:50
					2017-1	-	2017-04-13	목		09:00~11:50			2:50
					2017-1	-	2017-04-20	목		09:00~11:50			2:50
					2017-1	-	2017-04-27	목		09:00~11:50			1:50
					2017-1	-	2017-05-04	목		09:00~11:50			2:50
					2017-1	-	2017-05-11	목		09:00~11:50		11:50	2:50
					2017-1	-	2017-05-18	목		09:00~11:50			2:50
					2017-1	-	2017-05-25	목		09:00~11:50			2:50
					2017-1	-	2017-06-01	목		09:00~11:50			0:50
					2017-1	-	2017-06-15	목		09:00~11:50			2:50
					2017-1	-	2017-03-03	금		13:00~15:50			2:50
					2017-1	-	2017-03-10	급		13:00~15:50			2:50
					2017-1	-	2017-03-17	금		13:00~15:50			2:50
					2017-1	-	2017-03-24	금		13:00~15:50			2:50
					2017-1	-	2017-03-27	금		13:00~15:50			2:50
					2017-1	-	2017-04-07	금		13:00~15:50			2:50
					2017-1		2017-04-14	금		13:00~15:50			2:50
					2017-1	_	2017-04-21	금		13:00~15:50			2:50
					2017-1	-	2017-04-28	금		13:00~15:50			2:50
					2017-1	-	2017-05-12	금	5,6,7				2:50
					2017-1	-	2017-05-19	금		13:00~15:50			2:50
					2017-1	-	2017-05-26	금		13:00~15:50			2:50
i					2017-1	-	2017-06-02 2017-06-09	금금		13:00~15:50 13:00~15:50			2:50 2:50
					2017-1								

순	소속	직급	성명	학위 과정	학년도	과목명	일자	요일	교시	수업시간	연가미처리 시간	비고
				-10	2017-1	_	2017-06-16	금	5,6,7	13:00~15:50		2:50
					2017-1	_	2017-03-06	<u>월</u>		13:00~15:50		2:50
					2017-1	_	2017-03-13	월		13:00~15:50		2:50
					2017-1	_	2017-03-20	월		13:00~15:50		2:50
					2017-1	-	2017-03-27	월		13:00~15:50		2:50
					2017-1	-	2017-04-03	월		13:00~15:50		2:50
					2017-1	-	2017-04-10	월		13:00~15:50		2:50
					2017-1	-	2017-04-17	월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7-1	-	2017-04-24	월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7-1	-	2017-05-01	월		13:00~15:50		2:50
					2017-1	-	2017-05-08	월		13:00~15:50		2:50
					2017-1	-	2017-05-15	월		13:00~15:50		2:50
					2017-1	-	2017-05-22	월		13:00~15:50		2:50
					2017-1	-	2017-05-29	월		13:00~15:50		2:50
					2017-1	-	2017-06-05	월		13:00~15:50		2:50
					2017-1	-	2017-06-19 2017-09-06	월		13:00~15:50 13:00~14:50		2:50 1:50
					2017-2	-	2017-09-06	수	_			
					2017-2	_	2017-09-13	수 수	5,6 5,6	13:00~14:50 13:00~14:50		1:50 1:50
					2017-2	-	2017-09-20	<u>ㅜ</u> 수	5,6	13:00~14:50		1:50
					2017-2		2017-09-27	구 수		13:00~14:50		1:50
					2017-2	_	2017-10-11	<u></u> 수	5,6	13:00~14:50		1:50
					2017-2	_	2017-10-25	<u>수</u>	5,6	13:00~14:50		1:50
					2017-2	-	2017-11-01	<u>수</u>	5,6	13:00~14:50		1:50
					2017-2	-	2017-11-08	수	5,6	13:00~14:50		1:50
					2017-2	-	2017-11-15	수	5,6	13:00~14:50	13:00 14:50	1:50
					2017-2	-	2017-11-22	수		13:00~14:50		1:50
					2017-2	-	2017-11-23	수	5,6	13:00~14:50		1:50
					2017-2	-	2017-12-06	수	5,6	13:00~14:50		1:50
					2017-2	-	2017-12-13	수		13:00~14:50		1:50
					2017-2	2 -11	2017-12-20	수	5,6	13:00~14:50		1:50
					2017-1	소계	2017-03-02	목	1,2,3	09:00~11:50		407:50 2:50
					2017-1	-	2017-03-02	목	, ,	09:00~11:50	9:00 11:50	2:50
					2017-1	_	2017-03-16	목		09:00~11:50		2:50
					2017-1	_	2017-03-23	목		09:00~11:50		2:50
					2017-1	-	2017-03-30	목		09:00~11:50	9:00 11:50	2:50
					2017-1	-	2017-04-06	목	1,2,3	09:00~11:50	9:00 11:50	2:50
					2017-1	-	2017-04-13	뫅	1,2,3	09:00~11:50	9:00 11:50	2:50
					2017-1	-	2017-04-20	목		09:00~11:50		
					2017-1	-	2017-04-27	뫅		09:00~11:50		2:50
					2017-1	-	2017-05-04	막 [		09:00~11:50		
					2017-1	-	2017-05-11	막 ㅁ		09:00~11:50		2:50
					2017-1	-	2017-05-18	목 목		09:00~11:50 09:00~11:50		2:50 2:50
					2017-1 2017-1	-	2017-05-25 2017-06-01	<u></u> 목		09:00~11:50		2:50
					2017-1		2017-06-01	목		09:00~11:50		2:50
	A . 3			,,,,	2017-1	-	2017-03-03	급		13:00~15:50		2:50
2	◇과	-	-	석사	2017-1	_	2017-03-10	금	' '	13:00~15:50		2:50
•					2017-1	-	2017-03-17	금		13:00~15:50		2:50
					2017-1	-	2017-03-24	금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7-1 2017-1	-	2017-03-27	급급		13:00~15:50 13:00~15:50		2:50
					2017-1 2017-1		2017-03-27 2017-04-07	급급	5,6,7 5,6,7	13:00~15:50 13:00~15:50	13:00 15:50 13:00 15:50	2:50 2:50
					2017-1 2017-1 2017-1	-	2017-03-27 2017-04-07 2017-04-14	112 112 112	5,6,7 5,6,7 5,6,7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 15:50 13:00 15:50 13:00 15:50	2:50 2:50 2:50
					2017-1 2017-1 2017-1 2017-1	-	2017-03-27 2017-04-07 2017-04-14 2017-04-21	市市市市	5,6,7 5,6,7 5,6,7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 15:50 13:00 15:50 13:00 15:50 13:00 15:50	2:50 2:50 2:50 2:50
					2017-1 2017-1 2017-1 2017-1 2017-1	- - - -	2017-03-27 2017-04-07 2017-04-14 2017-04-21 2017-04-28	市市市市市	5,6,7 5,6,7 5,6,7 5,6,7 5,6,7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 15:50 13:00 15:50 13:00 15:50 13:00 15:50 13:00 15:50	2:50 2:50 2:50 2:50 2:50
					2017-1 2017-1 2017-1 2017-1 2017-1 2017-1	- - - -	2017-03-27 2017-04-07 2017-04-14 2017-04-21 2017-04-28 2017-05-12	75 75 75 75 75 75	5,6,7 5,6,7 5,6,7 5,6,7 5,6,7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 15:50 13:00 15:50 13:00 15:50 13:00 15:50 13:00 15:50 13:00 15:50	2:50 2:50 2:50 2:50 2:50 2:50
					2017-1 2017-1 2017-1 2017-1 2017-1 2017-1 2017-1	- - - - -	2017-03-27 2017-04-07 2017-04-14 2017-04-21 2017-04-28 2017-05-12 2017-05-19	70 70 70 70 70 70 70	5,6,7 5,6,7 5,6,7 5,6,7 5,6,7 5,6,7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 15:50 13:00 15:50 13:00 15:50 13:00 15:50 13:00 15:50 13:00 15: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017-1 2017-1 2017-1 2017-1 2017-1 2017-1 2017-1 2017-1	- - - - -	2017-03-27 2017-04-07 2017-04-14 2017-04-21 2017-04-28 2017-05-12 2017-05-19 2017-05-26		5,6,7 5,6,7 5,6,7 5,6,7 5,6,7 5,6,7 5,6,7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     15:50       13:00     15:50       13:00     15:50       13:00     15:50       13:00     15:50       13:00     15:50       13:00     15:50       13:00     15: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017-1 2017-1 2017-1 2017-1 2017-1 2017-1 2017-1 2017-1 2017-1	- - - - - -	2017-03-27 2017-04-07 2017-04-14 2017-04-21 2017-04-28 2017-05-12 2017-05-19 2017-05-26 2017-06-02		5,6,7 5,6,7 5,6,7 5,6,7 5,6,7 5,6,7 5,6,7 5,6,7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 15:50 13:00 15:50 13:00 15:50 13:00 15:50 13:00 15:50 13:00 15:50 13:00 15:50 13:00 15: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017-1 2017-1 2017-1 2017-1 2017-1 2017-1 2017-1 2017-1 2017-1 2017-1	- - - - - - -	2017-03-27 2017-04-07 2017-04-14 2017-04-21 2017-05-12 2017-05-19 2017-05-26 2017-06-02 2017-06-09		5,6,7 5,6,7 5,6,7 5,6,7 5,6,7 5,6,7 5,6,7 5,6,7 5,6,7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     15:50       13:00     15:50       13:00     15:50       13:00     15:50       13:00     15:50       13:00     15:50       13:00     15:50       13:00     15:50       13:00     15:50       13:00     15: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017-1 2017-1 2017-1 2017-1 2017-1 2017-1 2017-1 2017-1 2017-1 2017-1	- - - - - - - -	2017-03-27 2017-04-07 2017-04-14 2017-04-21 2017-04-28 2017-05-12 2017-05-26 2017-06-02 2017-06-09 2017-06-16		5,6,7 5,6,7 5,6,7 5,6,7 5,6,7 5,6,7 5,6,7 5,6,7 5,6,7 5,6,7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     15:50       13:00     15:50       13:00     15:50       13:00     15:50       13:00     15:50       13:00     15:50       13:00     15:50       13:00     15:50       13:00     15:50       13:00     15: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017-1 2017-1 2017-1 2017-1 2017-1 2017-1 2017-1 2017-1 2017-1 2017-1	- - - - - - -	2017-03-27 2017-04-07 2017-04-14 2017-04-21 2017-05-12 2017-05-19 2017-05-26 2017-06-02 2017-06-09		5,6,7 5,6,7 5,6,7 5,6,7 5,6,7 5,6,7 5,6,7 5,6,7 5,6,7 5,6,7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15:50	13:00     15:50       13:00     15:50       13:00     15:50       13:00     15:50       13:00     15:50       13:00     15:50       13:00     15:50       13:00     15:50       13:00     15:50       13:00     15: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017-1	순	소속	직급	성명	학위 과정	학년도	과목명	일자	요일	교시	수업시간	연가미처리 시간	비고
2007-1						2017-1	-	2017-03-13	월	5,6,7	13:00~15:50		2:50
1							_						
2017-1						2017-1	_						
1	I												
2017-1						2017-1	_						2:50
1						2017-1	-	2017-04-17	월				2:50
1						2017-1	-	2017-04-24	월				2:50
1						2017-1	-	2017-05-01	월	5,6,7	13:00~15:50	13:00 15:50	2:50
18						2017-1	-	2017-05-08	월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7-1	-	2017-05-15	월	5,6,7	13:00~15:50	13:00 15:50	2:50
1						2017-1	-	2017-05-22	월		13:00~15:50	13:00 15:50	2:50
1						2017-1	-	2017-05-29			13:00~15:50	13:00 15:50	2:50
1						2017-1	-	2017-06-05					
2016-1						2017-1		2017-06-19	월	5,6,7	13:00~15:50		
1							소계						
A							-			-			
1							-						
A							-						
1	I							-					
1	I												
Section													
A	I												
A	I									-			
A													
A													
3													
1													
A													
Registrate										-			
Registration													
Registro													
							_						
Registro						2016-1	-	l					
- Heart Park Park Park Park Park Park Park Park						2016-1	-	2016-04-04	월				1:50
3						2016-1	-	2016-04-11	월	2,3,4	10:00~12:50	10:00 11:50	1:50
3 - 복사 2 106-1 - 2016-05-02 월 2,3,4 10:00~12:50 10:00 11:50 1:50 1:50 2016-1 - 2016-05-09 월 2,3,4 10:00~12:50 10:00 11:50 1:50 2016-1 - 2016-05-10 월 2,3,4 10:00~12:50 10:00 11:50 1:50 2016-1 - 2016-05-10 월 2,3,4 10:00~12:50 10:00 11:50 1:50 2016-1 - 2016-05-30 월 2,3,4 10:00~12:50 10:00 11:50 1:50 2016-1 - 2016-05-30 월 2,3,4 10:00~12:50 10:00 11:50 1:50 2016-1 - 2016-06-10 급 2,3,4 10:00~12:50 10:00 11:50 1:50 2016-1 - 2016-06-20 월 2,3,4 10:00~12:50 10:00 11:50 1:50 2016-1 - 2016-06-20 월 2,3,4 10:00~12:50 10:00 11:50 1:50 2016-1 - 2016-03-20 숙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6-1 - 2016-03-20 숙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6-1 - 2016-03-20 숙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6-1 - 2016-03-20 숙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6-1 - 2016-03-20 숙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6-1 - 2016-03-20 숙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6-1 - 2016-03-20 숙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6-1 - 2016-03-20 숙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6-1 - 2016-03-20 숙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6-1 - 2016-04-27 숙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6-1 - 2016-04-27 숙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6-1 - 2016-04-27 숙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6-1 - 2016-05-14 숙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6-1 - 2016-05-14 숙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6-1 - 2016-05-18 숙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6-1 - 2016-05-18 숙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6-1 - 2016-06-01 숙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6-1 - 2016-06-01 숙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6-1 - 2016-06-01 숙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6-1 - 2016-06-01 숙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6-1 - 2016-06-01 숙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6-1 - 2016-06-01 숙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6-1 - 2016-06-01 숙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6-1 - 2016-06-01 숙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6-1 - 2016-06-01 숙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6-1 - 2016-06-01 숙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6-1 - 2016-06-01 숙 5,6,7 13:00~15						2016-1	-	2016-04-18	월	2,3,4	10:00~12:50	10:00 11:50	1:50
Sample						2016-1	-	2016-04-25	_				
2016-1	2				서시	2016-1	-	2016-05-02	월	2,3,4	10:00~12:50	10:00 11:50	1:50
2016-1	3	-	_	_	1 4/1	2016-1	-	2016-05-09	월				1:50
2016-1							-						1:50
2016-1	I						-						
2016-1	I						-						
2016-1	I												
2016-1	I												
$\begin{array}{ c c c c c c c c c }\hline 2016-1 & - & 2016-03-16 & \dot{\frown} & 5,6,7 & 13:00~15:50 & 13:00 & 15:50 & 2:50\\\hline 2016-1 & - & 2016-03-23 & \dot{\frown} & 5,6,7 & 13:00~15:50 & 13:00 & 15:50 & 2:50\\\hline 2016-1 & - & 2016-04-07 & \begin{array}{ c c c c c c c c c c c }\hline 2016-1 & - & 2016-04-20 & \dot{\frown} & 5,6,7 & 13:00~15:50 & 13:00 & 15:50 & 2:50\\\hline 2016-1 & - & 2016-04-20 & \dot{\frown} & 5,6,7 & 13:00~15:50 & 13:00 & 15:50 & 2:50\\\hline 2016-1 & - & 2016-04-27 & \dot{\frown} & 5,6,7 & 13:00~15:50 & 13:00 & 15:50 & 2:50\\\hline 2016-1 & - & 2016-05-04 & \dot{\frown} & 5,6,7 & 13:00~15:50 & 13:00 & 15:50 & 2:50\\\hline 2016-1 & - & 2016-05-11 & \dot{\frown} & 5,6,7 & 13:00~15:50 & 13:00 & 15:50 & 2:50\\\hline 2016-1 & - & 2016-05-11 & \dot{\frown} & 5,6,7 & 13:00~15:50 & 13:00 & 15:50 & 2:50\\\hline 2016-1 & - & 2016-05-18 & \dot{\frown} & 5,6,7 & 13:00~15:50 & 13:00 & 15:50 & 2:50\\\hline 2016-1 & - & 2016-06-18 & \dot{\frown} & 5,6,7 & 13:00~15:50 & 13:00 & 15:50 & 2:50\\\hline 2016-1 & - & 2016-06-01 & \dot{\frown} & 5,6,7 & 13:00~15:50 & 13:00 & 15:50 & 2:50\\\hline 2016-1 & - & 2016-06-08 & \dot{\frown} & 5,6,7 & 13:00~15:50 & 13:00 & 15:50 & 2:50\\\hline 2016-1 & - & 2016-06-08 & \dot{\frown} & 5,6,7 & 13:00~15:50 & 13:00 & 15:50 & 2:50\\\hline 2016-2 & - & 2016-09-01 & \begin{array}{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begin{array}{c 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													
$\begin{array}{c 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	I												
$\begin{array}{c 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	I												
$\begin{array}{c 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	I												
$\begin{array}{c 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	I												
$\begin{array}{c 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	I												
$\begin{array}{ c c c c c c c c c }\hline 2016-1 & - & 2016-05-11 & \dot{7} & 5,6,7 & 13:00~15:50 & 13:00 & 15:50 & 2:50\\\hline 2016-1 & - & 2016-05-18 & \dot{7} & 5,6,7 & 13:00~15:50 & 13:00 & 15:50 & 2:50\\\hline 2016-1 & - & 2016-05-25 & \dot{7} & 5,6,7 & 13:00~15:50 & 13:00 & 15:50 & 2:50\\\hline 2016-1 & - & 2016-06-01 & \dot{7} & 5,6,7 & 13:00~15:50 & 13:00 & 15:50 & 2:50\\\hline 2016-1 & - & 2016-06-08 & \dot{7} & 5,6,7 & 13:00~15:50 & 13:00 & 15:50 & 2:50\\\hline 2016-1 & - & 2016-06-15 & \dot{7} & 5,6,7 & 13:00~15:50 & 13:00 & 15:50 & 2:50\\\hline 2016-2 & - & 2016-09-01 & \xi & 5,6,7 & 13:00~15:50 & 13:00 & 15:50 & 2:50\\\hline 2016-2 & - & 2016-09-08 & \xi & 5,6,7 & 13:00~15:50 & 13:00 & 15:50 & 2:50\\\hline 2016-2 & - & 2016-09-08 & \xi & 5,6,7 & 13:00~15:50 & 13:00 & 15:50 & 2:50\\\hline \end{array}$	I												
$\begin{array}{c 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	I												
$ \begin{array}{c 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													
$ \begin{array}{c 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	I												
2016-1	I												
2016-1	I							-					
2016-2	I						-	-					
2016-2     -     2016-09-08     목     5,6,7     13:00~15:50     13:00     15:50     2:50	I					2016-2	-			5,6,7	13:00~15:50	13:00 15:50	
								2016-09-08					2:50
	L					2016-2		2016-09-22	목				2:50

순	소속	직급	성명	학위	학년도	 과목명	일자	요일	교시	수업시간	연가미처리	비고
				과정	2016-2		2016-09-29	목	E 6 7	13:00~15:50	시간	2:50
					2016-2	<u>-</u>	2016-09-29	목		13:00~15:50		2:50
					2016-2	<u>-</u>	2016-10-00	수		13:00~15:50		2:50
					2016-2		2016-10-12	목		13:00~15:50		2:50
					2016-2	<u>-</u>	2016-10-27	목		13:00~15:50		2:50
					2016-2	-	2016-11-03	목		13:00~15:50		2:50
					2016-2	-	2016-11-10	목	- ' '	13:00~15:50		2:50
					2016-2	-	2016-11-17	목		13:00~15:50		2:50
					2016-2	_	2016-11-23	수	, ,	13:00~15:50		2:50
					2016-2	-	2016-12-01	목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6-2	-	2016-12-09	금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6-2	-	2016-12-15	목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6-2	-	2016-09-06	화	2,3,4	10:00~12:50	10:00 11:50	1:50
					2016-2	-	2016-09-13	화	2,3,4	10:00~12:50	10:00 11:50	1:50
					2016-2	-	2016-09-20	화	2,3,4	10:00~12:50	10:00 11:50	1:50
					2016-2	-	2016-09-27	화		10:00~12:50		1:50
1					2016-2	-	2016-10-04	화		10:00~12:50		1:50
					2016-2	-	2016-10-11	화		10:00~12:50		1:50
1					2016-2	-	2016-10-18	화		10:00~12:50		1:50
1					2016-2	-	2016-10-25	화		10:00~12:50		1:50
1					2016-2	-	2016-11-01	화		10:00~12:50		1:50
					2016-2	-	2016-11-08	화		10:00~12:50		1:50
					2016-2	-	2016-11-15	화		10:00~12:50		1:50
					2016-2 2016-2	-	2016-11-22 2016-11-29	화 화		10:00~12:50 10:00~12:50		1:50 1:50
					2016-2	<u>-</u>	2016-11-29	화		10:00~12:50		1:50
					2016-2		2016-12-00	화		10:00~12:50		1:50
					2016-2		2016-09-05	월		13:00~15:50		2:50
					2016-2		2016-09-12	월		13:00~15:50		2:50
					2016-2	_	2016-09-19	월	-	13:00~15:50		2:50
					2016-2	-	2016-09-26	월		13:00~15:50		2:50
					2016-2	-	2016-10-10	월		13:00~15:50		2:50
					2016-2	-	2016-10-17	월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6-2	-	2016-10-24	월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6-2	-	2016-10-31	월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6-2	-	2016-11-07	월		13:00~15:50		2:50
					2016-2		2016-11-14	월		13:00~15:50		2:50
					2016-2	-	2016-11-21	월		13:00~15:50		2:50
					2016-2	-	2016-11-28			13:00~15:50		
					2016-2	-	2016-12-05	월		13:00~15:50		
					2016-2	-	2016-12-13	화		13:00~15:50		2:50
					2016-2	-	2016-12-19	월		13:00~15:50		2:50
1					2017-1 2017-1	-	2017-03-07 2017-03-14	월 월		09:00~11:50 09:00~11:50		2:50 2:50
1					2017-1	<u>-</u>	2017-03-14	월		09:00~11:50		2:50
1					2017-1	<u> </u>	2017-03-20	월		09:00~11:50		2:50
1					2017-1		2017-03-21	월		09:00~11:50		2:50
1					2017-1		2017-03-28	월		09:00~11:50		2:50
1					2017-1	-	2017-04-25	월		09:00~11:50		2:50
1					2017-1	-	2017-05-02	월		09:00~11:50		2:50
1					2017-1	-	2017-05-16	월		09:00~11:50		2:50
1					2017-1	-	2017-05-23	월	1,2,3	09:00~11:50	9:00 11:50	2:50
					2017-1	-	2017-05-30	월	1,2,3	09:00~11:50	9:00 11:50	2:50
1					2017-1	-	2017-06-12	월		09:00~11:50		2:50
1					2017-1	-	2017-06-13			09:00~11:50		2:50
1					2017-1	-	2017-06-20	월		09:00~11:50		2:50
					2017-1	-	2017-03-08	수		09:00~11:50		2:50
1					2017-1	-	2017-03-15	수		09:00~11:50		2:50
					2017-1	-	2017-03-16	목		15:00~17:50		2:50
1					2017-1	-	2017-03-22	수모		09:00~11:50		2:50
1					2017-1	-	2017-03-23	목		15:00~17:50		2:50
1					2017-1 2017-1		2017-03-29 2017-04-19	수 수		09:00~11:50 09:00~11:50		2:50 2:50
Ц					2017-1	-	2017-04-19	T	1,2,3	09:00~11:50	9:00 11:50	∠:50

순	소속	직급	성명	학위 과정	학년도	과목명	일자	요일	교시	수업시간	연가미처리 시간	비고
					2017-1	-	2017-04-26	수	1,2,3	09:00~11:50	9:00 11:50	2:50
					2017-1	-	2017-05-10	수	1,2,3	09:00~11:50	9:00 11:50	
					2017-1	-	2017-05-17	수		09:00~11:50	9:00 11:50	
					2017-1	-	2017-05-24	수		09:00~11:50	9:00 11:50	2:50
					2017-1	-	2017-05-31	수		09:00~11:50	9:00 11:50	
					2017-1	-	2017-06-07	수		09:00~11:50	9:00 11:50	
					2017-1	-	2017-06-08	목		09:00~11:50	9:00 11:50	
					2017-1	 소계	2017-06-14	수	1,2,3	09:00~11:50	9:00 11:50 119호	
					2015-1	<u>-</u>	2015-03-05	목	8.9.10	16:00~18:50		
					2015-1	_	2015-03-19	목		16:00~18:50		
					2015-1	-	2015-03-26	목		16:00~18:50		
					2015-1	-	2015-04-02	목	8,9,10	16:00~18:50	16:00 18:00	2:00
					2015-1	-	2015-04-09	목	8,9,10	16:00~18:50	16:00 18:00	2:00
					2015-1	-	2015-04-16	바		16:00~18:50		
					2015-1	-	2015-04-23	목		16:00~18:50		
					2015-1	-	2015-04-30	목		16:00~18:50		
					2015-1	-	2015-05-07	목		16:00~18:50		
					2015-1	-	2015-05-14	목		16:00~18:50		
					2015-1 2015-1	=	2015-05-28	목 목		16:00~18:50 16:00~18:50		
					2015-1	<u>-</u>	2015-06-04	<u></u> 월		16:00~18:50		
					2015-1		2015-06-08	목		16:00~18:50		
					2015-1		2015-03-04	,		17:00~19:50		1:00
					2015-1	_	2015-03-11			17:00~19:50		
					2015-1	-	2015-03-18			17:00~19:50		
					2015-1	-	2015-03-25			17:00~19:50		
					2015-1	-	2015-04-01	수	9,10,11	17:00~19:50	17:00 18:00	1:00
					2015-1	-	2015-04-08		9,10,11	17:00~19:50	17:00 18:00	1:00
					2015-1	-	2015-04-15			17:00~19:50		
					2015-1	-	2015-04-29			17:00~19:50		
					2015-1	-	2015-05-06			17:00~19:50		
					2015-1	-	2015-05-13			17:00~19:50		
					2015-1 2015-1	-	2015-05-20 2015-05-27			17:00~19:50 17:00~19:50		
					2015-1	<u> </u>	2015-06-03			17:00~19:50		
4	-	-	-	박사	2015-1		2015-06-03			17:00~19:50		
					2015-2	_	2015-09-02	<u>수</u>		14:00~16:50		
					2015-2	-	2015-09-09			14:00~16:50		
					2015-2	-	2015-09-16	수		14:00~16:50		
					2015-2	-	2015-09-23	수		14:00~16:50		
					2015-2	-	2015-09-30	수		14:00~16:50		
					2015-2	-	2015-10-07	수		14:00~16:50		
					2015-2	-	2015-10-14	수		14:00~16:50		
					2015-2 2015-2	-	2015-10-21 2015-10-28	수		14:00~16:50 14:00~16:50		
					2015-2	-	2015-10-28	수 수		14:00~16:50 14:00~16:50		
					2015-2	<del>-</del>	2015-11-04	<u>ㅜ</u> 수		14:00~16:50		
					2015-2	<u>-</u> -	2015-11-11	<u></u> 수		14:00~16:50		
					2015-2	<u>-</u>	2015-11-15	<u></u> 수		14:00~16:50		
					2015-2	-	2015-12-02	<u>-</u> 수		14:00~16:50		
					2015-2	-	2015-12-16	<u>수</u>		14:00~16:50		
					2016-1	-	2016-03-02			17:00~19:50		
					2016-1	-	2016-03-09			17:00~19:50		
					2016-1	-	2016-03-16			17:00~19:50		
					2016-1	-	2016-03-23		-	17:00~19:50		
					2016-1	-	2016-03-30			17:00~19:50		
					2016-1	-	2016-04-06			17:00~19:50		_
					2016-1	-	2016-04-20			17:00~19:50		
					2016-1 2016-1	=	2016-04-27 2016-05-04			17:00~19:50 17:00~19:50		
					2016-1	<u>-</u>	2016-05-04			17:00~19:50 17:00~19:50		
					2016-1	<del>-</del>	2016-05-11			17:00~19:50		
			1		Z010-1	-	2010-03-23	17"	7,10,11	17.00-19.00	12.00 16.00	1.00

순	소속	직급	성명	학위	학년도	 과목명	일자	요일	교시	수업시간	연가미처리	비고
	- ,	, 1	0 0	과정	·					17:00~19:50	시간	, ,
					2016-1	<u>-</u>	2016-06-01		' '	17:00~19:50		1:00
					2016-1	<u> </u>	2016-06-08			17:00~19:50		1:00
					2016-2		2016-09-07		. , ,	17:00~19:50		1:00
					2016-2	-	2016-09-21			17:00~19:50		1:00
					2016-2	-	2016-09-28			17:00~19:50		1:00
					2016-2	_	2016-10-05			17:00~19:50		1:00
					2016-2	-	2016-10-12			17:00~19:50		1:00
					2016-2	-	2016-10-19	수	9,10,11	17:00~19:50	17:00 18:00	1:00
					2016-2	-	2016-10-26	수	9,10,11	17:00~19:50	17:00 18:00	1:00
					2016-2	-	2016-11-02	수	9,10,11	17:00~19:50	17:00 18:00	1:00
					2016-2	-	2016-11-09		· ·	17:00~19:50		1:00
					2016-2	-	2016-11-16			17:00~19:50		1:00
					2016-2	-	2016-12-07			17:00~19:50		1:00
					2016-2	-	2016-12-14	수 화		17:00~19:50		1:00
					2016-2	-	2016-12-20 2016-09-07	_ '	-	15:00~17:50		2:50 2:50
1					2016-2	<u>-</u>	2016-09-07	수 수		13:00~15:50 13:00~15:50		2:50
					2016-2	<u> </u>	2016-09-21	<u>ㅜ</u> 수		13:00~15:50		2:50
					2016-2	<u>-</u>	2016-10-03	금	· · ·	09:00~11:50		2:50
1					2016-2	-	2016-10-12	수		13:00~15:50		2:50
1					2016-2	-	2016-10-26	<u>수</u>	, ,	13:00~15:50		2:50
					2016-2	-	2016-11-02	수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6-2	-	2016-11-04	금	1,2,3	09:00~11:50	9:00 11:50	2:50
					2016-2	-	2016-11-09	수	5,6,7	13:00~15:50	13:00 15:50	2:50
					2016-2	-	2016-11-16	수		13:00~15:50		2:50
					2016-2	-	2016-11-23	수		13:00~15:50		2:50
					2016-2	-	2016-11-30	수		13:00~15:50		2:50
					2016-2	-	2016-12-07	수		13:00~15:50		2:50
					2016-2	-	2016-12-08	목		13:00~15:50		2:50
					2016-2 2017-1	<u>-</u>	2016-12-14 2017-03-07	수화		13:00~15:50 17:00~18:50		2:50 1:00
					2017-1	<u> </u>	2017-03-07	화		17:00~18:50		1:00
					2017-1		2017-03-14	화		17:00~18:50		1:00
					2017-1	-	2017-03-28	화		17:00~18:50		1:00
					2017-1	-	2017-04-04	화	'	17:00~18:50		1:00
					2017-1	-	2017-04-11	화	_	17:00~18:50		1:00
					2017-1	-	2017-04-18	화	9,10	17:00~18:50	17:00 18:00	1:00
					2017-1	-	2017-04-25	화	9,10	17:00~18:50	17:00 18:00	1:00
					2017-1	-	2017-05-02	화			17:00 18:00	
					2017-1	-	2017-05-16	화			17:00 18:00	
1					2017-1	-	2017-06-12	월			17:00 18:00	
1					2017-1	-	2017-06-13	화		17:00~18:50		1:00
					2017-1	<u>-</u>	2017-06-20 2017-03-08	화 수	<u> </u>	17:00~18:50 15:00~17:50		1:00 2:50
1					2017-1	<u>-</u>	2017-03-08	<u>ㅜ</u> 수		15:00~17:50		2:50
1					2017-1	<u> </u>	2017-03-13	수		15:00~17:50		2:50
1					2017-1	<u>-</u>	2017-03-22	<u></u> 수		15:00~17:50		2:50
1					2017-1	-	2017-04-05	<u>수</u>		15:00~17:50		2:50
1					2017-1	-	2017-04-12	<u>수</u>		15:00~17:50		2:50
1					2017-1	-	2017-04-19	수		15:00~17:50		2:50
1					2017-1	-	2017-04-26	수		15:00~17:50		2:50
1					2017-1	-	2017-05-10	수		15:00~17:50		2:50
1					2017-1	-	2017-05-17	수		15:00~17:50		2:50
1					2017-1	-	2017-06-07	수		15:00~17:50		2:50
1					2017-1	-	2017-06-08	목		15:00~17:50		2:50
1					2017-1	-	2017-06-14	수		15:00~17:50		2:50
1					2017-1 2017-1	-	2017-03-06 2017-03-13			17:00~19:50 17:00~19:50		1:00
1					2017-1	<u>-</u>	2017-03-13			17:00~19:50 17:00~19:50		1:00
1					2017-1	<del>-</del>	2017-03-20			17:00~19:50		1:00
1					2017-1	<u>-</u>	2017-03-27				17:00 18:00	
1					2017-1	<u>-</u>	2017-04-03				17:00 18:00	
	I.	<u> </u>			,				· / / - 1		1	

순	소속	직급	성명	학위	학년도	과목명	일자	요일	교시	수업시간	연가미		비고
	<u> </u>	10	0.0	과정		-170			· ·		시;		, .
					2017-1	=	2017-04-10	월		17:00~19:50			1:00
					2017-1	-	2017-04-17			17:00~19:50			1:00
					2017-1	-	2017-04-24			17:00~19:50			1:00
					2017-1	-	2017-05-01			17:00~19:50			1:00
					2017-1	-	2017-05-08			17:00~19:50			1:00
					2017-1	-	2017-05-15	월		17:00~19:50			1:00
					2017-1	=	2017-06-05			17:00~19:50			1:00
					2017-1	-	2017-06-19			17:00~19:50			1:00
					2017-2	=	2017-09-06	수	_	17:00~18:50			1:00
					2017-2	-	2017-09-13	수	_	17:00~18:50			1:00
					2017-2	-	2017-09-20	수	9,10	17:00~18:50			1:00
					2017-2	-	2017-09-27	수		17:00~18:50			1:00
					2017-2	-	2017-10-11	수		17:00~18:50			1:00
					2017-2	=	2017-10-18	수		17:00~18:50			1:00
					2017-2	-	2017-10-25	수	9,10	17:00~18:50			1:00
					2017-2	-	2017-11-01	수	9,10	17:00~18:50			1:00
					2017-2	-	2017-11-08	수		17:00~18:50			1:00
					2017-2	-	2017-11-15	수		17:00~18:50			1:00
					2017-2	-	2017-11-22	수	9,10	17:00~18:50			1:00
					2017-2	<u>-</u>	2017-11-29	수	9,10	17:00~18:50			1:00
					2017-2	-	2017-12-06	수	9,10	17:00~18:50			1:00
					2017-2	-	2017-12-13	수	_	17:00~18:50			1:00
					2017-2	-	2017-12-20	수	· /	17:00~18:50			1:00
					2017-2	-	2017-09-05	화		14:00~16:50			2:50
					2017-2		2017-09-12	화	<del></del>	14:00~16:50			2:50
					2017-2	-	2017-09-19	화		14:00~16:50	_		2:50
					2017-2	-	2017-09-26	화	-	14:00~16:50			2:50
					2017-2	-	2017-10-10	화	<u> </u>	14:00~16:50			2:50
					2017-2	-	2017-10-17	화	_	14:00~16:50			2:50
					2017-2	-	2017-10-24	화	-	14:00~16:50			2:50
					2017-2	-	2017-10-31	화	_	14:00~16:50			2:50
					2017-2	-	2017-11-14	화		14:00~16:50			2:50
					2017-2	-	2017-11-21	화		14:00~16:50			2:50
					2017-2 2017-2	=	2017-11-28	화 화		14:00~16:50			2:50
						-	2017-12-05 2017-12-12		- ' '	14:00~16:50			2:50
					2017-2 2017-2	-		화 화		14:00~16:50			2:50
					2017-2	<b>-</b> 人刊	2017-12-19	쏴	0,7,8	14:00~16:50			2:50
				Ι	2017-1	소계	2017-03-06	월	700	15:00~17:50			274:20 2:50
					2017-1	<u>-</u>	2017-03-06		/ / / /	15:00~17:50 15:00~17:50			
					2017-1	<del>-</del>	2017-04-03			15:00~17:50 15:00~17:50			2:50 2:50
					2017-1	-	2017-04-24			15:00~17:50 15:00~17:50			2:50
5	-	-	-	박사	2017-1	-	2017-03-13			15:00~17:50			2:50
					2017-2	-	2017-12-08	화		16:00~17:50			2:00
					2018-1	-	2018-06-12		_	15:00~18:50			2:50
					2018-2		2018-10-23			15:00~17:50			2:50
					2018-2		2010-10-30	쏴	1,0,9	15:00~17:50	_	17:50 10회	
						소계						TU되	21:50

#### 【붙임2】

### 연가보상비 및 보수 과다 수령 내역

(단위 : 원)

연					법정	的	E 연가보상 관	련	미허가 연가	_	상 연가보상 관	<u></u> - 현	연가보상비		결근 시 공제보수액	회수액
번	소속	직	성명	연도	연가 일수	연가사용일수(a)	연가보상일수	지급연가보상비	사용일수 (b)	정상 연가일수 (a+b)	정상잔여연가 일수	정상연가보상 비	과다지급액 (회수대상액)	결근일	(회수 대상액)	합계
				2016	12	0	4	221,890	255시간50분 (31일7시간50분)	12	0	-	221,890	19	1,265,700	1,487,590
1	◇과	_	P	2017	14	1	10	591,250	152시간 (19일)	20	0	-	591,250	6	424,350	1,015,600
						소계							813,140		1,690,050	2,503,190
2	◇과	-	-	2017	12	5	6	344,180	127시간30분 (15일7시간30분)	12	0	-	344,180	8	549,960	894,140
				2016	15	0	5	295,160	225시간 (28일1시간)	15	0	-	295,160	13	918,090	1,213,250
3	-	-	_	2017	17	0	13	818,590	82시간10분 (10일2시간10분)	10	7	440,780	377,810			377,810
						소계						-	672,970		918,090	1,591,060
				2015	15	17일5시간	-	-	84시간30분 (10일4시간30분)	15	0	-	-	13	819,000	819,000
4				2016	16	16일4시간	-	-	71시간20분 (8일7시간20분)	16	0	-	-	9	584,120	584,120
4	-	-	_	2017	16	16	-	-	118시간30분 (14일6시간30분)	16	0	-	-	14	940,700	940,700
								소계				-	-		2,343,820	2,343,820
5	-	-	-	2017	17	16일3시간	-	-	14시간10분 (1일6시간10분)		-	-	-	1	107,510	107,510
							합계						1,830,290	21	5,609,430	7,439,720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0	관외출장비 신청 부적정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9장 공무원	○ 경고(1명)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숙박비는 여행 중 숙박에	ㅇ시정(회수)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이고,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하고,	합계 260천원을 관 련 자 로 부 터
	숙박비는 실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숙박을 필요로	화수하여 관련회계에
	하는 공무상 여행 시 숙박업소가 아닌 친지 집 등에서	세입조치하기 바람
	숙박하여 숙박비를 지출하는 않는 경우에 1야당	
	20,000원을 지급할 수 있는데도,	
	- 안동대학교 ♡실 Q은 2017. 7. 19.부터 2017. 7. 20.	
	까지 '▶ 실험실 안전관리 운영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로 출장을 신청하여 자신의 삼척시 소재 자택에서	
	숙박을 했음에도 친지 집 등에서 숙박한 것으로	
	신청하여 숙박비 20,000원을 더 지급 받는 등【붙임】	
	"숙박비 부적정 신청 현황"과 같이 위 Q은 2017. 7월	
	부터 2018. 11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자택에서	
	숙박했음에도 실제와 다르게 숙박비를 신청하여	
	숙박비 합계 260,000원을 더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숙박비 부적정 신청 현황

(단위 : 원)

연번	출장시작일	출장종료일	출장내용	출장지	숙박비 지급내역
1	2017-07-19	2017-07-20	▶ 실험실 안전관리 운영 자료 수집	$\cup$	20,000
2	2017-08-16	2017-08-17	-	-	20,000
3	2017-12-21	2017-12-22	-	-	20,000
4	2017-12-26	2017-12-27	-	-	20,000
5	2018-01-11	2018-01-12	-	-	20,000
6	2018-01-25	2018-01-26	-	-	20,000
7	2018-02-19	2018-02-20	-	-	20,000
8	2018-02-22	2018-02-23	-	-	20,000
9	2018-04-05	2018-04-06	-	-	20,000
10	2018-06-11	2018-06-12	-	-	20,000
11	2018-07-19	2018-07-20	-	-	20,000
12	2018-07-26	2018-07-27	-	-	20,000
13	2018-11-15	2018-11-16	-	-	20,000
		,	합계		260,000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1	교육공무원 해외파견연구보조금 부당 수령 등	
	○ 「국가공무원법」제56조 및 제6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 중징계(1명)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의	○ 경고(1명)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시정(회수)
	아니되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 부당 수령한 해외
	제5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파견연구보조금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새로운 학술적	합계 10,000천원을 관련자로부터 화수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자신 및	하여 관련회계에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세입조치하기 바람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	
	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로 되어 있고, 「안동대학교 교육공무원	
	해외파견에 관한 지침」제9조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제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안동대학교 �과 R은 2016. 6. 27. '-연구(파견국가:호주,	
	연구기간:2017. 2. 28. ~ 2018. 1. 25., 연구비 10,000천원)'과제로	
	해외파견연구보조금을 지원받은 다음 연구기간이	
	종료된 2018. 2. 27.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좀 더 세	
	부적으로 제목을 변경한다는 사유로 '-효율'로 연구계	
	획을 변경하였고, 학회지 게재논문 제출기한이 다가오자	
	자신의 대학원 제자인 S의 석사학위논문(-방법. 2018. 8.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발표)을 자신의 또 다른 제자인 공동실험실습관 연구원	
	(무기계약직) T으로 하여금 위 석사학위논문을 출처표시	
	없이 단순 요약(석사학위 논문에서 일정부분만 발췌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7page 분량으로 정리)케 하여 '-회수'라는 제목으로 2019. 6. 우학회지에 게재(제1저자 T, 참	
	여 S, R, BL, BM, 교신저자 BN)하면서 제1저자를 위 S이	
	아닌 위 T으로 등록하게 한 사실이 있고,	
	- 2019. 11. 5. 기 변경한 해외파견연구보조금 연구계획	
	(-효율)을 다시 '-회수'라는 내용으로 변경한 후 2019.	
	11. 18. 위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을 해외파견연구보조금 연구결과로 제출한 사실이 있음.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2	산학협력단 계약직원 채용 부당	
	○ 「국가공무원법」제56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ㅇ 경징계(2명)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안동대학교	ㅇ 경고(1명)
	段 정관」제8조에 따르면 육의 산학연협력사업을 수행	
	하기 위하여 지역연계협력본부, 토양분석센터 등의	
	하부조직을 두며, 「안동대학교 육 직원 인사관리 규	
	정」제8조 제3항에 따르면 직원 및 계약직원의 신규임	
	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하며, "안동대학	
	교 육(지역연계협력본부) 기간제근로자(4명) 채용공고	
	('19.12.9.)"에 따르면 창업지원업무 등을 담당할 기간제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	
	는 자, 19세 이상인 자, 전산세무 2급 이상・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정보처리기사 등의 자격증을 소 지한 자로 되어 있는데도,	
	- 안동대학교 육은 2019. 12. 31. 육 소속 Ⅲ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채용공고('19.12.9.) 요건과 달리	
	응시자 13명(자격증 소지자 10명) 중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등의 자격증이 없는 U 등 3명을 1차 서류	
	전형에서 합격*시키는 등【붙임】"♣(Ⅲ부) 계약직원	
	채용 현황"과 같이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등의	
	자격증이 없는 위 U 등 3명을 1차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킨 후, U을 최종 채용**(계약기간 : '20.1.6.	
	~'20.12.31. 월급여 : 2,400천원) 하면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V 등 7명은 불합격시킨 사실이 있음.	
	* U을 제외한 나머지 3명 채용합격자는 관련 자격증 소지	
	** <b>서류전형위원(W, X</b> , Y), 면접전형위원( <b>W, X</b> , 교수 Z)	

## ♣(Ⅲ부) 계약직원 채용 현황

※ 계약기간 : 2020. 1.6. ~ 2020. 12.31.

연번	응시자 성명	<b>출신학교</b> (학과)	자격증 소지여부	1차 서류전형 합격여부	2차 면접전형 합격여부	최종 합격여부
1	V	-	0	0	×	×
2	-	-	×	0	×	×
3	-	-	0	0	×	×
4	-	-	0	0	×	×
5	-	-	0	0	×	×
6	-	안동대학교 (◈과)	0	0	0	0
7	-	-	0	0	× ×	×
8	-	-	0	0	0	0
9	-	안동대학교 ( <b>◆</b> 과)	×	0	×	×
10	-	-	0	0	0	0
11	-	안동대학교 (◇과)	×	0	0	0
12	-	-	0	0	×	×
13	-	-	0	0	×	×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3	복무 처리 부적정	ㅇ 주의(1명)
	- 안동대학교 ☆과 AA은 '18. 12. 3. '도서관 전산화 관련 자료 수집(출장지 : ■)' 출장을 수행한 후 당일 17시 경 학교에 도착하였음에도 사무실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교내 종합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등 【붙임】"출장 수행 중 종합스포츠센터 이용 현황"과 같이 '18. 12. 3.부터 '19. 11. 20.까지 총 4회에 걸쳐 출장수행 중 교내 종합스포츠센터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출장 수행 중 종합스포츠센터 이용현황

여	) <b>人</b>	직위	7 <b>3</b> tril		출장내역				
연번	소속	직위 (급)	성명	출장일	시간	출장목적	출장지	종합스포츠센터 이용일 및 시간	
1				′18.12.3.	09:00~18:00	도서관 전산화 관련 자료수집		′18.12.3. 17:08~	
2				′19.9.6	14:00~18:00	-	-	′19.9.6. 17:20~	
3	☆과	-	AA	′19.11.15	14:00~18:00	-	-	′19.11.15. 17:12~	
4				′19.11.20	09:00~18:00	-	-	′19.11.20. 09:02~	

기관명: 안동대학교

여번 지 적 사 항 처분 기부금 관리 부적정 14 ㅇ 경고(1명) ㅇ 「국가공무원법」제56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ㅇ 통보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국립대학 - ●과에서 임의 관리 비국고회계 관리규정(12.2.27. 시행,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중인 발전기금 제10조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71,000천원을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재단법인 안동대학교 발전기금회계로 하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편입하기 바람 법률('15.3.13. 시행), 제11조에 따르면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 밖의 수입 등은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법 제11조에 따른 대학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대학회계의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재단법인 안동 대학교발전기금 정관, 제4조에 따르면 법인은 안동 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생의 장학사업 지원' 등의 목적사업을 행하며, 「안동대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목적기금은 특정 목적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발의하되, 기금부서를 경유하여 승인을 받아 재단법인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안동대학교 ●과는 1989. 3. 1. AB으로부터 기부받은 34,000천원을 학과(신한은행 정기예금 -)에서 직접 관리 하는 등 【붙임】 "●과 기부금 관리 부적정 현황"과 같이 1989.3.1. 이후부터 2020.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위 AB으로부터 기부받은 합계 71,000천원(원금 34,000 천원+이자)을 대학발전기금회계로 편입시키거나 전출 하지 아니하고 학과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과 등 재학생 장학금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 ●과 기부금 관리 부적정 현황

;	기부금 수약		;	장학금 지급	고 i
기부일	기부자	기부 금액	지급일	지급자 수	지급금액
			2017. 3. 29.	5	1,208
1989. 3. 1.	1. AB	31,000	2018. 3. 29.	5	1,138
			2019. 3. 29.	5	1,432
합계(원금+이자)		71,000	합계	15	3,778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5	과 운영비 관리 부적정	
	○ 「예산 및 기금 <del>운용</del> 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2017~2020)」 및	ㅇ 기관경고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교육부, 2017~2020)」에 따르면 과 운영비는 각 대학의 직제에 반영된 과· 담당관실·팀·반 등 과(課) 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경비로써 과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과 운영비를 정액 지급할 수 있고,	<ul> <li>정고(3명)</li> <li>통보</li> <li>과 운영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하기 바람</li> </ul>
	지급단가는 20인이상(270천원), 6인이상(180천원), 5인이하(90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안동대학교 과운영비	
	지급기준(2018~2020)"에 따르면 과 운영비는 명절휴가비 및 선물, 내부직원 전별금으로는 집행할 수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 안동대학교는 2017. 3월 2017회계년도 3월분 과 운영비를집행하면서 지급기준인 270천원보다 106천원 많은 376천원을 ◀과에 지급하는 등 【붙임 1】"과 운영비초과 지급 현황"과 같이 2017. 3월부터 2020. 7월감사일 현재까지 위 ◀과 등 9~13개 부서에 매월지급기준보다 합계 21,805천원의 과 운영비를 초과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 부서원 명절 선물 세트 구입 등의 명목으로 집행한 과 운영비 합계 2,144천원은 관련자 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
	<ul> <li>특히, ♡실(현재 ■실)은 2018. 9. 18. 과 운영비로 합계 1,004천원 상당의 명절(추석) 선물세트를 구입하여 부서원 10명에게 지급하는 등 【붙임 2】"과 운영비 집행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8. 9. 18.부터 2020. 1. 9. 까지 위 ♡실 등 3개 부서는 과 운영비 합계 2,144천 원을 부서원 명절 선물세트 구입 등의 명목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li> </ul>	

## 과 운영비 초과 지급 현황

회계년도	 부서명	인원	월별		지급금액	초과금액
거세민도		(연 평균)	월별 기준금액	월별	연 합계	(연 합계)
	<b>◀</b> 과	21.3	270,000	376,000	4,512,000	1,272,000
	-	9.0	180,000	191,000	2,292,000	132,000
	-	5.6	90,000	128,917	1,547,000	467,000
2017	-	5.8	90,000	139,167	1,670,000	590,000
(971)	▷과	4.3	90,000	97,167	1,166,000	86,000
부서) -	<b>▼</b> 과	9.0	180,000	191,000	2,292,000	132,000
	-	19.3	180,000	344,750	4,137,000	1,977,000
	■실	4.4	90,000	96,250	1,155,000	75,000
	-	10.7	180,000	216,000	2,592,000	432,000
			소계			5,163,000
	-	9.0	180,000	191,000	2,292,000	132,000
	-	5.9	90,000	142,583	1,711,000	631,000
	<b>◀</b> 과	21.6	270,000	379,750	4,557,000	1,317,000
	▼과	8.9	180,000	189,750	2,277,000	117,000
	-	18.3	180,000	331,000	3,972,000	1,812,000
2018	=	5.7	90,000	136,667	1,640,000	560,000
	-	4.2	90,000	92,500	1,110,000	30,000
(13개	■실	4.7	90,000	100,000	1,200,000	120,000
부서)	-	5.9	90,000	142,583	1,711,000	631,000
	-	11.0	180,000	221,000	2,652,000	492,000
	-	8.5	180,000	183,500	2,202,000	42,000
	-	4.7	90,000	110,833	1,330,000	250,000
	<b>₽</b> 원	4.3	90,000	93,750	1,125,000	45,000
			소계			6,179,000
	-	5.7	90,000	134,500	1,614,000	534,000
	-	9.5	180,000	198,500	2,382,000	222,000
	<b>◀</b> 과	23.4	270,000	408,500	4,902,000	1,662,000
	<b>▼</b> 과	9.0	180,000	191,000	2,292,000	132,000
2019	-	18.8	180,000	338,500	4,062,000	1,902,000
(10개	-	5.8	90,000	137,000	1,644,000	564,000
부서)	-	5.6	90,000	126,750	1,521,000	441,000
,	■실	10.2	180,000	204,167	2,450,000	290,000
	♡실	10.2	180,000	208,500	2,502,000	342,000
	-	9.9	180,000	204,750	2,457,000	297,000
			소계			6,386,000
	-	5.5	90,000	125,500	753,000	213,000
	-	10.0	180,000	206,000	1,236,000	156,000
	-	5.0	90,000	113,667	682,000	142,000
	<b>◀</b> 과	24.5	270,000	423,500	2,541,000	921,000
	<b>▼</b> 과	9.0	180,000	191,000	1,146,000	66,000
2020	-	18.0	180,000	326,000	1,956,000	876,000
	-	5.0	90,000	105,000	630,000	90,000
(13개	■실	13.8	180,000	263,500	1,581,000	501,000
부서)	♡실	14.0	180,000	266,000	1,596,000	516,000
	-	9.3	180,000	196,000	1,176,000	96,000
	-	10.0	180,000	206,000	1,236,000	156,000
	-	5.0	90,000	105,000	630,000	90,000
	<b>₽</b> 원	5.7	90,000	132,333	794,000	254,000
	<b>₹</b>	1 0.,	 소계	1 202,000		4,077,000
		합기 합기				21,805,000

#### 【붙임2】

## 과 운영비 집행 부적정 현황

집행일자	집행내역	집행금액	집행부서
2018.9.18.	부서 직원 명절 선물세트 구입	1,004,000	♡실
2019.1.23.	부서 직원 명절 선물세트 구입	1,040,000	■실
2020.1.9.	조교 국외연수 지원금	100,000	-
	합계	2,144,000	

기관명 : 안동대학교

재단법인 안동대학교발전기금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6	기부금품 모집 및 ▲소 운영 부적정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르면	ㅇ 경고(1명)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재단법인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인동대학교발전기금> ○ 기관경고
	물품을 말하고,「안동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연구원의 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박사후 연구원'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타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되어야	
	하며, 같은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원 임용 30일 전까지 총장에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재단법인 안동대학교발전기금(M)은 2015. 11. 12. ㈜	
	○○ <sup>*</sup> (대표 AD)로부터 반대급부(▲소에서 ○○ 기술지도 및	
	제품 경쟁력 확보 기여 등)가 있는 연구개발 목적지정	
	기부금 100백만원을 받는 등【붙임】"㈜○○-▲소**	
	관련 기부금품 모집 등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5.	
	11. 12.부터 2019. 7. 4.까지 위 ㈜〇〇로부터 반대급부가	
	있는 연구개발 목적지정 기부금 합계 500백만원을 받아	
	이중 50백만원은 재단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50백만원은 🗘 회계로 전출하여 연구개발비로 집행	
	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 주요 사업내용 : 공장자동화 설비 및 각종 공정에 필수 동력	
	원인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와 에어클	
	리닝시스템(Air Cleaning System) 제조, 판매	
	** 연구소장 : 안동대 ◘과 AE[(주)○○소장 및 사외이사 겸직 :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2.3.31.~ '20.12.31.]	, =
	- 또한, 안동대학교(▲소)는 2019. 6. 1. AF를 '▲소 박	
	사후 연구원' 으로 임용(임용기간 : '19.6.1.~'22.5.31. 월급여	
	: 3,100천원) 당일 총장에게 임용추천하고 결격사유도	
	조회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그러에서 많은 서울의 있다.	

#### ㈜○○-▲소 관련 기부금품 모집 등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연구수행 내용(연구책임자 : AE)	기부금 (세입 처리일)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기술지도비
2015	○ 연구수행 과제 내용 : - - 주제1 : - - 주제2 : -	100,000 (2015.11.12)	1,000
2016	○ 연구수행 과제 내용 : - - 주제1 : - - 주제2 : -	100,000 (2016.07.14.)	2,200
2017	○ 연구수행 과제 내용 : - - 주제1 : - - 주제2 : -	100,000 (2017.07.19.)	1,500
2018	○ 연구수행 과제 내용 : - - 주제1 : - - 주제2 : -	100,000 (2018.11.16.)	1,000
2019	○ 연구수행 과제 내용 : - - 주제1 : - - 주제2 : -	100,000 (2019.07.04.)	1,000

#### 【참고】

#### ㈜ ○○-▲소 목적 및 사업내용

#### ㈜○○-▲소 규정(2016.6.29. 개정)

-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소의 산업체의 기본설비가 되는 진공 펌프의 성능향상과 미래전략 기술 개발 및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하여 연구/개발에 특화된 센터 및 (주)○○의 제품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업) ▲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1. (주)○○의 미래 전략기술 개발
  - 2. 진공 펌프 기술 조사 및 분석연구과제 수행
  - 3. (주)○○의 핵심기술 자문 및 연구과제 수행
  - 4.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필요사업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7	예산 관리 등 부적정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0	기관경고
	제5조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재정을		주의(2명)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1 7 (2.8)
	제11조에 따르면 법 제11조에 따른 대학회계의 세입	0	시정
	예산과 세출예산은 대학회계의 예산에 편입하도록	_	대학 명의 22개
	되어 있고,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교육부,		휴면계좌는 해지
	2018~2020)」에 따르면 총장은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하여 잔고(합계
	위하여 유휴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따로 예치할		711원)는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민간경상보조금'은 총장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지원 등을 위하여 학생 또는 학생	0	통보
	단체에 직접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되어 있고,「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2017~2020)」에	_	유휴자금은 예금
	따르면 '민간경상보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등으로 예치하고,
	의한 보조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으로 민간이		민간경상보조금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민간이 행하는 시무
	으로 되어 있는데도,		또는 시업에 한하여
	이트레칭크 ▶ ○ 2004 F 27 웨으러스이 러스비 스		교부하기 바람
	- 안동대학교 ▶은 2004. 5. 27. 체육연수원 연수비 수 납용계좌(신한은행, -)를 개설하고 2016. 12. 17. 최종		
	거래 이후 2020.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아		
	휴면계좌(잔액 79원)로 보유하는 등【붙임 1】"대학		
	명의 휴면계좌 현황"과 같이 2004. 5. 27.부터 2020. 7.		
	감사일 현재까지 위 체육연수원 연수비 수납용계좌		
	등 대학 명의 총 22개 계좌(잔액 합계 711원)를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고 휴면계좌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있으며,		
	- 안동대학교 ▼과는 ®센터가 2017. 3. 센터 운영자금		

124,886천원을 받은 후, 센터 계좌(신한은행, -)에 유휴자금(집행잔액) 98,005천원이 남아 있음에도 이를확인하지 않고 2017. 4. 위 센터에서 추가 신청한운영자금 76,925천원을 배정하는 등 【붙임 2】"愛센터 자금 관리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7. 3.부터 2020. 6.까지 위 센터가 월 평균 120,112천원(매월 46,700천원~503,047천원)의 자금을 받은 후, 센터 계좌(신한은행, -)에 월 평균 131,080천원의 유휴자금(집행잔액)을 과다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확인하지 않고운영자금을 추가 배정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안동대학교는 교내 ◀관이 직접 추진하는 '2017년 역동서원 춘계당회' 행사경비를 민간에 대한 지원이 아님에도 '민간경상보조금' 비목에서 400천원을 집행하는 등 【붙임 3】 "민간경상보조금 집행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7년부터 2020.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위 ◀관 행사 등 교내 부속기관이 직접 추진하는 경비(총 772건) 합계 704,849천원을 '민간경상보조금' 비목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

### 【붙임1】

## 대학 명의 휴면계좌 현황

연번	은행명	계좌번호	개설일자	최종 거래일	잔액	예금주	용도	편입회계
1	-	-	2004.05.27	2016.12.17	79	안동대학교	체육연수원 연수비 수납용	대학회계
2	-	-	2007.12.31	2014.06.30	-	안동대학교	-	대학회계
3	-	-	2009.06.12	2016.12.17	75	안동대학교		대학회계
4	-	-	2010.05.17	2018.01.05	-	안동대학교	-	대학회계
5	-	-	2013.03.27	2018.03.29	-	안동대학교	-	대학회계
6	-	-	2015.11.10	2017.06.17	2	안동대학교	-	대학회계
7	-	-	2017.02.02	2019.12.30	-	안동대학교	-	대학회계
8	-	-	2017.05.22	2018.12.22	503	안동대학교	-	대학회계
9	-	-	2018.03.15	2019.12.30	-	안동대학교	-	대학회계
10	-	-	2018.03.22	2018.12.22	52	안동대학교	-	대학회계
11	-	-	2018.07.03	2018.07.03	-	안동대학교	-	대학회계
12	-	-	2018.08.24	2019.12.31	-	안동대학교	-	대학회계
13	-	-	2018.10.05	2019.12.30	-	안동대학교	-	대학회계
14	-	-	2018.10.05	2019.12.30	-	안동대학교	-	대학회계
15	-	-	2018.10.10	2019.12.30	-	안동대학교	-	대학회계
16	-	-	2018.10.11	2020.05.21	-	안동대학교	-	대학회계
17	-	-	2018.10.12	2020.05.22	-	안동대학교	-	대학회계
18	-	-	2018.10.15	2020.05.21	-	안동대학교	-	대학회계
19	-	-	2018.11.20	2019.12.30	1	안동대학교	-	대학회계
20	-	-	2018.11.21	2020.05.22	-	안동대학교	-	대학회계
21	-	-	2019.04.16	2019.04.16	-	안동대학교	-	대학회계
22	-	-	2016.05.18	2018.12.28	-	안동대학교	-	대학회계
		합계	]	•	<i>7</i> 11			•

## ☎센터 자금 관리 부적정 현황

연월	자금 신청금액	자금 집행금액	유휴자금(집행잔액)
2017.03.	124,886	26,881	98,005
2017.04.	76,925	73,917	101,013
2017.05.	198,589	183,265	116,337
2017.06.	88,422	71,354	133,405
2017.07.	100,000	76,117	157,288
2017.08.	91,061	70,135	178,214
2017.09.	102,804	116,109	164,909
2017.10.	94,000	57,420	201,489
2017.11.	98,300	47,964	251,825
2017.12.	46,700	71,372	227,153
2018.01.	62,492	79,766	209,879
2018.02.	221,000	430,879	0
2018.03.	155,500	53,134	102,366
2018.04.	137,200	93,271	146,295
2018.05.	98,500	75,009	169,786
2018.06.	83,000	92,969	159,817
2018.07.	78,700	81,741	156,776
2018.08.	190,000	234,499	112,277
2018.09.	70,500	75,615	107,162
2018.10.	61,800	71,874	97,088
2018.11.	87,000	90,136	93,952
2018.12.	78,056	77,263	94,745
2019.01.	124,000	102,338	116,407
2019.02.	503,047	619,454	0
2019.03.	173,380	64,762	108,618
2019.04.	100,000	88,337	120,281
2019.05.	97,400	79,722	137,959
2019.06.	92,000	105,357	124,602
2019.07.	99,000	118,896	104,706
2019.08.	250,000	96,198	258,508
2019.09.	116,500	261,705	113,303
2019.10.	110,000	90,714	132,589
2019.11.	100,000	99,375	133,214
2019.12.	140,000	131,864	141,350
2020.01.	155,000	68,056	228,294
2020.02.	100,000	328,294	0
2020.03.	91,100	43,412	47,688
2020.04.	92,500	37,327	102,861
2020.05.	65,100	28,850	139,111
2020.06.	50,000	35,167	153,944
월 평균	120,112	116,263	131,080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8	교수보직경비 지급 부적정	。 주이(O대)
	○ 「국립학교 설치령」제15조에 따르면 제5조의2(부총장), 제6조(단과대학 등), 제7조(부속시설 등), 제9조(대학의 하부조직)에 따라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2017~2018)」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교수보직경비는「국립학교 설치령」에 근거하여 대학보직을 수행하는 교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안다고 되어 있는데로,  - 안동대학교는「국립학교 설치령」상 직위가 아닌 & AG에게【붙임】"교수보직경비 부적정 지급 현황"과 같이 '17. 5월 부터 '18. 11월 까지 교수보직경비합계 8,572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교수보직경비 부적정 지급 현황

여	소속	-1 A1	성명	교수	보직경비 지급내	역	
연 번	(직급)	(직급) 직위		단가	지급기간 (지급개월)	총합계	비고
				250	'17.5.~'17.6. (2개월)	500	2017.5.1.자 발령 (2개월분 지급)
				250	′17.7. (1개월)	250	
1	①과 (교수)	(교수) -	AG	400	'17.8.~'17.11. (4개월)	1,600	2017.8.1.기준 보직수행경비 지급 인상
				400	'17.12. (1개월)	722	주요보직자의 업무가중 정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지급(322,00 0원)
				500	'18.1.~'18.11. (11개월)	5,500	2018.1.1.기준 보직수행경비 지급 인상
	합계					8,572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연번 19	지 적 사 항 가족수당 수령 부적정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제1항, 제2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처분  o 주의(7명)  o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수령한 가족수당 합계 700천원을 관련자 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
	- 안동대학교 ◀과 AH은 '17. 9. 부친 BO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게 되었음에도 부양가족 변동신고를 하지 않고 '17. 9월부터 '17. 11월까지 가족수당 합계 60 천원을 수령하는 등 【붙임】"가족수당 부적정 수령 현황"과 같이 '17. 9월부터 '20. 6월까지 위 AH 등 교직원 7명은 세대분리 등으로 부양가족에 변동이 발생하였음에도 부양가족 변동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수당 합계 7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	

## 가족수당 부적정 수령 현황

						지급내역		변동사유 발생기간	부적정 수령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수당지급 대상자	관계	기간	가족 수당	│ <b>발생기간</b> (별도세대 구성, 이혼, 사망 등 변동일자)	구 <b>13 ~ 3</b> 금 <b>액</b> (별도세대 구성 등 기간 중 지급한 금액)
1	<b>◀</b> 과	-	АН	ВО	부	'17.1.~'20.6. (42개월)	840	'17.9. ~'17.11. ['17.8.28.(전출) /'17.12.14.(전입)]	60
2	■과	-	-	-	시부	'19.3.~'20.6. (16개월)	320	'20.3.~'20.6. ('20.2.5.)	80
3	■실	-	-	-	모	'17.1.~'20.6. (42개월)	840	′20.3. ~′20.6. (′20.2.3.)	80
	4 글부	-	-	-	足	'17.9. ~'20.6. (34개월)	680	′20.4. ~′20.6. (′20.3.6.)	60
4				-	배우자	'17.9. ~'20.6. (34개월)	1,360	′18.3. ~′18.8. (′18.2.23.)	240
5	△과	-	-	-	시부	'20.3.~'20.6. (4개월)	80	'20.6.~'20.6. ('20.5.20.)	20
				-	장인	'18.5. ~'20.6. (26개월)	520	'20.4.~'20.6. ('20.3.31.)	60
6	-	-	-	-	장모	'18.5. ~'20.6. (26개월)	520	'20.4.~'20.6. ('20.3.31.)	60
77			-	-	부	'17.1.~'20.6. (42개월)	840	'20.6.~'20.6. ('20.5.14.)	20
7	-			-	足	'17.1. ~'20.6. (42개월)	840	'20.6.~'20.6. ('20.5.14.)	20
합계									700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0	소관사무 수당 지급 부적정	7 T E
20	○ 「2017~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및 「2018~2019회계연도 대학회계 예산 집행지침(안동대학교)」 따르면 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하거나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ul> <li>부적정하게 지급된</li> <li>소관시무 수당 합계</li> <li>22,425천원을 관련자</li> </ul>
	- 안동대학교는 2017. 7. 26. ◆과 AI에게 '2017학년도 하반기 교수공개채용' ◆과 ③ 전공분야 기초 및 전공심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유로 심사위원 수당 140천원을 지급하는 등 【붙임】 "자기 소관사무 수당 지급 현황"과 같이 '17. 7. 부터 '19. 9.까지 위 AI 등 자기 소관사무를 수행한 교직원 합계 367명에게 심사위원 수당 등 합계 22,425 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자기소관 사무 수당 지급 현황

현 번 연도	ادم	-1n				7-11-4	( - ' '	. 선턴)
1   2   3   4   5   5   6   6   7   7   6   6   7   7   7   7			수당내용	기그이기			ਮੇ ਸ਼ੀ	기그에
2 3       4       -       -       110         5       5       -       -       144         6       7       -       -       115         7       8       -       -       -       115         9       10       -       -       115         10       11       -       -       -       115         13       14       -       -       -       80         13       14       -       -       -       80         13       14       -       -       -       80         13       14       -       -       -       80         13       14       -       -       -       80         14       15       -       -       -       80         1       -       -       -       80         1       -       -       -       40         -       -       -       -       40         1       -       -       -       -       40         1       -       -       -       -       30         20       -       -		- 건도		기ㅂ뒫사				
3		+						
115 115 115 115 115 115 115 115 115 115 115 115 115 115 115 115 115 115 110 80 100 80 80 80 80 80 80 80 40 40 40 40 30		1						
5         6           7         -         -         115           8         9         10         -         -         115           9         10         11         -         -         -         115           10         11         -         -         -         100           11         -         -         -         80           -         -         -         -         80           -         -         -         -         80           -         -         -         -         80           -         -         -         -         80           -         -         -         -         80           -         -         -         -         -         50           -         -         -         -         -         40           -         -         -         -         -         40           -         -         -         -         -         30           -         -         -         -         30           -         -         -         -         30		1						
6     7       8     9       10     11       11     12       13     14       15     -     -     100       16     -     -     -     100       17     18     -     -     -     80       19     2017     교수공개체용실사위원 수당     -     -     -     40       2017     2017     -     -     -     40       19     20     -     -     -     40       2017     -     -     -     -     40       -     -     -     -     40       -     -     -     -     40       -     -     -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d< td=""><td></td><td>1</td><td></td><td></td><td></td><td></td><td></td><td></td></td<>		1						
8     9       10     11       11     12       13     14       15     16       17     2017       18     2017 화반기       교수공개체용 심사위원 수당     2017.7.26.       20     -       21     -       22     -       23     -       24     -       25     -       26       27       28       29       30       33       33       33       34       35       36       37       2017       2018 학년도 상반기 교수공개채용 심사위원 수당       4산위원 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_	
9 10 10 11 12 13 14 15 15 16 17 17 18 19 20 17 18 19 20 20 21 22 20 29 29 30 31 32 24 25 36 33 3 34 35 36 37 20 17 3 18 19 20 17 3 18 3 2 20 17 3 20	7				-	-	-	115
10 11 12 12 13 14 15 15 16 17 2017 한단도 하반기 교수공개체용 심사위원 수당 2017.7.26.	8				-	-	-	115
11 12 13 14 15 16 16 17 2017 전 2017 환년도 하반기 교수공개체용 심사위원 수당 2017.7.26.	9	1			-	-	-	115
12 13 14 15 16 17 18 2017 한년도 하반기 교수공개채용 심사위원 수당 2017.7.26.	10				-	-	_	80
13 14 15 16 17 18 19 20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1 32 33 34 35 36 3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	11				-	-	-	100
14 15 16 17 2017 한번도 하반기 교수공개체용 2017.7.26.	12				-	-	-	80
15 16 17 2017 교수공개체용 심사위원 수당 2017.7.26.	13				-	-	-	50
16 17 2017 화반기 교수공개채용 심사위원 수당 2017.7.26.	14				-	-	-	50
17   2017   교수공개체용 심사위원 수당   2017.7.26.   -   -   40   40   40   40   40   40			0045711		-	-	-	
17 2017 교수공개체용 심사위원 수당					-	-	-	
18 19 20 20 21 22 23 23 24 25 26 27 28 29 30 30 31 32 2018 확년도 상반기 교수공개채용 심사위원 수당 2018.1.10.		2017		2017.7.26.	-	-	-	
10		_			-	-	-	
1		_			-	-	-	
30   30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2018 학년도 상반기 교수공개채용 심사위원 수당   2018.1.10.		1			-	-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2017       2018학년도 상반기 교수공개채용 심사위원 수당       2018.1.10.       -     -		_			-	-	-	
24       25       26       27       28       29       30       31       31       32       33       34       35       36       37       2018학년도 상반기 교수공개채용 심사위원 수당       2018.1.10.       -     -		-			-	-	-	
25       26       27       28       29       30       31       31       32       33       34       35       36       37       2018학년도 상반기 교수공개채용 심사위원 수당       2018.1.10.       -		-			-	-	-	
26       27       28       29       30       31       31       32       33       34       35       36       37       2018학년도 상반기 교수공개채용 심사위원 수당       2018.1.10.       -		-			-	-	-	
27       28       29       30       31       31       32       33       34       35       36       37       2018학년도 상반기 교수공개채용 심사위원 수당       2018.1.10.       -<		-			-	-	-	
28       29       30       31       31       32       33       34       35       36       37       2018학년도 상반기 교수공개채용 심사위원 수당       2018.1.10.       - </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	-			-	-	-	
29     30       30     -     -     -     110       31     -     -     -     30       32     -     -     -     30       33     -     -     -     30       34     -     -     -     30       35     2018     -     -     -     30       36     2017     2018     -     -     -     -     40       37     2018     -     -     -     -     -     20		-			-	-	-	
30     31       31     -     -     -     10       32     -     -     -     30       33     -     -     -     30       34     -     -     -     30       35     -     -     -     30       36     37     2018 학년도     -     -     -     -     40       37     -     -     -     -     -     20		-			-	-		
31     -     -     -     30       32     -     -     -     30       33     -     -     -     30       34     -     -     -     30       35     -     -     -     30       36     35     -     -     -     -     20       36     37     -     -     -     -     40       37     -     -     -     -     -     20		1						
32     -     -     -     30       33     -     -     -     30       34     -     -     -     30       35     -     -     -     30       36     37     2018 학년도     -     -     -     20       교수공개채용 심사위원 수당     -     -     -     -     20		-						
33     -     -     -     30       34     -     -     -     30       35     -     -     -     30       36     상반기     -     -     -     20       교수공개채용 심사위원 수당     -     -     -     -     40       -     -     -     -     20		-						
34     -     -     -     30       35     2018학년도     -     -     -     20       장반기     교수공개채용 심사위원 수당     -     -     -     40		-						
35   2017   2018학년도 상반기 교수공개채용 심사위원 수당   2018.1.10.   20   2018.1.10.   40   20								
36     37       36     상반기 교수공개채용 심사위원 수당         2018.1.10.       -     -		-	20103117					
37     교수공개채용 심사위원 수당     -     -     -     20		1						
<u> </u>		2017		2018.1.10.				
		-			-	-	-	
	38				-	-	_	55

연	회계	1 -2 2 6		ス	급내역		
번	연도	수당내용	지급일자	소속	직위(급)	성명	지급액
39				-	-	-	40
40				-	-	-	20
41				-	-	-	50
42				-	-	_	40
43				-	_	_	30
44				-	-	_	30
45				-	-	_	30
46				-	-	_	10
47				-	-	_	55
48				-	-	_	100
49				-	-	_	50
50				-	-	-	30
51				-	-	-	30
52				-	-	-	125
53				-	-	-	55
54				-	-	-	135
55				-	-	-	165
56				-	-	_	30
57				-	-	-	140
58				-	-	-	40
59				-	-	-	40
60				-	-	-	190
61				-	-	_	45
62				-	-	_	30
63				-	_	_	30
64				-	-	_	55
65				-	-	_	150
66				_	_	_	65
67				_	_	_	50
68				-	-	-	30
				-	-	-	
69				-	-	-	140
70				-	-	-	30
71				-	-	-	70
72				-	-	-	20
73				-	-	-	130
74				-	-	-	20
75				-	-	-	20
76				-	-	-	30
77				-	-	-	30
78				-	-	_	50
79				-	-	-	40
80				-	-	-	20
81				-	-	-	30
82				-	-	-	20
83				-	-	_	170
					L	1	1,5

연	회계	2 -1 11 4		지	급내역		
번	연도	수당내용	지급일자	소속	직위(급)	성명	지급액
84				-	-	-	50
85				-	-	-	30
86				-	-	-	150
87				-	-	_	20
88				-	-	-	70
89				-	-	-	70
90				-	-	_	30
91				-	-	-	45
92				-	-	-	140
93				-	-	_	20
94				-	-	_	170
95				-	-	_	40
96				-	-	_	75
97				-	-	_	50
98				-	_	_	140
99				-	-	_	50
100				-	_	_	50
101				-	_	_	50
102				-	_	_	150
103				-	_	_	140
104				-	-	_	20
105				-	-	_	20
106				-	-	_	20
107				-	-	_	30
108				-	-	_	40
109				-	-	_	70
110				-	_	_	55
111				-	-	_	55
112				_	-	_	140
113				_	_	_	155
114				-	-	_	75
115				-	-	_	50
116				-	-	_	30
117				-	-	_	140
118				-	-	_	30
119				_	-	_	140
120				-	-	-	60
121		20107117		-	-	-	10
122		2018학년도 상반기 추가		-	-	-	50
123	2017	경반기 두가 교수공개채용	2018.2.27.	-	-	-	110
124		심사위원 수당		-	-	-	140
125				-	-	-	30
126				-	-	_	30

연	회계	ار دار دار دار دار دار دار دار دار دار د		ス	급내역		
번	연도	수당내용	지급일자	소속	직위(급)	성명	지급액
127				-	-	-	70
128				-	-	-	35
129				-	-	-	35
130				-	-	-	20
131				-	-	-	50
132				-	-	_	20
133				-	-	-	50
134				-	-	_	50
135				-	-	_	60
136				-	-	_	45
137				-	-	_	130
138				-	-	_	30
139				-	-	_	70
140				-	-	_	70
141				_	_	_	70
142				-	-	_	30
143				-		_	30
144				-	-	_	50
145					-		60
146				-	-	-	90
147				-	-	-	90
148				-	-	-	10
149				-	-	-	10
150				-	-	-	10
				-	-	-	
151				-	-	-	170
152				-	-	-	140
153				-	-	-	140
154				-	-	-	95
155		2010 컨크		-	-	-	95
156		2018학년도 하반기		-	-	-	95
157	2018	교수공개채용	2018.7.17.	-	-	-	95
158		심사위원 수당		-	-	-	95
159				-	-	-	95
160				-	-	-	90
161				-	-	-	90
162				-	-	-	90
163				-	-	-	95
164				-	-	_	35
165				-	-	-	65
166				-	-	-	45
167				-	-	-	45
168				-	-	-	75
169				-	-	_	60

연	회계	ک دا یا ۸		ス	급내역		
번	연도	수당내용	지급일자	소속	직위(급)	성명	지급액
170				-	-	-	30
171				-	-	-	30
172				-	-	-	90
173				-	-	_	30
174				-	-	_	30
175				-	-	_	30
176				-	-	_	30
177				-	_	_	30
178				-	_	_	30
179				-	_	_	60
180				-	-	_	30
181				-	_	_	30
182				-	-	_	10
183							10
184					-	-	70
				-	-	-	
185				-	-	-	70
186				-	-	-	30
187				-	-	-	40
188				-	-	-	30
189				-	-	-	30
190				-	-	-	30
191				-	-	-	30
192				-	-	-	30
193				-	-	-	50
194				-	-	-	50
195				-	-	-	40
196				-	-	_	40
197				-	-	_	40
198				-	-	-	40
199				-	-	-	30
200				-	-	-	30
201				-	-	_	20
202				-	-	_	20
203				-	-	_	20
204				-	-	_	20
205				-	_	_	325
206				_	_	_	175
207				-	_	_	205
208		2019학년도		-	-	_	290
209	2018	상반기	2019.1.8.	-		_	85
210	2010	교수공개채용	2017.1.0.		-		85
		심사위원 수당		-	-	-	
211				-	-	-	85
212				-	-	-	90
213				-	-	_	120

	회계 연도	수당내용	지급일자	소속	급내역 직위(급)	성명	_1
215 216				- 一一	ㅋㅋ(ㅂ)	78 6	지급액
216				-	-	-	90
				-	-	-	115
217				-	-	-	115
				-	-	-	115
218				-	-	_	140
219				-	-	_	140
220				-	-	_	140
221				-	_	_	130
222				-	_	_	130
223				-	_	_	150
224				_	_	_	70
225				-	-	_	70
226				-	-	_	70
227				-	_	_	90
228				-	-	_	120
229				_	_	_	95
230				-	-	_	65
231				-	-	_	65
232				-	-	_	95
233							95
234				-	-	-	125
234				-	-	-	70
				-	-	-	100
236				-	-	-	
237				-	-	-	70
238				-	-	-	55
239				-	-	-	55
240				-	-	-	55
241				-	-	-	65
242				-	-	-	65
243				-	-	-	65
244				-	-	-	130
245				-	-	-	30
246				-	-	-	30
247				-	-	-	30
248				-	-	-	30
249				-	-	-	30
250				-	-	-	30
251				-	-	-	20
252				-	-	-	20
253				-	-	_	100
254				-	-	_	110
255				-	-	-	80
256				-	-	-	130

연	회계	2 - N A	지급내역				
번	연도	수당내용	지급일자	소속	직위(급)	성명	지급액
257				-	-	_	30
258				-	-	-	50
259				-	-	-	220
260				-	-	-	80
261				-	-	-	30
262				-	-	-	30
263				-	-	-	30
264				-	-	-	30
265				-	-	-	30
266				-	-	_	50
267				-	-	_	30
268				-	_	_	30
269				-	-	_	60
270				-	-	_	40
271				-	_	_	70
272				-	_	_	30
273				-	-	_	20
274				-	-	_	20
275				-	-	_	20
276				-	-	_	40
277				-	-	_	40
278				-	-	_	50
279				-	-	_	50
280				-	_	_	30
281				-	-	_	30
282				-	-	_	30
283				_	_	_	40
284				_	_	_	40
285				-	-	_	30
286				-	-	_	30
287				-	-	_	20
288				-	-	_	20
289				-	-	_	100
290				-	-	-	20
291				-	-	-	20
292				-			40
293				-	-	-	40
293				-		-	30
294					-	-	50
293				-	-		50
296				-	-	-	40
				-	-	-	
298		201773		-	-	-	30
299	2017	2017년 재물조사요원	2018.2.13.	-	-	-	50
300		作さな作みで		-	-	_	50

연	회계	3 -1 3 0	지급내역				
번	연도	수당내용	지급일자	소속	직위(급)	성명	지급액
301				-	-	-	50
302				-	-	-	50
303				-	-	-	50
304				-	-	-	50
305				-	-	_	50
306				-	-	-	50
307				-	-	-	50
308				-	-	-	50
309				-	-	-	50
310				-	-	-	50
311				-	-	_	50
312				-	-	_	50
313				-	-	_	50
314				-	-	_	50
315				-	-	_	50
316				-	-	_	50
317		수당		-	-	-	50
318				_	_	_	50
319				_	-	_	50
320				_	-	-	50
321				_	-	_	50
322				_	-	_	50
323				_	-	_	50
324				_	-	_	50
325				_	-	_	50
326				_	-	_	50
327				_	-	_	50
328				_	_	_	50
329				_	-	_	50
330				_	-	_	50
331				-	-	_	50
332				_	-	_	50
333				_	-	_	50
334					-		50
335							50
336				-	-		50
337					-		50
338		2018년			-		50
339	2018	재물조사요원	2019.2.12.				50
340		수당		-	-	-	50
				-	-	-	
341				-	-	-	50
342				-	-	-	50
343				-	-	-	50

연	회계	ار ا	지급내역				
번	연도	수당내용	지급일자	소속	직위(급)	성명	지급액
344				-	-	_	50
345				-	-	_	50
346				-	-	-	50
347				-	-	-	50
348				-	-	_	50
349				-	-	_	50
350				-	-	-	50
351				-	-	-	50
352				-	-	_	50
353				-	-	-	50
354				-	-	-	50
355				-	-	-	50
356				-	-	-	50
357				-	-	-	50
358				-	-	-	50
359				-	-	_	50
360				-	-	-	50
361				-	-	-	50
362				-	-	_	50
363				-	-	-	50
364				-	-	-	50
365				-	-	-	50
366	2017	2017년 < 관 직원 채용 면접위원 수당	2018.1.12.	-	-	-	50
367	2017	면접위원"수당	2010.1.12.	-	-	_	50
		합계					22,425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1	수입금 국고(대학회계) 지연 납입	
	<ul> <li>「국고금관리법」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수입금출납 공무원이 수입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에 납입하여야 하고,</li> </ul>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안당대학교는 '17. 3. 2. &처 지역선도화사업 계좌이자 10,312원을 자체수업계좌(신한은행 -)로 수납받고도510일이 지난 '18. 7. 25. 국고(대학회계)에 입금하는등 【붙임】 "수입금 국고(대학회계) 지연 납입현황"과 같이 '16. 12. 29.부터 '18. 9. 22.까지 총114건, 합계 347,351,427원을 자체수업으로 수납받고도짧게는 11일, 길게는 510일 지나 국고(대학회계)에입금한 사실이 있음	

## 수입금 국고(대학회계) 지연 납입 현황

					(=	• 전/
연번	내용	금액	계좌번호 (신한은행)	세외계좌 입금일	국고(대학 회계)납입일	지연 일수
1	-	10,312	-	2017.03.02	2018.07.25	510
2	-	444,200	-	2017.07.10	2018.11.16	494
3	-	190,320	-	2017.03.03	2018.07.03	487
4	-	5,540	-	2017.04.05	2018.07.03	454
5	-	5,980	-	2017.06.05	2018.07.03	393
6	-	192,889	-	2017.06.17	2018.07.03	381
7	-	4,946	-	2018.03.15	2019.02.22	344
8	-	1,480,860	-	2017.04.06	2018.02.13	313
9	-	5,020,060	-	2017.04.06	2018.02.13	313
10	-	8,270,500	_	2017.04.06	2018.02.13	313
11	-	1,787	-	2017.09.06	2018.07.03	300
12	-	30,342	_	2017.09.16	2018.07.03	290
13	-	78	-	2017.11.01	2018.07.03	244
14	-	8,326	_	2017.12.16	2018.07.03	199
15	-	2,601	_	2017.12.18	2018.07.03	197
16	-	524	_	2017.12.18	2018.07.03	197
17	-	94,862	_	2017.12.18	2018.07.03	197
18	_	10,004	_	2017.07.25	2018.01.26	185
19	_	11,255	_	2017.03.30	2017.09.06	160
20	-	3,735,590	_	2018.02.28	2018.07.25	147
21	_	1,200,000	_	2017.04.13	2017.09.06	146
22	_	80,661	_	2018.02.23	2018.07.03	130
23	_	2,228	_	2018.02.23	2018.07.03	130
24	_	9,152	_	2018.02.27	2018.07.03	126
25	_	34,843	_	2018.02.28	2018.07.03	125
26		2,128	_	2018.02.28	2018.07.03	125
27	-	101	_	2018.02.28	2018.07.03	125
28		1,288	_	2018.02.28	2018.07.03	125
29	-	1,525	_	2018.02.28	2018.07.03	125
30	_	11,590	_	2018.02.28	2018.07.03	125
31	-	59,549	-	2018.02.28	2018.07.03	125
32	-	177	-	2018.02.28	2018.07.03	125
33	-	17,562	-	2018.02.28	2018.07.03	125
34	-	1,023	-	2018.02.28	2018.07.03	123
	-		-			
35 36	-	88,310 453,570	-	2018.02.23	2018.06.18	115 112
37	-		-	2018.02.26		
38	<del>-</del>	341,140	-	2018.02.26	2018.06.18	112
39	-	73,190	-	2018.02.26	2018.06.18	112
	-	64,220	-	2018.02.27	2018.06.18	111
40	-	175,180 7,201	-	2018.03.02	2018.06.18	108
41	-	7,391	-	2018.03.17	2018.07.03	108
42	<u>-</u>	20,790	-	2017.05.22	2017.09.06	107

연번	 내용	금액	계좌번호	세외계좌	국고(대학	지연 알수
난건	୍ୟା ଚ		(신한은행)	입금일	회계)납입일	알수
43	<del>-</del>	1,330,500	-	2017.03.20	2017.06.29	101
44	<del>-</del>	6,000,000	-	2017.10.26	2018.01.31	97
45	-	45,000		2018.03.28	2018.07.03	97
46	-	5,983	-	2018.03.28	2018.07.03	97
47	-	90,774	-	2017.03.18	2017.06.01	75
48	-	7,000,000	-	2018.04.05	2018.06.18	74
49	-	18,400	-	2017.04.12	2017.06.23	72
50	-	100,000	-	2017.11.22	2018.01.31	70
51	-	4,016	-	2018.09.22	2018.11.27	66
52	-	27,488	-	2017.01.04	2017.02.28	55
53	-	691	-	2017.01.04	2017.02.28	55
54	-	770	-	2017.01.04	2017.02.28	55
55	-	2,673	-	2017.01.04	2017.02.28	55
56	-	72,011	-	2017.01.04	2017.02.28	55
57	-	60,000	-	2018.04.24	2018.06.18	55
58	-	850,000	-	2017.12.04	2018.01.26	53
59	-	8,100,000	-	2018.04.27	2018.06.18	52
60	-	271,902	-	2017.01.10	2017.02.28	49
61	-	100,000	-	2017.11.17	2018.01.03	47
62	-	600,000	-	2018.05.11	2018.06.18	38
63	-	150,000	-	2017.11.20	2017.12.27	37
64	-	150,000	-	2017.11.21	2017.12.27	36
65	-	350,000	-	2017.01.24	2017.02.28	35
66	-	500,000	-	2018.05.14	2018.06.18	35
67	-	587,400	-	2017.04.20	2017.05.24	34
68	-	168,300	_	2017.01.26	2017.02.27	32
69	-	18,100,000	-	2017.11.29	2017.12.27	28
70	-	100,000	-	2017.12.06	2018.01.03	28
71	-	150,000	_	2017.11.30	2017.12.27	27
72	-	7,500,000	-	2018.05.22	2018.06.18	27
73	-	41	-	2017.02.03	2017.02.28	25
74	-	36,000,000	-	2017.03.15	2017.04.04	20
75	-	200,000	_	2017.05.12	2017.05.31	19
76	-	7,500,000	_	2018.05.30	2018.06.18	19
77	-	96,600	-	2017.12.04	2017.12.22	18
78	-	4,414,740	_	2017.01.09	2017.01.26	17
79	_	7,716	-	2018.06.16	2018.07.03	17
80		1,505,000	_	2017.05.15	2017.05.30	15
81	_	173,419	_	2018.06.18	2018.07.03	15
82		795	-	2018.06.18	2018.07.03	15
83		118		2018.06.18	2018.07.03	15
84		714,000		2016.12.29	2017.01.12	14
85		321,910		2017.01.18	2017.01.12	14
86		346,000	_	2017.03.03	2017.03.17	14
87		1,000,000	<u>-</u>	2017.03.03	2017.03.17	14
88		88,005,000		2017.03.03	2017.03.17	14
89	<u> </u>	155,000	<u>-</u>	2017.03.03	2017.03.17	14
90	<del>-</del>	5,730,000		2017.03.13	2017.03.27	14
90	<del>-</del>	3,425,000	<del>-</del>	2017.03.24	2017.04.07	
71	-	3,423,000	-	2017.03.24	ZU17.U4.U/	14

연번	내용	금액	계좌번호 (신한은행)	세외계좌 입금일	국고(대학 회계)납입일	재연 알수
92	-	300,000	-	2017.06.07	2017.06.21	14
93	-	1,400	-	2018.01.30	2018.02.13	14
94	-	51,790	-	2018.01.30	2018.02.13	14
95	-	24,000	-	2017.01.13	2017.01.26	13
96	-	7,170,000	-	2017.01.13	2017.01.26	13
97	-	25,530,000	-	2017.01.13	2017.01.26	13
98	-	33,080,000	-	2017.01.13	2017.01.26	13
99	-	48,000	-	2017.01.13	2017.01.26	13
100	-	400,000	-	2017.02.14	2017.02.27	13
101	-	1,000,000	-	2017.03.07	2017.03.20	13
102	-	22,000	-	2017.04.25	2017.05.08	13
103	-	5,340,000	-	2017.04.25	2017.05.08	13
104	-	90,000	-	2017.01.06	2017.01.18	12
105	-	40,000	-	2017.02.15	2017.02.27	12
106	-	22,000	-	2017.02.15	2017.02.27	12
107	-	37,047	-	2017.03.22	2017.04.03	12
108	-	63,199	-	2018.06.21	2018.07.03	12
109	-	13,410	-	2018.06.21	2018.07.03	12
110	-	1,227	-	2018.06.21	2018.07.03	12
111	-	13	-	2018.06.21	2018.07.03	12
112	-	12,500	-	2017.02.16	2017.02.27	11
113	-	47,669,000	-	2017.03.06	2017.03.17	11
114	-	2,238,000	-	2017.03.06	2017.03.17	11
	합계	347,351,427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연번 22	지 적 사 항  평생교육원 강좌 수강 부적정  ○ 「국가공무원법」제56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평생교육법」제30조 제1항에는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안동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규정」제14조에 따르면 학습자는 각 과정별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하고,「종합스포츠센터회원가입 약관」제15조 및 "강좌무단사용자 조치안내(13.9.5.)"에 따르면 타인의 이용자 ID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강좌를 신청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평생교육원 종합스포츠센터 이용 제한 및 홈페이지와 안내데스크 게시판에 무단 이용자 이름과 사진을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안동대학교 ☆과 AJ는 '17. 2. 16. 본인 명의로 등록한 ● 원 종합스포츠센터 "」교실 주3회 오전 B01*"강좌를 수강하면서 일부 강좌를 배우자가 수강할 수있도록 자신의 이용자 카드(이용자 ID)를 임의 제공하여【붙임】"종합스포츠센터 강좌 수강 부적정 현황"과같이 '17. 1. 6.부터 '18. 2. 9,까지 총 49회(학습비: 1,350천원)에	<ul><li> 경고(1명)</li><li> 시정(회수)</li></ul>
	강좌를 수강하면서 일부 강좌를 배우자가 수강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이용자 카드(이용자 ID)를 임의 제공하여 【붙임】"종합스포츠센터 강좌 수강 부적정 현황"과	
	* 신청일 : '16.11.30, 수강기간 : '16.12.1.~'17.2.28, 수강료 : 240천원	

### 종합스포츠센터 강좌 수강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이용자	이용일자	요일	이용시각	수강과목	AJ 배우자 정 당 수강료	
1	AJ 배우자(이하 '배우자')	2017-01-06	금	13:08			
2	AJ	2017-01-12	목	18:10			
3	AJ	2017-01-14	토	11:20			
4	AJ	2017-01-15	일	12:49			
5	배우자	2017-01-16	월	11:15			
6	배우자	2017-01-19	목	10:49			
7	배우자	2017-01-25	수	12:34			
8	배우자	2017-01-26	목	10:10			
9	AJ	2017-02-01	수	18:42			
10	AJ	2017-02-04	토	11:18			
11	AJ	2017-02-05	일	14:35	∫교실 주3회	270	
12	배우자	2017-02-06	월	10:56	오전 B01	<b>2</b> , 0	
13	AJ	2017-02-08	수	20:03			
14	AJ	2017-02-09	목	18:05			
15	배우자	2017-02-15	수	10:55			
16	배우자	2017-02-16	목	11:33			
17	AJ	2017-02-16	목	18:07			
18	AJ	2017-02-17	금	20:49			
19	AJ	2017-02-23	목	18:11			
20	AJ	2017-02-24	금	18:11			
21	AJ	2017-02-25	토	18:04			
22	배우자	2017-02-27	월	10:50			
23	AJ	2017-03-02	목	20:36			
24	AJ	2017-03-03	금	18:15			
25	배우자	2017-03-06	월	14:31			
26	배우자	2017-03-07	화	13:24			
27	AJ	2017-03-08	수	18:42			
28	AJ	2017-03-09	목	18:36			
29	AJ	2017-03-10	금	18:11	∫교실 주3회	270	
30	AJ	2017-03-14	화	18:50	야간 B05	_, ,	
31	AJ	2017-03-15	수	18:31			
32	AJ	2017-03-16	목	18:16			
33	AJ	2017-03-17	금	19:19			
34	AJ	2017-03-18	토	13:56			
35	배우자	2017-03-20	월	13:33			

연번	 이용자	이용일자	요일	이용시각	수강과목	AJ 배우자 정
36	AJ	2017-03-21	화	18:08		당 수강료
37	AJ	2017-03-21	<u> </u>	18:16		
38	AJ	2017-03-22	목	18:24		
39	AJ	2017-03-25	토	11:02		
40	AJ	2017-03-23	<u>모</u> 월	18:15		
41	AJ	2017-03-27	토	16:53		
42	AJ	2017-04-01	목	18:13		
43	AJ	2017-04-13	금	20:42		
44	AJ	2017-04-14	화	18:36		
			· ·			
45	AJ	2017-04-21	금 일	20:47		
46	AJ			10:28		
47	AJ	2017-04-25	화	18:48		
48	AJ	2017-04-27	목	18:32		
49	배우자	2017-04-28	금 <b>월</b>	19:09		
50	배우자	2017-05-01	<u></u> 결 월	10:48		
51	AJ	2017-05-01		18:33		
52	AJ	2017-05-02	화	18:19		
53	배우자	2017-05-11	목	10:42		
54	AJ	2017-05-13	토	17:22		
55	AJ	2017-05-18	목	18:37		
56	AJ		금이	19:15		
57	AJ	2017-05-21	일	17:01		
58	배우자	2017-05-22	월 모	13:37		
59	AJ	2017-05-25	목	18:21		
60	AJ □ □ □ □ □	2017-05-27	토 수	13:36		
61	배우자	2017-05-31	목	13:09		
63	배우자 	2017-06-01	<u></u> 목	10:45 20:36		
64	AJ	2017-06-01	목	18:32		
65	AJ AJ	2017-06-08	일	16:50		
66	AJ  배우자	2017-06-13	<sub>크</sub> 화	14:06		
67	배우자 배우자	2017-06-13	수 수	13:06		
68		2017-06-14	금			
69	AJ AJ	2017-06-16	토	18:35 18:32	∫교실 주3회	270
70	AJ 배우자	2017-06-17	<u>노</u> 화	11:08	야간 B05	270
70 71	배우자 배우자	2017-06-20	<u>화</u> 수	10:25		
72	AJ	2017-06-21	<u>ナ</u> 수	20:51		
73	AJ	2017-06-28	<u></u> 구 금	19:18		
73	AJ	2017-08-30	므 일	10:45		
75	 배우자	2017-07-02	<u></u> 원	10:43		
		2017-07-03	목			
76	AJ	2017-07-13	中	19:41		

연번	이용자	이용일자	요일	이용시각	수강과목	AJ 배우자 정 당 수강료
77	배우자	2017-07-17	월	10:54		0 1 0 ==
78	배우자	2017-07-18	화	11:15		
79	배우자	2017-07-21	금	10:58		
80	AJ	2017-07-28	금	19:42		
81	 배우자	2017-07-31	월	11:09		
82	AJ	2017-08-04	금	19:12		
83	AJ	2017-08-05	토	16:55		
84	 배우자	2017-08-07	월	10:45		
85	배우자	2017-08-08	화	10:58		
86	AJ	2017-08-11	금	20:02		
87	AJ	2017-08-14	월	19:27		
88	AJ	2017-08-17	목	19:14		
89	AJ	2017-08-18	금	19:30		
90	AJ	2017-08-19	토	11:30		
91	배우자	2017-08-29	화	10:12		
92	AJ	2017-08-31	목	18:42		
93	배우자	2017-09-01	금	10:37		
94	배우자	2017-09-08	금	18:01		
95	AJ	2017-09-09	토	10:23		
96	배우자	2017-09-11	월	9:12		
97	AJ	2017-09-14	목	18:24		
98	AJ	2017-09-16	토	10:28		
99	배우자	2017-09-18	월	10:36		
100	배우자	2017-09-19	화	11:14		
101	AJ	2017-09-22	금	19:02		
102	AJ	2017-09-26	화	18:55		
103	AJ	2017-09-28	목	18:35		
104	배우자	2017-10-11	수	15:10		
105	배우자	2017-10-12	목	14:26	↓교실 주3회 야간 B05	270
106	AJ	2017-10-12	목	18:11	POS	
107	AJ	2017-10-17	화	19:11		
108	AJ	2017-10-19	목	18:17		
109	배우자	2017-10-23	월	9:59		
110	AJ	2017-10-24	화	18:20		
111	AJ	2017-10-26	목	19:59		
112	AJ	2017-11-02	목	19:03		
113	AJ	2017-11-03	금	18:44		
114	AJ	2017-11-09	목	20:21		
115	AJ	2017-11-10	금	19:09		
116	AJ	2017-11-12	일	14:37		
117	배우자	2017-11-13	월	13:14		

연번	이용자	이용일자	요일	이용시각	수강과목	AJ 배우자 정 당 수강료
118	AJ	2017-11-23	목	18:13		
119	AJ	2017-12-01	금	19:35		
120	AJ	2017-12-02	토	16:23		
121	AJ	2017-12-04	월	13:31		
122	배우자	2017-12-07	목	12:49		
123	배우자	2017-12-15	금	10:52		
124	AJ	2017-12-15	금	10:52		
125	AJ	2017-12-17	일	10:30		
126	AJ	2017-12-23	토	12:31		
127	배우자	2017-12-28	목	10:42		
128	AJ	2017-12-28	목	18:11		
129	AJ	2018-01-04	목	18:03		
130	AJ	2018-01-08	월	20:53		
131	AJ	2018-01-10	수	20:52		
132	AJ	2018-01-11	목	18:34		
133	배우자	2018-01-13	토	13:56	1-11-20-2	
134	배우자	2018-01-14	일	12:28	∫교실 주3회 야간 B05	270
135	배우자	2018-01-15	월	10:17	1 2 200	
136	AJ	2018-01-16	화	18:34		
137	AJ	2018-01-19	금	18:09		
138	배우자	2018-01-22	월	10:48		
139	배우자	2018-01-23	화	10:44		
140	AJ	2018-01-25	목	18:57		
141	AJ	2018-01-26	금	20:06		
142	AJ	2018-01-30	화	18:02		
143	AJ	2018-02-01	목	18:11		
144	AJ	2018-02-02	금	19:19		
145	AJ	2018-02-05	월	12:20		
146	AJ	2018-02-07	수	20:50		
147	배우자	2018-02-08	목	11:06		
148	AJ	2018-02-08	목	20:08		
149	배우자	2018-02-09	금	14:25		
합계						1,350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3	입학전형 회피 신청자 미배제	
	○ 「안동대학교 회피·제척시스템 운영 지침('2015.9.11. 개정, 2018.8.14. 개정)」에 따르면 대학 입학 지원자 평가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입학사정관이나 교직원의 자녀, 친인척, 지인 등이 수험생이 되는 특수한 관계의 경우 입학전형 관련 평가 및 관리 업무에서 배제하게 되어있고,「안동대학교 회피·제척 시스템 운영 계획(2017년, 2019년)」에 따르면 수험생과 특수 관계를 가진 입학사정관 및 교직원을 모든 입학전형에서 배제	` '
	하여 제척하게 되어있는데도,  - 안동대학교는 2017. 9. 14. ★과 AK가 ★과 2018학년도 수시모집(ANU미래인재전형)에 자녀가 지원하여 '회피자진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입학전형 시 배척·제척하지 아니하고 위 전형 외 다른 총 16개 모집단위별 전형 서류평가에 참여시키는 등 【붙임】 "입학전형 회피 신청자 평가업무 참여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위 교수 AK 등 수험생과특수 관계가 있는 교직원 4명이 '회피 자진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총 45개 모집단위별 입학전형의 서류 및면접평가에 참여*시킨 사실이 있음.  * 입시전형 대비 평가위원 부족 등의 사유로 회피 신청자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함	

## 입학전형 회피 신청자 평가업무 참여 현황

					회고	되 신	]청				입	학전형 업무 참여		
연 번	성명	소속	직급	신청일	한면서	모집시기	모집 단위	전형	대상	모집시기	전형유형	모집단위	참여 유형	참여일
				2017.9.14	2018	수시	<b>☎</b> 과	ANU 미래 인재 전형	차녀	수시	농어촌학생전형 농어촌학생전형 농어촌학생전형 농어촌학생전형 농어촌학생전형 ANU미래인재전형 ANU미래인재전형 ANU미래인재전형 ANU미래인재전형 ANU미래인재전형 ANU미래인재전형	- - - - - - - - -	서류 서류 서류 서류 서류 서류 서류 서류 서류	2017.9.22. ~ 2017.10.16.
1	AK	<b>★</b> 과	-								사회적배려자전형 사회적배려자전형 사회적배려자전형 농어촌학생전형 ANU미래인재전형	- - - -	서류 서류 서류 면접 서류	2017.10.27
				2019.9.11	2020	수시	₹111	일반 학생 전형	자녀	수시	ANU미래인재전형 ANU미래인재전형 ANU미래인재전형 ANU미래인재전형 ANU미래인재전형 ANU미래인재전형 ANU미래인재전형 사회적배려자전형 사회적배려자전형 농어촌학생전형 농어촌학생전형 농어촌학생전형	- - - - - - - - -	서류 서류 서류 서류 서류 서류 서류 서류 서류 서류	2019.9.20. 201910.8.
	,	1)									농어촌학생전형	-	면접	2020.10.26
	2	는계 									30회 ANU미래인재전형	_	서류	
2	_	_	_	2017.9.18	2018	수시	□ 과	일반 학생 전형	4촌	수시	ANU미래인재전형 사회적배려자전형 농어촌학생전형 농어촌학생전형	- - - -	서류 서류 서류 서류 서류	2017.9.22.~ 2017.10.16.
						^	<u>'</u>	전형		^	ANU미래인재전형	-	면접	2017.10.28
											농어촌학생전형	-	면접	2017.10.27
											일반학생전형	-	면접	2017.10.14

					<u> </u> ত্রা	되 신	]청			입학전형 업무 참여						
연 번	성명	소속	직급	신청일	하면서	모집시기	모집 단위	전형	대상	모집시기	전형유형	모집단위	참여 유형	참여일		
	্র	는계								8ই						
											ANU미래인재전형	-	면접			
3	-	-	-	2019.9.26	2020	수시	<b></b>	ANU 미래 인재 전형	처 조 카	수시	농어촌학생전형	-	면접	2020.10.26		
	্র	느계		2ঐ												
											ANU미래인재전형	-	서류			
								الدولم	、トネ	진	ANU미래인재전형	-	서류	2019.9.20.		
				2019.9.05	2020	수 시	目부	일반 학생 전형	조카손자	수 시	ANU미래인재전형	-	서류	~ 2019.10.8.		
4	-	-	_					[신청	자		농어촌학생전형	-	서류			
											농어촌학생전형	-	서류			
											5ঐ					
	합겨										45회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4	예능 실기고사 평가위원 구성 부적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한국대학교육 협의회가 공표한「2018학년도 및 2019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대학은 입학전형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예・체능 실기 고사 관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 평가위원의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도,	○ 통보 - 향후 대학입학전형 관련 예·체능 실기 고사의 평가위원 구성 시 예·체능 실기고사 관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평가위원 구성 조건을
	- 안동대학교는 2017. 10. 14. 2018학년도 ⊙과 ● 전공수시 모집 실기우수자전형 실기 고사를 시행하면서 내부인(⊙과 교수)만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실기고사 평가를 실시하는 등【붙임】"⊙과 실기 고사 평가위원 구성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위의 ⊙과 ●전공 등 3개 전공의 수시모집 실기고사 시 내부인만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한 사실이 있음.	반영하기 바람

### ⊙과 실기 고사 평가위원 구성 현황

		וד דו		וד או	พษ	ור וג	평가위원 구성	
순	학년도	모집 시기	전형	모집 단위	세부 전공	실기 일자	내부 위원	외부 위원
1			실기우수자전형	⊙과	•	2017.10.14	-	미구성
2	2018	수시	실기우수자전형	⊙과	-	2017.10.14	-	미구성
3			실기우수자전형	⊙과	-	2017.10.14	-	미구성
$oxed{4}$			실기우수자전형	⊙과	•	2018.10.20	-	미구성
5	2019	수시	실기우수자전형	⊙과	-	2018.10.20	-	미구성
6			실기우수자전형	⊙과	-	2018.10.20	-	미구성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5	<ul> <li>교사자격증 자격기준 부여 부적정</li> <li>○ 「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2]에 따르면</li> <li>영양교사(2급) 자격기준 제1호는 대학·산업대학의 식품학</li> </ul>	○ 경고(4명) ○ 통보
	또는 영양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5호는 대학·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일정한 교직과(敎職科) 학점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8년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에 따르면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5호의 대상자(교직과정 이수자)가 ▶, 사범계학과, 교직과정에서 복수 전공을 한 경우 자격기준을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제5호로 부여하게 되어있는데도,	- AL 등 졸업자 7 명의 자격기준 호수를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정정 처리하여 자격증을
	- 안동대학교는 2018. 2. 23. ■과 졸업예정자 AL에게 영양교사(2급) 자격기준 '제1호'가 아닌 '제5호'로 기재된 교사자격증을 발급하는 등【붙임】"교사자격증자격기준 부적정 부여 현황"과 같이 2018. 2월부터 2019. 2월까지 위 AL 등 6명에게 영양교사(2급) 자격기준을 '제1호'가 아닌 '제5호'로 부여하고, ◈과의 중국어 정교사(2급)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AM이 복수전공으로 소과에서 이수한 영어 정교사(2급) 자격기준을 '제5호'가 아닌 '제1호'로 부여하여 교사자격증을 발급한사실이 있음.	

【붙임】

### 교사자격증 자격기준 부적정 부여 현황

											자	부부	겨	
연	자격	자격	자격 자격중 표시 ., , , , , , , , , ,		자격	실제발급			정상발급					
번	종별	급별	번호	과목	성명	학과	주민번호	발급일	(대학)			(초 <del>중등교육법</del> )		
								1	조	항	호	조	항	호
1	영양 교사	2급	-	-	AL	■과	-	2018.02.23	21	2	<u>5</u>	21	2	1
2	영양 교사	2급	-	-	-	<b>■</b> 과	-	2018.02.23	21	2	5	21	2	1
3	영양 교사	2급	-	-	-	■과	-	2018.02.23	21	2	<u>5</u>	21	2	1
4	영양 교사	2급	-	-	-	<b>■</b> 과	-	2018.08.17	21	2	<u>5</u>	21	2	1
5	영양 교사	2급	-	-	-	■과	-	2019.02.15	21	2	<u>5</u>	21	2	1
6	영양 교사	2급	-	-	ı	■과	-	2019.02.15	21	2	<u>5</u>	21	2	1
7	중등	정교사	-	중국어	AM	<ul><li>◆과</li><li>(교주화정)</li></ul>	_	2019.02.15	21	2	5	21	2	5
	학교	(2급)	-	영어*	Aivi	△과 (복수전공)	-	2017.02.13	21	2	1	21	2	<u>5</u>

<sup>\*</sup> AM은 중국어 정교사(2급) 교직과정(◈과) 이수자이며 △과에서 영어 정교사(2급)자격에 대한 복수전공을 이수함.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6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서류(영양사 면허증) 미구비	
	○ 「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2]에 따르면 영양교사(2급) 자격기준 제2호는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	ㅇ경고(4명)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고,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2017.8.17. 개정)」	
	제9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학위취득이 확정된 자로서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해당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받은 대학의 장은 영양교사 무시험검정인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영양사 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하고 다만, 신청인이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양사	
	면허증 서류 사본을 첨부하게 되어있는데도,	
	- 안동대학교는 2018. 1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전공 졸업예정자 AN(학번:-)에게 교원자격무	
	시험검정 신청 시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	
	면허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영양사 면허증	
	확인없이 영양사 2급 교원자격증을 발급하는 등 【붙임】	
	"영양사 면허증 서류 사본 미첨부 현황"과 같이 2018. 1월	
	부터 2019. 1월 까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위 AN 등 졸업예정자 7명에 대하여 영양사	
	면허증 사본을 첨부케 하는 방법을 통해 소지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영양교사2급 교원자격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음.	
	<ul><li>無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영양사 면허증 확인관련 사항을 영양교사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에게 미안내함</li></ul>	

### 영양사 면허증 서류 사본 미첨부 현황

دم				무	시험검정 🗸	신청 및 구	비서류	<u>.</u> .	2원자격 빌	·급
연 번	학번	성명	전공	신청일	검정원서	정보이용 동의서	영양사면허증 사본 첨부	자격종별	자격증 번호	발급일
1	-	AN	-	2018.1.5	제출	미제출	미첨부	영양교사 (2급)	-	2018.2.23
2	-	-	-	2018.1.5	제출	미제출	미첨부	영양교사 (2급)	-	2018.2.23
3	-	-	-	2018.7.18	제출	미제출	미첨부	영양교사 (2급)	-	2018.8.17
4	-	-	-	2018.7.18	제출	미제출	미첨부	영양교사 (2급)	-	2018.8.17
5	-	-	-	2018.7.19	제출	미제출	미첨부	영양교사 (2급)	-	2018.8.17
6	-	-	-	2018.7.19	제출	미제출	미첨부	영양교사 (2급)	-	2018.8.17
7	-	-	-	2019.1.17	제출	미제출	미첨부	영양교사 (2급)	-	2019.2.15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7	평생교육원 민간자격 표시의무 미이행	
	○ 「자격기본법」제33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31조의5에	ㅇ 주의(4명)
	따르면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자격의 종류,	
	등록 또는 공인번호,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 등에 드는 총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 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전화번호,	
	등록자격의 경우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안동대학교 ◐원은 2017학년도 1학기 '미술심리상담사	
	2급' 민간자격증 취득과정을 전단지 및 ◐원 누리집을	
	통해 광고하면서 자격의 종류, 등록 또는 공인번호,	
	민간자격 관리·운영하는 자,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	
	총비용과 그 세부내역별 비용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민간자격 관리자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는 등	
	【붙임】"◐원 민간자격 표시의무 미이행 현황"과 같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1학기까지 민간자격증	
	취득 과정을 광고하면서 위 '미술심리상담사 2급' 등	
	총 10개(중복 제외) 과정의 민간자격에 대한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u>●원 민간자격 표시의무 미이행 현황</u>

				1	민간자격	표시의무	이행 여부(누리	집 및 전단	기)
연 번	학기	강좌명 (민간자격명)	자격발급 기관	자격의 종류	등록 또는 공인번호	민간자격 관리· 운영자	자격취득 및 검정 총비용과 그 세부 내역별 비용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민간자 격 관리자 전화번 호	등록자격 은 공인자격 이 아님 알림
1	2017-1	미술심리상담사 기초 과정(2급) (미술심리상담사 2급)	-	×	×	×	×	×	0
2	2017-1	캘리그라피 &손그림수채 일러스트(3급) (캘리그라피 3급)	-	×	×	×	×	×	0
3	2017-1	노인심리상담사 (2급) (노인심리상담사2급)	-	×	×	×	×	×	0
4	2017-2	미술심리상담사 기초 과정(2급) (미술심리상담사2급)	-	×	×	×	×	×	0
5	2017-2	미술심리상담사 기초 과정(1급) (미술심리상담사1급)	-	×	×	×	×	×	0
6	2017-2	책놀이지도사 (창의책놀이지도사2급)	-	×	×	×	×	×	0
7	2017-2	노인심리상담사 (1급) (노인심리상담사1급)	-	×	×	×	×	×	0
8	2018-1	미술심리상담사 기초 과정(2급) (미술심리상담사2급)	-	×	×	×	×	×	0
9	2018-1	미술심리상담사 기초 과정(1급) (미술심리상담사1급)	-	×	×	×	×	×	0
10	2018-1	캘리그라피 &손그림수채 일러스트(3급) (캘리그라피 3급)	-	×	×	×	×	×	0

				١		표시의무	이행 여부(누리?	집 및 전단	지)
연 번	학기	강좌명 (민간자격명)	자격발급 기관	자격의 종류	등록 또는 공인번호	민간자격 관리· 운영자	자격취득 및 검정 총비용과 그 세부 내역별 비용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민간자 격 관리자 전화번 호	등록자격 은 공인자격 이 아님 알림
11	2018-1	노인심리상담사 (2급) (노인심리상담사2급)	-	×	×	×	×	×	0
12	2018-1	타로심리상담사 (타로심리상담사(1급)	-	×	×	×	×	×	0
13	2018-2	미술심리상담사 기초 과정(2급) (미술심리상담사2급)	-	×	×	×	×	×	0
14	2018-2	미술심리상담사 기초 과정(1급) (미술심리상담사1급)	-	×	×	×	×	×	0
15	2018-2	노인심리상담사 (2급) (노인심리상담사2급)	-	×	×	×	×	×	0
16	2019-1	미술심리상담사 기초 과정(2급) (미술심리상담사2급)	-	×	×	×	×	×	0
17	2019-1	미술심리상담사 기초 과정(1급) (미술심리상담사1급)	-	×	×	×	×	×	0
18	2019-1	창의 책 놀이지도사(1급) (창의책놀이지도사1급)	-	×	×	×	×	×	0
19	2019-1	시 낭송지도사(2급) (시낭송지도사2급)	-	×	×	×	×	×	0
20	2019-1	타로심리상담사 (타로심리상담사(1급)	-	×	×	×	×	×	0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8	현장실습 현장지도 미실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017-115호,	ㅇ 경고(15명)
	2017.3.1.) 」 제15조 4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실습기관의	ㅇ 주의(5명)
	장과 협의하여 지도(담당)교수 등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필요한 현장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고, 「안동대학교 현장	
	실습 운영 규정」제12조 및「안동대학교 인턴십 운영	
	지침」 제8조에 따르면 현장실습 교육의 실태를 파악	
	하고 개선을 협의하며 실습학생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과(부)장 또는 담당교수는 정기수업기간 교과목당 2회	
	이상, 계절수업기간 1회 이상 실습기관별 방문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안동대학교 ◑과 AO은 2017학년도 여름학기 '♪'	
	과목을 담당하면서 ′17. 6. 21.부터 7. 18.까지 (주)□□	
	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 AP에 대하여 현장지도를	
	하지 않는 등【붙임】"현장실습 현장지도 미실시	
	현황"과 같이 위 AO 등 교원 20명은 2017학년도 여름	
	학기부터 2019학년도 겨울학기까지 해당 학기에 현장	
	실습(인턴십 포함)에 참여한 학생 총 284명에 대하여 현장	
	지도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현장실습 현장지도 미실시 현황

연번	학기	학과	교과목명	학년	학번	성명	실습기간	연수기업명	지도교수
1	2017-여름	①라	<b>&gt;</b>	3	-	AP	2017.06.21. ~2017.07.18.	-	교수 AO
2	2017-여름	<b>①</b> 과	<b>&gt;</b>	3	-	-	2017.06.21. ~2017.07.18.	-	교수 AO
3	2017-여름	<b>①</b> 과	<b>&gt;</b>	3	-	-	2017.06.21. ~2017.07.18.	-	교수 AO
4	2017-여름	<b>①</b> 과	<b>&gt;</b>	3	-	-	2017.06.21. ~2017.07.18.	-	교수 AO
5	2017-여름	①과	<b>&gt;</b>	3	-	-	2017.06.21. ~2017.07.18.	-	교수 AO
6	2017-여름	①과	>	3	-	-	2017.06.21. ~2017.07.18.	-	교수 AO
7	2017-여름	①과	>	3	-	-	2017.06.21. ~2017.07.18.	-	교수 AO
8	2017-여름	①라	>	4	-	-	2017.06.21. ~2017.07.18.	-	교수 AO
9	2017-여름	<b>①</b> 과	>	3	-	-	2017.06.21. ~2017.07.18.	-	교수 AO
10	2017-여름	<b>O</b> P	<b>&gt;</b>	3	-	-	2017.06.21. ~2017.07.18.	-	교수 AO
11	2017-여름	①과	<b>&gt;</b>	3	-	-	2017.06.21. ~2017.07.18.	-	교수 AO
12	2017-여름	<b>①</b> 과	<b>&gt;</b>	3	-	-	2017.06.21. ~2017.07.18.	-	교수 AO
13	2017-여름	<b>①</b> 과	<b>&gt;</b>	3	-	-	2017.06.21. ~2017.07.18.	-	교수 AO
14	2017-여름	①라	>	3	-	-	2017.06.21. ~2017.07.18.	-	교수 AO
15	2017-여름	<b>O</b> P	>	3	-	-	2017.06.21. ~2017.07.18.	-	교수 AO
16	2017-여름	①과	>	3	-	-	2017.06.21. ~2017.07.18.	-	교수 AO
17	2017-여름	①과	>	3	-	-	2017.06.21. ~2017.07.18.	-	교수 AO
18	2017-여름	①과	>	3	-	-	2017.06.21. ~2017.07.18.	-	교수 AO
19	2017-여름	①라	>	3	-	-	2017.06.21. ~2017.07.18.	-	교수 AO
20	2017-여름	■과	-	4	-	-	2017.06.26. ~2017.07.07.	-	-
21	2017-여름	■과	-	4	-	-	2017.06.26. ~2017.07.07.	-	-
22	2017-여름	■과	-	4	-	-	2017.06.26. ~2017.07.07.	-	-
23	2017-여름	■과	-	4	-	-	2017.06.26. ~2017.07.07.	-	-
24	2017-여름	■과	-	4	-	-	2017.06.26. ~2017.07.07.	-	-
25	2017-여름	■과	-	4	-	-	2017.06.26. ~2017.07.07.	-	-
26	2017-여름	■과	-	4	-	-	2017.06.26. ~2017.07.07.	-	-
27	2017-겨울	<b>◆</b> 과	-	4	-	-	2017.12.26. ~2018.01.23.	-	-
28	2017-겨울	<b>◆</b> 과	-	3	-	-	2017.12.26. ~2018.01.23.	-	-
29	2017-겨울	<b>◆</b> 과	-	3	-	-	2017.12.26. ~2018.01.23.	-	-

30     2017-겨울       31     2017-겨울       32     2017-겨울       33     2017-겨울       34     2017-겨울	◆과 ◆과 ▲과 ▲과	- - -	3 3 4	-	-	2017.12.26. ~2018.01.23.	-	
32     2017-겨울       33     2017-겨울	<b>Л</b> Д			-				
33 2017-겨울	△斗	-	4		-	2018.01.02. ~2018.01.29.	-	-
	<u> </u>	-		-	-	2017.12.26. ~2018.01.23.	-	-
34 2017-겨울	-		4	-	-	2017.12.26. ~2018.01.23.	-	-
		-	3	-	-	2017.12.26. ~2018.01.23.	-	-
35 2017-겨울	-	-	4	-	_	2017.12.26. ~2018.01.23.	-	-
36 2017-겨울	-	-	4	-	_	2017.12.26. ~2018.01.23.	-	-
37 2017-겨울	-	-	4	-	-	2017.12.26. ~2018.01.23.	-	-
38 2017-겨울	-	-	4	-	-	2017.12.26. ~2018.01.23.	-	-
39 2017-겨울	-	-	4	-	-	2017.12.26. ~2018.01.23.	-	-
40 2017-겨울	-	-	4	-	-	2017.12.26. ~2018.01.23.	-	-
41 2017-겨울	-	-	3	-	-	2017.12.26. ~2018.01.23.	-	-
42 2017-겨울	-	-	3	-	-	2017.12.26. ~2017.01.23.	-	-
43 2017-겨울	-	-	3	-	-	2018.01.18. ~2018.02.14.	-	-
44 2017-겨울	-	-	3	-	-	2017.12.26. ~2018.01.23.	-	-
45 2017-겨울	-	-	3	-	-	2018.01.02. ~2018.01.29.	-	-
46 2017-겨울	-	-	3	-	-	2017.12.26. ~2018.01.23.	-	-
47 2017-겨울	-	-	3	-	-	2017.12.26. ~2018.01.23.	-	-
48 2017-겨울	-	-	3	-	-	2017.12.26. ~2018.01.23.	-	-
49 2017-겨울	-	-	3	-	-	2017.12.26. ~2018.01.23.	-	-
50 2017-겨울	-	-	3	-	-	2017.12.26. ~2018.01.23.	-	-
51 2017-겨울	-	-	3	-	-	2017.12.26. ~2018.01.23.	-	-
52 2017-겨울	-	-	3	-	-	2017.12.26. ~2018.01.23.	-	-
53 2017-겨울	-	-	3	-	-	2018.01.02. ~2018.01.29.	-	-
54 2017-겨울	-	-	3	-	-	2017.12.26. ~2018.01.23.	-	-
55 2017-겨울	-	-	3	-	-	2017.12.26. ~2018.01.23.	-	-
56 2017-겨울	-	-	3	-	-	2017.12.26. ~2018.01.23.	-	-
57 2017-겨울	-	-	3	-	-	2017.12.26. ~2018.01.23.	-	-
58 2017-겨울	-	-	4	-	-	2017.12.26. ~2017.01.23.	-	-
59 2017-겨울	-	-	3	-	-	2018.01.18. ~2018.02.14.	-	-
60 2017-겨울	-	-	4	-	-	2017.12.26. ~2018.01.23.	-	-
61 2017-겨울	-	-	3	-	-	2018.01.15. ~2018.02.09.	-	-

연번	학기	학과	교과목명	학년	학번	성명	실습기간	연수기업명	지도교수
62	2017-겨울	-	-	3	-	-	2018.01.08. ~2018.02.02.	-	-
63	2017-겨울	-	-	4	-	_	2017.12.26. ~2018.01.23.	-	-
64	2017-겨울	-	-	3	-	-	2017.12.26. ~2018.01.23.	-	-
65	2017-겨울	-	-	3	-	-	2017.12.26. ~2018.01.23.	-	-
66	2017-겨울	-	-	3	-	-	2017.12.26. ~2018.01.23.	-	-
67	2017-겨울	-	-	3	-	-	2017.12.26. ~2018.01.23.	-	-
68	2017-겨울	-	-	3	-	-	2017.12.26. ~2018.01.23.	-	-
69	2017-겨울	-	-	3	-	-	2017.12.26. ~2018.01.23.	-	-
70	2017-겨울	-	-	3	-	-	2017.12.26. ~2018.01.23.	-	-
71	2017-겨울	-	-	3	-	-	2017.12.26. ~2018.01.23.	-	-
72	2017-겨울	-	-	3	-	-	2017.12.26. ~2018.01.23.	-	-
73	2017-겨울	-	-	3	-	-	2017.12.26. ~2018.01.23.	-	-
74	2017-겨울	-	-	3	-	-	2017.12.26. ~2018.01.23.	-	-
75	2017-겨울	-	-	3	-	-	2017.12.26~2 018.01.23	-	-
76	2017-겨울	-	-	3	-	-	2017.12.26. ~2018.01.23.	-	-
77	2017-겨울	-	-	3	-	-	2017.12.26. ~2018.01.23.	-	-
78	2017-겨울	-	-	3	-	-	2017.12.26. ~2018.01.23.	-	-
79	2017-겨울	-	-	3	-	-	2017.12.26. ~2018.01.23.	-	-
80	2017-겨울	-	-	3	-	-	2017.12.26. ~2018.01.23.	-	-
81	2017-겨울	-	-	3	-	-	2017.12.26. ~2018.01.23.	-	-
82	2017-겨울	-	-	3	-	-	2017.12.26. ~2018.01.23.	-	-
83	2017-겨울	-	-	3	-	-	2017.12.26. ~2018.01.23.	-	-
84	2017-겨울	-	-	3	-	-	2017.12.26. ~2018.01.23.	-	-
85	2017-겨울	-	-	3	-	-	2017.12.26. ~2018.01.23.	-	-
86	2017-겨울	-	-	3	-	-	2017.12.26. ~2018.01.23.	-	-
87	2017-겨울	-	-	3	-	-	2017.12.26. ~2018.01.23.	-	-
88	2017-겨울	-	-	3	-	-	2017.12.26. ~2018.01.23.	-	-
89	2017-겨울	-	-	3	-	-	2017.12.26. ~2018.01.23.	-	-
90	2017-겨울	-	-	3	-	-	2018.01.08. ~2018.02.02.	-	-
91	2017-겨울	-	-	3	-	-	2018.01.18. ~2018.02.14.	-	-
92	2017-겨울	-	-	3	-	-	2018.01.15. ~2018.02.09.	-	-
93	2017-겨울	-	-	3	-		2017.12.26. ~2018.01.23.	-	-

연번	학기	학과	교과목명	학년	학번	성명	실습기간	연수기업명	지도교수
94	2017-겨울	-	-	3	-	-	2017.12.26. ~2018.01.23.	-	-
95	2017-겨울	-	-	3	-	-	2017.12.26. ~2018.01.23.	-	-
96	2017-겨울	-	-	3	-	-	2017.12.26. ~2018.01.23.	-	-
97	2017-겨울	-	-	3	-	-	2018.01.08. ~2018.02.02.	-	-
98	2017-겨울	-	-	3	-	-	2017.12.26. ~2018.01.23.	-	-
99	2017-겨울	-	-	3	-	-	2018.01.08. ~2018.02.02.	-	-
100	2017-겨울	-	-	3	-	-	2017.12.26. ~2018.01.23.	-	-
101	2017-겨울	-	-	3	-	-	2018.01.03. ~2018.01.30.	-	-
102	2017-겨울	-	-	3	-	-	2017.12.26. ~2018.01.23.	-	-
103	2017-겨울	-	-	3	-	-	2018.01.08. ~2018.02.02.	-	-
104	2017-겨울	-	-	3	-	-	2017.12.26. ~2018.01.23.	-	-
105	2017-겨울	-	-	4	-	-	2017.12.26. ~2018.01.23.	-	-
106	2017-겨울	-	-	4	-	-	2017.12.26. ~2018.01.23.	-	-
107	2017-겨울	-	-	3	-	-	2018.01.02. ~2018.01.29.	-	-
108	2017-겨울	-	-	3	-	-	2017.12.26. ~2018.01.23.	-	-
109	2017-겨울	-	-	3	-	-	2017.12.26. ~2018.01.23.	-	-
110	2017-겨울	-	-	3	-	-	2017.12.26. ~2018.01.23.	-	-
111	2017-겨울	-	-	3	-	-	2018.01.18. ~2018.02.14.	-	-
112	2017-겨울	-	-	4	-	-	2017.12.26. ~2018.01.23.	-	-
113	2017-겨울	-	-	3	-	-	2018.01.02. ~2018.01.29.	-	-
114	2017-겨울	-	-	4	-	-	2017.12.26. ~2018.01.23.	-	-
115	2017-겨울	-	-	3	-	-	2017.12.26. ~2018.01.23.	-	-
116	2018-여름	-	-	3	-	-	2018.06.25. ~2018.07.20.	-	-
117	2018-여름	-	-	3	-	-	2018.06.25. ~2018.07.20.	-	-
118	2018-여름	-	-	3	-	-	2018.06.25. ~2018.07.20.	-	-
119	2018-여름	-	-	3	-	-	2018.06.25. ~2018.07.20.	-	-
120	2018-여름	-	-	3	-	-	2018.06.25. ~2018.07.20.	-	-
121	2018-여름	-	-	3	-	-	2018.06.25. ~2018.07.20.	-	-
122	2018-여름	-	-	3	-	-	2018.06.25. ~2018.07.20.	-	-
123	2018-여름	-	-	3	-	-	2018.06.25. ~2018.07.20.	-	-
124	2018-여름	-	-	3	-	-	2018.06.25. ~2018.07.20.	-	-

연번	학기	학과	교과목명	학년	학번	성명	실습기간	연수기업명	지도교수
125	2018-여름	-	-	3	-	-	2018.06.25. ~2018.07.20.	-	-
126	2018-여름	-	-	3	-	-	2018.06.25. ~2018.07.31.	-	-
127	2018-여름	-	-	3	-	-	2018.06.25. ~2018.07.20.	-	-
128	2018-여름	-	-	3	-	-	2018.06.25. ~2018.07.20.	-	-
129	2018-여름	-	-	3	-	-	2018.06.25. ~2018.07.20.	-	-
130	2018-여름	-	-	3	-	-	2018.06.25. ~2018.07.20.	-	-
131	2018-여름	-	-	3	-	-	2018.06.25. ~2018.07.20.	-	-
132	2018-여름	-	-	3	-	-	2018.06.25. ~2018.07.20.	-	-
133	2018-여름	-	-	3	-	-	2018.06.25. ~2018.07.20.	-	-
134	2018-여름	-	1	3	-	-	2018.06.25. ~2018.07.20.	-	-
135	2018-여름	-	-	2	-	-	2018.06.25. ~2018.07.20.	1	-
136	2018-여름	-	-	2	-	-	2018.06.25. ~2018.07.20.	1	-
137	2018-여름	-	-	3	-	-	2018.06.25. ~2018.07.20.	-	-
138	2018-여름	-	1	3	-	-	2018.06.25. ~2018.07.20.	1	-
139	2018-여름	-	-	3	-	-	2018.06.25. ~2018.07.20.	-	-
140	2018-여름	-	ı	3	ı	-	2018.06.25. ~2018.07.20.	-	-
141	2018-여름	-	-	4	-	-	2018.06.25. ~2018.07.06.	-	-
142	2018-여름	-	-	$oxed{4}$	-	-	2018.06.25. ~2018.07.06.	-	-
143	2018-여름	-	-	4	-	-	2018.07.09. ~2018.07.20.	-	-
144	2018-여름	-	-	3	-	-	2018.06.25. ~2018.07.20.	-	-
145	2018-여름	-	-	3	-	-	2018.07.30. ~2018.08.27.	-	-
146	2018-여름	-	-	3	-	-	2018.06.25. ~2018.07.20.	1	1
147	2018-여름	-	-	4	-	-	2018.08.03. ~2018.08.31.	-	-
148	2018-여름	-	-	3	-	-	2018.06.25. ~2018.07.20.	-	-
149	2018-여름	-	-	3	1	-	2018.06.25. ~2018.07.20.	-	-
150	2018-여름	-	-	4	-	-	2018.07.09. ~2018.08.03.	-	-
151	2018-여름	-	-	4	-	_	2018.07.09. ~2018.08.03.	-	-
152	2018-겨울	-	_	4	-	-	2018.12.24. ~2019.01.22.	-	-
153	2018-겨울	-	-	4	-	-	2018.12.24. ~2019.01.22.	-	-

연번	학기	학과	교과목명	학년	학번	성명	실습기간	연수기업명	지도교수
154	2018-겨울	-	-	3	-	_	2019.01.24. ~2019.02.26.	-	-
155	2018-겨울	-	-	4	-	-	2018.12.24. ~2019.01.22.	-	-
156	2018-겨울	-	-	3	-	-	2019.01.16. ~2019.02.15.	-	-
157	2018-겨울	-	-	4	-	-	2018.12.24. ~2019.01.22.	-	-
158	2018-겨울	-	-	3	-	-	2019.01.16. ~2019.02.15.	-	-
159	2018-겨울	-	-	4	-	-	2018.12.24. ~2019.01.22.	-	-
160	2018-겨울	-	-	3	-	-	2019.01.16. ~2019.02.15.	-	-
161	2018-겨울	-	-	4	-	-	2019.01.14. ~2019.02.13.	-	-
162	2018-겨울	-	-	4	-	-	2018.12.24. ~2019.01.22.	-	-
163	2018-겨울	-	-	4	-	-	2018.12.24. ~2019.01.22.	-	-
164	2018-겨울	-	-	3	-	-	2018.12.31. ~2019.01.25.	-	-
165	2018-겨울	-	-	3	-	-	2018.12.24. ~2019.01.22.	-	-
166	2018-겨울	-	-	3	-	-	2018.12.24. ~2019.01.22.	-	-
167	2018-겨울	-	-	4	-	-	2018.12.24. ~2019.01.22.	-	-
168	2018-겨울	-	-	3	-	-	2018.12.24. ~2019.01.22.	-	-
169	2018-겨울	-	-	3	-	-	2018.12.24. ~2019.01.22.	-	-
170	2018-겨울	-	-	3	-	-	2018.12.24. ~2019.01.22.	-	-
171	2018-겨울	-	-	3	-	-	2018.12.24. ~2019.01.22.	-	-
172	2018-겨울	-	-	3	-	-	2018.12.24. ~2019.01.22.	-	-
173	2018-겨울	-	-	3	-	-	2018.12.24. ~2019.01.22.	-	-
174	2018-겨울	-	-	3	-	-	2018.12.24. ~2019.01.22.	-	-
175	2018-겨울	-	-	3	-	-	2018.12.24. ~2019.01.22.	-	-
176	2018-겨울	-	-	3	-	-	2018.12.24. ~2019.01.22.	1	1
177	2018-겨울	-	-	3	-	-	2018.12.24. ~2019.01.22.	-	-
178	2018-겨울	-	-	3	-	-	2018.12.24. ~2019.01.22.	-	-
179	2018-겨울	-	-	3	-	-	2018.12.24. ~2019.01.22.	-	-
180	2018-겨울	-	-	3	-	-	2018.12.24. ~2019.01.22.	-	-
181	2018-겨울	-	-	3	-	-	2018.12.24. ~2019.01.22.	-	-
182	2018-겨울	-	-	3	-	-	2018.12.24. ~2019.01.22.	-	-
183	2018-겨울	-	-	3	-	-	2018.12.24. ~2019.01.22.	-	-
184	2018-겨울	-	-	3	-	-	2018.12.24. ~2019.01.22.	-	-
185	2018-겨울	-	-	3	-	_	2018.12.24. ~2019.01.22.	-	-

연번	학기	학과	교과목명	학년	학번	성명	실습기간	연수기업명	지도교수
186	2018-겨울	-	-	3	-	_	2018.12.24. ~2019.01.22.	-	-
187	2018-겨울	-	-	3	-	-	2018.12.24. ~2019.01.22.		-
188	2018-겨울	-	-	3	-	-	2018.12.24. ~2019.01.22.	-	-
189	2018-겨울	-	-	3	-	-	2018.12.24. ~2019.01.22.	-	-
190	2018-겨울	-	-	3	-	-	2018.12.24. ~2019.01.22.	-	-
191	2018-겨울	-	-	3	-	-	2018.12.24. ~2019.01.22.	-	-
192	2018-겨울	-	-	3	-	-	2018.12.24. ~2019.01.22.	-	-
193	2018-겨울	-	-	3	-	-	2018.12.24. ~2019.01.22.	-	-
194	2018-겨울	-	-	3	-	-	2018.12.24. ~2019.01.22.	-	-
195	2018-겨울	-	-	4	-	-	2018.12.24. ~2019.01.22.	-	-
196	2018-겨울	-	-	3	-	-	2018.12.24. ~2019.01.22.	-	-
197	2018-겨울	-	-	3	-	-	2018.12.24. ~2019.01.22.	-	-
198	2018-겨울	-	-	3	-	-	2018.12.24. ~2019.01.22.	-	-
199	2018-겨울	-	-	3	-	-	2018.12.24. ~2019.01.22.	-	-
200	2018-겨울	-	-	3	-	-	2018.12.24. ~2019.01.22.	-	-
201	2018-겨울	-	-	3	-	-	2018.12.24. ~2019.01.22.	-	-
202	2018-겨울	-	-	3	-	-	2018.12.24. ~2019.01.22.	-	-
203	2018-겨울	-	-	3	-	-	2018.12.26. ~2019.01.23.	-	-
204	2018-겨울	-	-	3	-	-	2018.12.26. ~2019.01.23.	-	-
205	2018-겨울	-	-	4	-	-	2018.12.24. ~2018.02.08.	-	-
206	2018-겨울	-	-	4	-	-	2018.12.24. ~2019.01.22.	-	-
207	2018-겨울	-	-	3	-	-	2018.12.24. ~2019.02.22.	-	-
208	2018-겨울	-	-	3	-	-	2018.12.24. ~2019.02.22.	-	-
209	2018-겨울	-	-	3	-	-	2018.12.24. ~2019.01.22.	-	-
210	2018-겨울	-	-	3	-	-	2019.01.28. ~2019.02.27.	-	-
211	2018-겨울	-	-	3	-	-	2018.12.24. ~2019.01.22.	-	-
212	2018-겨울	-	-	3	-	-	2019.01.23. ~2019.02.22.	-	-
213	2018-겨울	-	-	3	-	-	2018.12.24. ~2019.01.22.	-	-
214	2019-여름	-	-	3	-	-	2019.06.20. ~2019.07.17.	-	-
215	2019-여름	-	-	3	-	-	2019.06.24. ~2019.07.19.	-	-
216	2019-여름	-	-	3	-	-	2019.06.20. ~2019.07.17	-	-
217	2019-여름	-	-	3	-	-	2019.06.24. ~2019.07.19.	-	-

218			교과목명	학년	학번	성명	실습기간	연수기업명	지도교수
	2019-여름	-	-	3	-	-	2019.06.26. ~2019.07.23.	-	-
219	2019-여름	-	-	3	-	-	2019.06.20. ~2019.07.17.	-	-
220	2019-여름	-	-	3	-	-	2019.06.20. ~2019.07.17.	-	-
221	2019-여름	-	-	3	-	-	2019.06.24. ~2019.07.19.	-	-
222	2019-여름	-	-	3	-	_	2019.06.20. ~2019.07.17.	-	-
223	2019-여름	-	-	3	-	-	2019.06.24. ~2019.07.19.	-	-
224	2019-여름	-	-	3	-	-	2019.06.20. ~2019.07.17.	-	-
225	2019-여름	-	-	3	-	-	2019.06.24. ~2019.07.19.	-	-
226	2019-여름	-	-	3	-	-	2019.06.24. ~2019.07.19.	-	-
227	2019-여름	-	-	3	-	-	2019.06.24. ~2019.07.19.	-	-
228	2019-여름	-	-	3	-	-	2019.06.20. ~2019.07.17.	-	-
229	2019-여름	-	-	3	-	-	2019.06.20. ~2019.07.17.	-	-
230	2019-여름	-	-	3	-	-	2019.06.24. ~2019.07.19.	-	-
231	2019-여름	-	-	3	-	-	2019.06.20. ~2019.07.17.	-	-
232	2019-여름	-	-	3	-	-	2019.06.20. ~2019.07.17.	-	-
233	2019-여름	-	-	3	-	-	2019.06.24. ~2019.07.19.	-	-
234	2019-여름	-	-	3	-	-	2019.06.20. ~2019.08.14.	-	-
235	2019-여름	-	-	3	-	-	2019.06.20. ~2019.07.17.	-	-
236	2019-여름	-	-	3	-	-	2019.06.24. ~2019.07.19.	-	-
237	2019-여름	-	-	3	-	-	2019.07.19. ~2019.08.16.	-	-
238	2019-여름	-	-	4	-	-	2019.07.08. ~2019.08.02.	-	-
239	2019-여름	-	-	4	-	-	2019.07.08. ~2019.08.02.	-	-
240	2019-여름	-	-	3	-	-	2019.06.24. ~2019.07.19.	-	-
241	2019-여름	-	-	3	-	-	2019.07.29. ~2019.08.26.	-	-
242	2019-여름	-	-	4	-	-	2019.07.19. ~2019.08.16.	-	-
243	2019-겨울	-	-	4	-	-	2019.12.23. ~2020.01.21.	-	-
244	2019-겨울	-	-	4	-	-	2019.12.23. ~2020.01.21.	-	-
245	2019-겨울	-	-	4	-	-	2019.12.23. ~2020.01.21.	-	-
246	2019-겨울	-	-	4	-	-	2019.12.23. ~2020.01.21.	-	-
247	2019-겨울	-	-	4	-	-	2019.12.23. ~2020.01.21.	-	-
248	2019-겨울	-	-	4	-	-	2019.12.23. ~2020.01.21.	-	-
249	2019-겨울	-	-	4	-	-	2019.12.23. ~2020.01.21.	-	-

연번	학기	학과	교과목명	학년	학번	성명	실습기간	연수기업명	지도교수
250	2019-겨울	-	-	3	-	-	2019.12.23. ~2020.01.20.	-	-
251	2019-겨울	-	-	3	-	-	2019.12.23. ~2020.01.21.	-	-
252	2019-겨울	-	-	3	-	-	2019.12.23. ~2020.01.21.	-	-
253	2019-겨울	-	-	3	-	-	2019.12.23. ~2020.01.21.	-	-
254	2019-겨울	-	-	3	-	-	2019.12.23. ~2020.01.21.	-	-
255	2019-겨울	-	-	3	-	-	2019.12.23. ~2020.01.21.	-	-
256	2019-겨울	-	-	3	-	-	2019.12.23. ~2020.01.21.	-	-
257	2019-겨울	-	-	3	-	-	2019.12.23. ~2020.01.21.	-	-
258	2019-겨울	-	-	3	-	-	2019.12.23. ~2020.01.21.	-	-
259	2019-겨울	-	-	3	-	-	2019.12.23. ~2020.01.21.	-	-
260	2019-겨울	-	-	3	-	-	2019.12.23. ~2020.01.21.	-	-
261	2019-겨울	-	-	3	-	-	2019.12.23. ~2020.01.21.	-	-
262	2019-겨울	-	-	3	-	-	2019.12.23. ~2020.01.21.	-	-
263	2019-겨울	-	-	3	-	-	2019.12.23. ~2020.01.21.	-	-
264	2019-겨울	-	-	3	-	-	2019.12.23. ~2020.01.21.	-	-
265	2019-겨울	-	-	3	-	-	2019.12.23. ~2020.01.21.	-	-
266	2019-겨울	-	-	3	-	-	2019.12.23. ~2020.01.21.	-	-
267	2019-겨울	-	-	4	-	-	2019.12.23. ~2020.01.21.	-	-
268	2019-겨울	-	-	3	-	-	2019.12.23. ~2020.01.21.	-	-
269	2019-겨울	-	-	3	-	-	2019.12.23. ~2020.01.21.	-	-
270	2019-겨울	-	-	3	-	-	2019.12.23. ~2020.01.21.	-	-
271	2019-겨울	-	-	3	-	-	2019.12.23. ~2020.01.21.	-	-
272	2019-겨울	-	-	3	-	-	2019.12.23. ~2020.01.21.	-	-
273	2019-겨울	-	-	3	-	-	2019.12.23. ~2020.01.21.	-	-
274	2019-겨울	-	-	3	-	-	2019.12.23. ~2020.01.21.	-	-
275	2019-겨울	-	-	3	-	-	2019.12.23. ~2020.01.21.	-	-
276	2019-겨울	-	-	3	-	-	2019.12.23. ~2020.01.21.	-	-
277	2019-겨울	-	-	3	-	-	2019.12.23. ~2020.01.21.	-	-
278	2019-겨울	-	-	3	-	-	2019.12.23. ~2020.01.21.	-	-
279	2019-겨울	-	-	3	-	-	2019.12.23. ~2020.01.21.	-	-

연번	학기	학과	교과목명	학년	학번	성명	실습기간	연수기업명	지도교수
280	2019-겨울	-	-	3	1	-	2020.01.02. ~2020.02.28.	-	-
281	2019-겨울	-	-	3	1	-	2019.12.23. ~2020.02.10.	-	-
282	2019-겨울	-	-	4	-	-	2020.01.16. ~2019.02.13.	-	-
283	2019-겨울	-	-	4	-	-	2019.12.23. ~2020.02.20.	-	-
284	2019-겨울	-	-	4	-	_	2019.12.23. ~2020.01.21.	-	-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9	스키실습경비 관리 부적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ㅇ 기관경고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편입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고등	
	교육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교육과정, 공개강좌,	-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실습경비는
	산업체 위탁교육, 전공심화과정, 시간제 등록 등에 따른	필요한 결합성이는 대학회계 예산에
	학생 또는 등록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입금은	1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에 따르면 대학회계의	교직원이 회계처리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대학회계의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
	하고, 모든 수입은 수입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시행하기 바람
	직원이 아니면 징수할 수 없으며,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금고은행이 하거나 수입금출납직원이 하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는 국립대학의 장	
	또는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안동대학교 △과는 2017학년도 2학기 '스키' 수업을	
	운영하면서 교외실습(기간 : 2017. 12. 26. ~ 12. 29., 장소 :	
	△△)에 따른 참여학생(36명) 실습경비 합계 6,984,000원	
	(1인당 194,000원)을 대학회계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회계직	
	공무원이 아닌 △과 K의 개인통장(신한 -)으로 입금받아	
	지출 처리하는 등 【붙임】 "스키실습경비 관리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7학년도 2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	
	까지 위 '스키'등 5개 교과목 수업을 운영하면서 교외	
	실습(장소 : △△, ▷▷)에 따른 참여학생(190명) 실습경비	

합계 30,870,000원을 대학회계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위 K 등 회계직공무원이 아닌 △과 2명의 개인통장(2개) 으로 입금받아 지출 처리한 사실이 있음.	
으로 입금받아 지출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스키실습경비 관리 부적정 현황

(단위 : 명, 원)

		그리모	그리모	중). 7시	rlrl		시스			습경비 징수·	지출 내역	
연번	학기	교과목 명	교과목 번호	학점 (시간)	담당 교수	실습기간	실습 장소	산출 근거	실습 참여 학생	총 징수·지출 금액	징수방법	지출처
1	2017	스키	-	1 (2)	△과 교수 K	'17.12.26.(화)		1인당 194,000	36	6,984,000	-	-
2	-2학기	스키 🏻	-	1 (2)	△과 교수 BP	· /17.12.29.(금)	-		43	8,342,000	-	-
3	2018	스키	-	1 (2)	△과 교수 K	′18.12.12.(수)	-	1인당 104,000	36	3,744,000	-	-
4	-2학기	스키Ⅱ	-	1 (2)	△과 교수 BP	~ ′18.12.14.(금)			35	3,640,000	-	,
5	2019 -2학기	스키	-	1 (2)	△과 교수 BP, K	'19.12.20.(금) '19.12.23.(월)	-	1인당 204,000	40	8,160,000	-	-
					190	30,870,000						

지 적 사 항	처분
보강일자 임의변경	
○ 「안동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64조에는 교원이 결강하고자	ㅇ 기관주의
할 때에는 반드시 보강하여야 하고, 사전에 학장에게	ㅇ 통보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보강일은	- 교원이 보강일을
학생 학습권이 확보 되는 범위 내에서 지정하고, 사전에	임의로 변경하여
학생에게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 안동대학교는 ⊖부 AQ가 2017학년도 1학기에 개설된	침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생물화학' 교과목 강의를 담당한 8주차 강의 일자를 당초	하기 바람
2017.4.26.(16:00~17:30)에서 2017.4.28.(15:00~16:30)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학과에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였음에도	
,	
,	
	보강일자 임의변경  ○ 「안동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64조에는 교원이 결강하고자할 때에는 반드시 보강하여야 하고, 사전에 학장에게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보강일은 학생 학습권이 확보 되는 범위 내에서 지정하고, 사전에 학생에게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안동대학교는 ●부 AQ가 2017학년도 1학기에 개설된 '생물화학' 교과목 강의를 담당한 8주차 강의 일자를 당초 2017.4.26.(16:00~17:30)에서 2017.4.28.(15:00~16:30)로

### 보강일자 임의변경 현황

								H기·게히	0) 0)
연 번	소속	직급	교수	과목명	당초강의일	보강계획서상 보강일시	실제 보강일시	보강계획 서 변경 제출여부	임의 변경 사유
					2017-04-26	2017-04-28	2017-04-28		출장
				_	(16:00~17:30)	(15:00~16:30)	(18:00~19:30)	X	五、9
					2017-05-03	2017-06-08	2017-06-09		출장
				-	(13:00~16:00)	(13:00~16:00)	(13:00~16:00)	X	토성
					2017-05-03	2017-06-08	2017-06-08		출장
1			1	-	(16:00~17:30)	(16:00~17:30)	(18:00~19:30)	X	토성
1	_	_	AQ		2017-09-27	2017-09-15	2017-09-14		출장
				_	(16:00~19:00)	(16:00~19:00)	(16:00~19:00)	X	五、9
					2017-10-09	2017-12-08	2017-12-11		출장
				_	(13:00~14:30)	(13:00~14:30)	(18:00~19:30)	X	五、9
					2018-10-29	2018-11-07	2018-11-08		출장
				_	(13:00~14:30)	(18:00~19:30)	(18:00~19:30)	X	至28
					2018-09-26	2018-12-12	2018-12-14		<b>ネル</b>
2					(14:30~16:00)	(14:30~16:00)	(18:00~19:30)	X	출장
2	_	-	_	_	2018-10-03	2018-12-13	2018-12-14		<b>ネカ</b>
					(14:30~16:00)	(14:30~16:00)	(19:30~21:00)	X	출장
3					2018-10-16	2018-10-19	2018-10-26		ネ z l
3	_	-	_	_	(15:00~16:00)	(17:00~18:00)	(17:00~18:00)	X	출장
4					2017-09-04	2017-09-08	2017-09-08		<b>ネカ</b>
4	_	-	_	_	(14:00~16:00)	(14:00~16:00)	(10:00~12:00)	X	출장
_					2018-11-26	2018-12-05	2018-12-07		<b>ネカ</b>
5	_	-	_	_	(14:30~16:00)	(13:00~16:00)	(16:30~17:30)	X	출장
					2019-04-09	2019-04-08	2019-04-08		현장
				_	(09:00~11:00)	(09:00~11:00)	(13:00~16:00)	X	현장 교육
6	_	-	_		2019-04-11	2019-03-29	2019-03-29		<b>ネ</b> カ
				-	(14:00~18:00)	(17:00~21:00)	(18:00~22:00)	X	출장
7	-	-	-	-	2017-04-20 (18:00~21:00)	2017-04-28 (18:00~21:00)	2017-05-04 2017-05-11 2017-05-25	x	보강 계 오입
							(21:00~22:00)		력
				_	2018-03-12	2018-06-08	2018-06-08	x	출장
8	_	_	_		(16:00~19:00)	(16:00~19:00)	(09:00~12:00)	,,	
				_	2018-03-12	2018-06-08	2018-06-08	x	출장
					(14:00~16:00)	(14:00~16:00)	(18:00~20:00)		
9	_	_	_	_	2017-10-05	2017-12-14	2017-12-15	x	출장
					(09:00~12:00)	(09:00~12:00)	(09:00~12:00)		
				_	2017-10-09	2017-12-08	2017-12-16	x	출장
10	_	_	_		(09:00~12:00)	(17:00~18:00)	(09:00~12:00)		0
-0				_	2017-10-09	2017-12-08	2017-12-11	x	출장
					(17:00~18:00)	(17:00~18:00)	(18:00~19:00)	^	= 0
11	_	_	_	_	2018-11-21 (09:00~12:00)	2018-11-29 (13:00~15:00) (17:00~18:00)	2018-11-29 (15:00~18:00)	x	출장

연 번	소속	직급	교수	과목명	당초강의일	보강계획서상 보강일시	실제 보강일시	보강계획 서 변경 제출여부	임의 변경 사유
12	-	-	_	-	2018-10-02 (16:00~17:30)	2018-10-19 (17:00~19:00)	2018-10-26 (16:30~17:30)	х	출장
13	-	-	-	-	2017-05-10 (15:00~16:00)	2017-05-25 (17:00~18:00)	2017-05-29 (10:00~11:00)	х	출장
14	-	_	-	-	2018-10-29 (16:00~17:00)	2018-11-28 (17:00~18:00)	2018-11-28 (18:00~19:00)	x	출장
15	-	_	_	-	2017-10-04 (09:00~11:00)	2017-12-13 (11:00~12:00)	2017-12-14 (13:00~14:00)	х	출장
				-	2019-09-13	2019-12-10	2019-12-11	x	출장
				_	(11:00~13:00) 2019-12-06	(11:00~13:00) 2019-12-13	(11:00~13:00) 2019-12-13	X	출장
16	-	_	-		(11:00~13:00) 2020-04-30	(13:00~15:00) 2020-06-13	(10:00~12:00) 2020-04-30		
				-	(16:00~18:00) 2020-05-05	(16:00~18:00) 2020-06-20	(16:00~18:00) 2020-05-05	х	출장
				_	(15:00~16:00) 2017-10-05	(15:00~16:00) 2017-11-30	(15:00~16:00) 2017-11-30	Х	출장 
17	_	-	-	-	(10:00~11:00) 2017-03-21	(12:00~13:00) 2017-04-14	(08:00~09:00) 2017-04-14	х	출장
18	-	_	-	_	(16:00~18:50)	(09:00~12:00)	(16:00~19:00)	х	출장
19	_	_	-	-	2017-11-23 (16:00~20:00)	2017-12-01 (16:00~20:00)	2017-12-01 (18:00~22:00)	х	출장
20	_	-	-	-	2019-06-18 (09:00~12:00)	2019-05-23 (09:00~12:00)	2019-05-24 (13:00~16:00)	х	출장
21		_	-	-	2019-06-12 (09:00~11:00)	2019-06-12 (09:00~11:00)	2019-06-14 (09:00~11:00)	х	출장
22	-	-	-	-	2017-09-28 (10:00~12:00)	2017-10-12 (15:00~17:00)	2017-11-30 (16:00~18:00)	х	출장
				-	2017-10-09 (16:00~17:00)	2017-12-08 (16:00~17:00)	2017-12-07 (17:00~18:00)	х	출장
23	_	_	_	_	2017-11-13 (14:00~16:00) 2017-10-09	2017-11-09 (18:00~20:00) 2017-12-08	2017-11-08 (19:00~21:00) 2017-12-06	х	출장
					(09:00~10:00) 2017-10-09	(09:00~10:00) 2017-12-08	(18:00~19:00) 2017-12-15	х	출장
				-	(14:00~16:00)	(14:00~16:00)	(18:00~20:00)	х	출장
24	-	_	-	-	2019-05-15 (15:00~17:00)	2019-05-16 (11:00~13:00)	2019-05-15 (15:00~17:00)	х	출장계 오입력
25	-	-	-	-	2018-10-03 (13:00~16:00)	2018-12-13 (13:00~16:00)	2018-12-15	x	출장
26		_	_		2017-11-20 (16:00~17:30)	2017-11-27 (18:00~19:00)	2017-11-13 (18:00~19:00)	х	출장
26	_	_	_	_	2018-03-12 (17:30~19:00)	2018-06-08 (17:30~19:00)	2018-06-18 (17:30~19:00)	х	출장
27	_	_	_	-	2017-11-07 (09:00~12:00)	2017-11-13 (13:00~16:00)	2017-11-13 (17:00~20:00)	х	출장
_,				_	2020-06-03 (14:00~18:00)	2020-06-03 (18:00~22:00)	2020-06-03 (19:00~22:00)	x	출장

								માંગો⊸ો જો	(م) (م													
연 번	소속	직급	교수	과목명	당초강의일	보강계획서상 보강일시	실제 보강일시	보강계획 서 변경 제출여부	임의 변경 사유													
번	47		311.	-140	02016	보강일시	보강일시	제출여부	차유													
					2017-10-24	2017-10-31	2017-10-31															
				_	(10:00~12:00)	(16:00~19:00)	(18:00~20:00)	X	출장계 오입력													
					2017-11-16	2017-11-13	2017-11-20		1													
20				_	(10:00~12:00)	(09:00~11:00)	(09:00~11:00)	X	출장													
28	-	_	_		2017-10-05	2017-12-04	2017-12-11		-5 -J													
				_	(10:00~12:00)	(10:00~12:00)	(18:00~21:00)	X	출장													
					2018-10-03	2018-12-13	2018-12-06		-ž -71													
				_	(14:00~16:00)	(14:00~16:00)	(14:00~16:00)	X	출장													
29					2017-05-03	2017-12-14	2017-12-05		출장													
29	_	_	_	_	(10:00~11:00)	(10:00~11:00)	(09:00~10:00)	X	돌성													
30		_	_	_	2018-03-20	2018-03-23	2018-03-20		현장 실습													
30	_			_	(15:00~16:00)	(15:00~16:00)	(15:00~16:00)	X	실습													
				_	2017-10-09	2017-12-08	2017-12-08	v	출장													
					(19:00~22:00)	(18:00~21:00)	(13:00~16:00)	X	章 6													
31	_	_	_	_	2018-05-24	2018-05-24	2018-06-07	v	출장													
51					(16:00~17:30)	(17:30~19:00)	(17:30~19:00)	X	章 6													
				_	2018-06-06	2018-06-14	2018-06-21	x	 출장													
					(13:00~16:00)	(13:00~16:00)	(13:00~16:00)	^	= 0													
			_	_	2018-05-24	2018-06-01	2018-06-08	x	출장													
				_	_	_	_	_	_	_		(09:00~10:30)	(18:00~20:00)	(15:00~16:30)	^	20						
32	_	_									_	_	-	-	_	-	_	_	-	_	-	-
02					(10:30~12:00)	(16:00~18:00)	(16:30~18:00)	^	20													
				_	2018-12-06	2018-12-07	2018-12-14	x	출장													
					(13:00~15:00)	(09:00~11:00)	(09:00~11:00)	^	- 0													
33	_	_	_	_	2017-05-05	2017-06-09	2017-06-07	x	출장													
					(10:00~12:00)	(10:00~12:00)	(18:00~20:00)	^														
				_	2018-06-06	2018-06-14	2018-06-16	x	출장													
					(16:00~18:00)	(16:00~18:00)	(9:00~11:00)	-														
34	-	_	_	_	2018-06-06	2018-06-14	2018-06-16	x	출장													
					(18:00~20:00)	(18:00~20:00)	(13:00~15:00)															
						_	2018-06-06	2018-06-14	2018-06-11	x	출장											
					(14:30~16:00)	(14:30~16:00)	(14:30~16:00)		-													
				_	2019-06-05	2019-06-05	2019-06-05	x	출장													
35	-	_	_		(13:00~16:00)	(19:00~22:00)	(18:00~21:00)															
				_	2017-10-17	2017-10-25	2017-10-25	x	출장													
					(16:00~19:00) 2018-10-03	(13:00~16:00) 2018-12-13	(18:00~21:00)															
36	-	_	_	_			2018-12-14	x	출장													
					(14:00~17:00)	(14:00~17:00)	(12:30~15:30)															
37	-	_	_	_	2017-09-14	2017-10-19	2017-10-18	x	출장													
					(18:00~21:00)	(18:00~21:00)	(18:00~21:00)															

연번 지 적 사 항 처 된	<u>1</u>
31 대학원 졸업종합시험문제 출제 부적정	
31 대학원 졸업종합시험문제 출제 부적정  ○ 「안동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정」제17조,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수여규정」제5조,「안동대학교 행정경영대학원 학사운영규정」제18조에 파르면 학위청구자격시험으로 중합시험을 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일반대학원장 등 3개 대학원에서는 매년 소속학과에 대학원 학위청구자격시험 시행 관련 내용을 안내하면서 시험출제 관련 공정성 확보와 동일문제가 반복 출제되지 않도록 하였는데도,  - 안동대학교 ●원 AR는 2017학년도 2학기 ●원 《과전공석사 졸업종합시험을 출제하면서 2017학년도 1학기에 출제한 "♬연구"시험 문제를 동일하게 출제하는 등【붙임】"대학원 졸업종합시험 중복 출제현황"과 같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 위 AR 등 교원 29명은 기출제 했던 문제를 반복 출제한사실이 있음.	시험에서 를 반복 않도록 을 철저히

### 대학원 졸업종합시험 중복 출제 현황

		출제교원 학과				기추제	기추제	도인무제	도인	
연번	대학원별	학과 (전공)	직급	성명	시험과목	기출제 학기	기출제 문항수	동일문제 출제학기	동일 문항수	학위
1	●원	● 과	_	AR	♬연구	2017-1	2	2017-2	2	석사 박사
2	-	-	_	_	-	2017-1	4	2017-2	4	석사
3	_	-	_	_	-	2019-1	3	2019-2	3	석사
4	-	-	_	_	-	2019-1	4	2019-2	3	석사
5	-	-	-	-	-	2018-1	2	2018-2	2	석사 박사
6	-	-	-	-	-	2019-1	2	2019-2	1	박사
7	_	-	_	_	-	2018-1	2	2018-2	2	박사
8	-	-	-	-	-	2018-1	5	2018-2	1	박사
9	_	ı	_	_	-	2017-1	4	2017-2	4	박사
10	-	-	_	_	-	2018-1	1	2018-2	1	석사
11	-	-	-	-	-	2017-1	1	2017-2	1	석사
12	-	-	_	-	-	2018-1	2	2018-2	2	석사
13	_	-	-	_	_	2017-1 2018-1	5 4	2017-2 2018-2	2 2	석사 석사
14	_	_	_	_	_	2017-1	2	2017-2	2	<u> </u>
15	_	_	_	_	_	2018-1	2	2018-2	2	 석사
16	-	-	_	_	_	2018-1	6	2018-2	6	석사
17	_	-	_	_	-	2017-1	10	2017-2	4	석사
18	-	-	_	_	-	2018-1	2	2018-2	2	박사
19	-	-	_	-	-	2019-1	2	2019-2	1	석사 박사
					-	2017-1	2	2017-2	1	박사
20	_	-	-	_	-	2018-1	2	2018-2	2	박사
					-	2018-1	2	2018-2	1	박사
21	_	_	_	-	_	2018-1	2	2018-2	1	박사
22	_	_	_	_	_	2017-1	2	2017-2	2	박사
					_	2019-1	2	2019-2	2	석사
23	-	-	_	_	_	2017-1	4	2017-2	3	석사
24	_	_	_	_	_	2018-1	5	2018-2	5	석사
					_	2018-1	3	2018-2	3	석사
25	_	-	-	_	-	2017-1	2	2017-2	2	석사
26	-	-	-	-	-	2017-1	4	2017-2	1	석사
27	=	-	-	-	-	2018-1	5	2018-2	2	석사
28	1	ı	_	_	-	2019-1	5	2019-2	1	석사
29	_	_	_	_	-	2017-1	1	2017-2	1	석사
					-	2017-1	1	2017-2	1	석사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32	교내연구과제 연구결과물 지연 제출	
	○ 「안동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2016.3.29.)」제 <b>29</b> 조 제1항 및	ㅇ주의(7명)
	제8항에 따르면 연구조성비를 지원받은 자는 연구종료 후	
	2년 이내에 대학에서 정한 전문 학술지에 연구결과물을	
	게재한 후 별쇄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연구결과물	
	미제출자는 연구결과물 미제출자 처리 절차(별표 2)에	
	따라 처리하며, 최종 제출기한이 경과하면 연구비를	
	반납하도록 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규정」[별표2]	
	'연구결과물 미제출자 처리 절차'에 따르면 육에서는	
	연구결과물 미제출자(연구종료 2년 경과자)에게 제출기	
	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물 제출 이행계획서 를 요구한다고 되어있는데도,	
	- 안동대학교 소과 AS은 2016. 4. 1.부터 2017. 2. 28.	
	까지 대학으로부터 연구조성비 4,500천원을 지원받아	
	'b 모형' 연구를 수행하고도 연구결과물을 제출기한 (2019. 2. 28.)보다 112일 지연된 2019. 6. 20.에 제출	
	하는 등 【붙임】 "교내연구과제 연구결과물 지연 제출	
	현황"과 같이 2019년부터 2020. 7. 감사일 현재까지	
	위 AS 등 교원 6명은 교비에서 연구조성비를 지원받아	
	교내연구과제를 수행하고도 연구결과물을 제출기한	
	보다 짧게는 47일부터 길게는 478일까지 지연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고,	
	- 안동대학교 ��은 위 교원들에게 제출기한이 3개월이	
	도과된 2019. 6. 18.에서야 연구결과물 제출 이행계	
	획서를 요구한 사실이 있음	

### 교내연구과제 연구결과물 지연 제출 현황

чя	학	ਜੀ	7) 그	성 명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비	연	구결과물		이행 계획 요구	비고
연번	्रभ 	과	직급	78 18	연 구 과 제 명	시작일	종료일	(천원)	제출기한	제출일	지연일	· 효구	비고
1	À	라	-	AS	b 모형	2016.04.01	2017.02.28	4,500	2019.02.28	2019.06.20	112	2019.06.18	
2	-	_	-	_	-	2016.04.01	2017.02.28	7,000	2019.02.28	2020.06.20	478	2019.06.18	이행계획서 제출 (2019.07.01)
3	-	_	-	-	-	2016.04.01	2017.02.28	7,000	2019.02.28	2019.06.28	120	2019.06.18	
4	$\Diamond$	과	-	_	-	2016.04.01	2017.02.28	7,000	2019.02.28	2020.01.03	309	2019.06.18	이행계획서 제출 (2019.06.20)
5		과	-	-	-	2016.04.01	2017.02.28	4,500	2019.02.28	2019.10.22	236	2019.06.18	이행계획서 제출 (2019.06.20)
6	Δ	과	-	F	-	2016.04.01	2017.02.28	7,000	2019.02.28	2019.04.16	47	х	

###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미심의 현황

				* 01	리스시리						분배액			
연도	연번	구분	지원기술명	출원· 등록번호	기술이전 계약일자	도입업체	이전형태	처분액 등	분 배 일	산 학 협력단(A)	발		자	합 계
					세탁현자				표 제 된	협력단(A)	소 계	성 명	지급액(B)	(C=A+B)
2015	1	기술 이전	소방 방재 시스템(-)	_	′15.08.20.	(주)♡♡	명의양도	5,500,000	′15.09.24.	3,339,600	1,660,400	AT	1,660,400	5,000,000
2013	2	기술 이전	-	-	′15.08.26.	-	노하우	3,300,000	′15.08.27., ′15.12.24.	300,000	2,700,000	-	2,700,000	3,000,000
	3	기술 이전	-	-	′16.04.25.	-	통상실시	5,500,000	′16.05.25.	2,254,800	2,745,200	-	2,745,200	5,000,000
	4	기술 자문	-	-	′16.06.01.	-	기술자문	6,000,000	'16.06.24., '16.10.06., '16.12.22., '17.03.10.	545,450	4,909,098	Z	4,909,098	5,454,548
	5	기술 이전	-	-	′16.06.01.	-	노하우	2,200,000	′16.05.25.	200,000	1,800,000	-	1,800,000	2,000,000
2016	6	기술 이전	-	-	′16.06.09.	-	전용실시	1,100,000		1,000,000				1,000,000
	7	기술 이전	-	-	′16.11.01.	-	통상실시	22,000,000	′16.12.21.	10,053,600	9,946,400	-	9,946,400	20,000,000
	8	기술 이전	-	-	′16.12.27.	-	통상실시	3,300,000	′17.2.22.	3,000,000				3,000,000
	9	기술 이전	-	-	′17.01.01.	-	명의양도	7,700,000	′17.02.22.	4,862,000	2,138,000	-	2,138,000	7,000,000
	10	기술 자문	-	-	′17.01.09.	-	기술자문	1,500,000	′17.01.09.	136,364	1,227,272	-	1,227,272	1,363,636
	11	기술 이전	-	-	′17.02.01.	-	노하우	2,200,000	′17.02.22.	200,000	1,800,000	-	1,800,000	2,000,000
2017	12	기술 자문	-	-	′17.04.01.	-	기술자문	17,160,000	'17.05.10., '17.08.18., '17.09.06., '17.10.19., '18.01.05., '18.02.01., '18.03.20., '18.04.09.	3,600,000	12,000,000	-	12,000,000	15,600,000
	13	기술 자문	-	-	′17.06.01.	-	기술자문	6,000,000	'17.07.11., '17.09.29., '17.12.13., '18.03.20.	545,464	4,909,080	Z	4,909,080	5,454,544
	14	기술 자문	-	-	′17.06.02.	-	기술자문	18,370,000	′17.06.23., ′18.01.04.	1,670,010	15,029,990	-	15,029,990	16,700,000
	15	기술 자문	-	-	′17.06.15.	-	기술자문	27,500,000	′17.12.29., ′18.01.04.	2,500,000	22,500,000	-	22,500,000	25,000,000
	16	기술 이전	-	-	′17.07.01.	-	명의양도	5,500,000	′17.07.31.	2,520,050	2,479,950	_	2,479,950	5,000,000

				출원·	기술이전						분배액			
연도	연번	구분	지원기술명	물전· 등록번호	계약일자	도입업체	이전형태	처분액 등	분 배 일	산 학 협력단(A)	발		자	합계
				중축원오	세탁될사				표 배 글	협력단(A)	소 계	성 명	지급액(B)	(C=A+B)
	17	기술 자문	-	-	′17.07.18.	_	기술자문	12,000,000	′17.10.24.	1,090,909	9,818,181	_	9,818,181	10,909,090
		31 &										-	1,527,272	
	18	기술 자문	-	_	′17.08.25.	_	기술자문	4,800,000	′17.10.27.	436,363	3,927,272	_	1,200,000	4,363,635
												-	1,200,000	
	19	기술 이전	-	-	′17.09.08.	-	노하우	2,500,000	′17.12.13.	227,273	2,045,454	_	2,045,454	2,272,727
	20	기술 이전	-	-	′17.09.08.	-	노하우	2,500,000	′17.12.13.	227,273	2,045,454	ĺ	2,045,454	2,272,727
	21	기술 이전	-	_	′17.12.01.	_	노하우	6,160,000	′17.12.01.	560,000	5,040,000	_	5,040,000	5,600,000
2017	22	기술 이전	-	-	′17.12.04.	_	노하우	5,500,000	′17.12.19.	500,000	4,500,000	-	4,500,000	5,000,000
	23	기술 이전	-	-	′17.12.13.	_	통상실시	550,000	′17.12.21.	50,000	450,000	AX	450,000	500,000
	24	기술 이전	-	-	′17.12.28.	-	노하우	5,500,000	′18.01.05.	500,000	4,500,000	_	4,500,000	5,000,000
	25	기술 이전	-	-	′17.12.28.	-	노하우	5,500,000	′18.01.05.	500,000	4,500,000	_	4,500,000	5,000,000
	26	기술 이전	-	-	′17.12.28.	-	노하우	5,500,000	′18.01.05.	500,000	4,500,000	_	4,500,000	5,000,000
	27	기술 이전	-	-	′17.12.28.	-	노하우	5,500,000	′18.01.05.	500,000	4,500,000	-	4,500,000	5,000,000
	28	기술 이전	-	-	′170.8.01.	-	노하우	27,500,000	′17.10.12.	2,500,000	22,500,000	-	22,500,000	25,000,000
	29	기술 이전	-	-	′18.02.08.	-	노하우	49,500,000	′18.03.07., ′18.05.25.	4,500,000	40,500,000	-	40,500,000	45,000,000
	30	기술 이전	-	-	′18.02.26.	-	노하우	500,000	′18.06.12.	45,455	409,090	_	409,090	454,545
	31	기술 이전	-	-	′18.02.26.	_	노하우	550,000	′18.04.11.	50,000	450,000	_	450,000	500,000
	32	기술 이전	-	-	′18.02.27.	-	노하우	220,000	′18.04.09.	20,000	180,000	-	180,000	200,000
2018	33	기술 이전	-	-	′18.02.27.	_	노하우	220,000	′18.02.27.	20,000	180,000	-	180,000	200,000
	34	기술 이전	-	-	′18.02.27.	_	노하우	100,000	′18.03.21.	9,091	81,818	-	81,818	90,909
	35	기술 이전	-	-	′18.02.27.	-	노하우	330,000	′18.04.06.	30,000	270,000	AG	270,000	300,000
	36	기술 이전	-	-	′18.02.27.	-	노하우	220,000	′18.04.06.	20,000	180,000	AG	180,000	200,000
	37	기술 이전	-	-	′18.02.27.	-	노하우	110,000	′18.03.22.	10,000	90,000	ı	90,000	100,000

				ತಿಂಗ	기술이전	[전 _ 이 이 제	이저형태				분배액			
연도	연번	구분	지원기술명	출원· 등록번호	기울이전 계약일자	도입업체	이전형태	처분액 등	분 배 일	산 학 협력단(A)	발		자	합 계
					계약될사				표 배 코	협력단(A)	소 계	성 명	지급액(B)	(C=A+B)
	38	기술 이전	-	_	′18.02.27.	-	노하우	110,000	′18.02.27.	10,000	90,000	AG	90,000	100,000
	39	기술 이전	-	-	′18.02.27.	_	노하우	330,000	′18.04.06.	30,000	270,000	AG	270,000	300,000
	40	기술 이전	-	-	′18.02.27.	-	노하우	220,000	′18.04.06.	20,000	180,000	AG	180,000	200,000
	41	기술 이전	-	-	′18.02.27.	_	노하우	1,000,000	′18.03.29.	90,909	818,182	-	818,182	909,091
	42	기술 이전	-	-	′18.02.27.	_	노하우	500,000	′18.03.29.	45,455	409,090	-	409,090	454,545
	43	기술 자문	-	-	′18.03.02.	_	기술자문	5,500,000	′18.04.10.	500,000	4,500,000	_	4,500,000	5,000,000
	44	기술 자문	-	-	′18.04.01.	-	기술자문	17,160,000	'18.05.10., '18.07.10., '18.09.12., '18.10.10., '18.11.16., '18.12.21., '19.04.16.	3,600,000	12,000,000	-	12,000,000	15,600,000
	45	기술 이전	-	-	′18.05.01.	-	명의양도	3,000,000	′18.06.12.	2,335,887	391,385	-	391,385	2,727,272
	46	기술 이전	-	-	′18.05.28.	-	전용실시	1,100,000	′18.05.28.	1,000,000				1,000,000
	47	기술 자문	-	-	′18.06.11.	-	기술자문	2,541,000	′18.10.01.	231,000	2,079,000	-	2,079,000	2,310,000
2018	48	기술 이전	-	-	′18.06.18.	-	노하우	6,000,000	′18.07.24., ′18.09.18., ′18.12.13.	545,600	4,908,944	Z	4,908,944	5,454,544
	49	기술 자문	-	-	′18.06.21.	_	기술자문	6,050,000	′18.10.01.	550,000	4,950,000	-	4,950,000	5,500,000
	50	기술 이전	-	-	′18.11.19.	-	노하우	500,000	′18.12.21.	45,455	409,090	_	409,090	454,545
	51	기술 이전	-	-	′18.11.29.	_	노하우	5,500,000	′20.02.14.	500,000	4,500,000	-	4,500,000	5,000,000
	52	기술 이전	-	-	′18.12.01.	-	노하우	200,000	′19.07.15.	18,182	163,636	Z	163,636	181,818
	53	기술 이전	-	-	′18.12.12.	_	노하우	3,300,000	′20.02.14.	300,000	2,700,000	-	2,700,000	3,000,000
	54	기술 이전	-	-	′18.12.14.	-	노하우	1,100,000	′18.12.21.	100,000	900,000	-	900,000	1,000,000
	55	기술 이전	-	-	′18.12.21.	-	노하우	5,000,000	′20.02.14.	454,546	4,090,908	_	4,090,908	4,545,454
	56	기술 이전	-	-	′18.12.26.	-	노하우	110,000	′20.02.14.	10,000	90,000	_	90,000	100,000
	57	기술 이전	-	-	′18.12.27.	-	노하우	500,000	′20.02.14.	45,455	409,090	-	409,090	454,545

				출원·	기술이전						분배액			
연도	연번	구분	지원기술명	물전· 등록번호	계약일자	도입업체	이전형태	처분액 등	분 배 일	산 학 협력단(A)	발		자	합계
				<u> </u>	게 ㅋ ㅋ~				전 게 된	협력단(A)	소 계	성 명	지급액(B)	(C=A+B)
	58	기술 이전	-	-	′18.12.31.	-	통상실시	1,100,000	′20.01.31.	451,750	548,250	-	548,250	1,000,000
	59	기술 이전	-	-	′18.12.31.	-	통상실시	1,100,000	′20.01.31.	342,421	657,579	ı	657,579	1,000,000
	60	기술 이전	-	ı	′18.12.31.	-	통상실시	1,100,000	′20.01.31.	451,750	548,250	ı	548,250	1,000,000
	61	기술 이전	-	-	′18.12.31.	-	통상실시	1,100,000	′20.01.31.	342,421	657,579	ı	657,579	1,000,000
	62	기술 이전	-	-	′18.12.31.	-	통상실시	1,100,000	′20.01.31.	342,421	657,579	-	657,579	1,000,000
	63	기술 이전	-	-	′18.12.31.	-	통상실시	1,100,000	′20.01.31.	1,000,000				1,000,000
	64	기술 이전	-	-	′18.12.31.	-	통상실시	1,100,000	′20.01.31.	451,750	548,250	ı	548,250	1,000,000
2018	65	기술 이전	-	-	′18.12.31.	-	통상실시	1,100,000	′20.01.31.	342,421	657,579	-	657,579	1,000,000
2018	66	기술 이전	-	-	′18.12.31.	-	통상실시	1,100,000	′20.01.31.	342,421	657,579	-	657,579	1,000,000
	67	기술 이전	-	-	′18.12.31.	-	통상실시	1,100,000	′20.01.31.	1,000,000				1,000,000
	68	기술 이전	-	-	′18.12.31.	-	통상실시	1,100,000	′20.01.31.	451,750	548,250	-	548,250	1,000,000
	69	기술 이전	-	-	′18.12.31.	-	통상실시	1,100,000	′20.01.31.	342,421	657,579	-	657,579	1,000,000
	70	기술 이전	-	_	′18.12.31.	-	통상실시	1,100,000	′20.01.31.	451,750	548,250	ı	548,250	1,000,000
	71	기술 이전	-	-	′18.12.31.	-	통상실시	1,100,000	′20.01.31.	451,750	548,250	-	548,250	1,000,000
	72	기술 이전	-	-	′18.12.31.	-	노하우	300,000	′20.02.14.	27,273	245,454	ı	245,454	272,727
	73	기술 이전	-	-	′19.01.11.	-	노하우	82,500,000	′19.02.07., ′19.07.25.	7,500,000	67,500,000	ı	67,500,000	75,000,000
	74	기술 이전	-	_	′19.01.23.	-	통상실시	1,100,000	′20.01.31.	342,421	657,579	ı	657,579	1,000,000
	75	기술 이전	-	_	′19.01.25.	-	통상실시	550,000		500,000				500,000
2019	76	기술 이전	-	-	′19.01.30.	-	노하우	220,000	′20.02.14.	20,000	180,000	ı	180,000	200,000
	77	기술 이전	-	-	′19.03.25.	-	통상실시	550,000		500,000				500,000
	78	기술 이전	-	-	′19.06.01.	-	노하우	6,000,000	′19.07.15., ′20.01.03.	545,440	4,909,104	Z	4,909,104	5,454,544
	79	기술 이전	-	-	′19.06.10.	-	노하우	4,980,000	′20.01.23.	452,727	4,074,546	_	4,074,546	4,527,273

				출원·	기술이전						분배액			
연도	연번	구분	지원기술명	물전· 등록번호	계약일자	도입업체	이전형태	처분액 등	분 배 일	산 학 협력단(A)	발		자	합 계
				· 중독반오	세막될사				표 베 뒫	협력단(A)	소 계	성 명	지급액(B)	(C=A+B)
	80	기술 이전	-	_	′19.07.01.	-	노하우	16,500,000	′19.10.16., ′20.02.04.	1,500,000	13,500,000	-	13,500,000	15,000,000
	81	기술 자문	-	_	′19.07.15.	-	기술자문	5,000,000	′19.12.31.	454,545	4,090,910	_ 	2,050,910	4,545,455
	82	기술 자문	-	_	′19.07.22.	-	기술자문	7,200,000	′20.01.23.	654,546	5,890,908	-	5,890,908	6,545,454
	83	기술 자문	-	-	′19.08.20.	-	기술자문	6,000,000	′19.12.27.	545,455	4,909,091	Z	4,909,091	5,454,546
	84	기술 이전	-	-	′19.10.17.	-	노하우	5,500,000	′19.10.25.	500,000	4,500,000	-	2,250,000 2,250,000	5,000,000
	85	기술 자문	-	-	′19.10.29.	-	기술자문	2,500,000	′20.01.03.	227,272	2,045,456	_	2,045,456	2,272,728
	86	기술 이전	-	_	′19.11.05.	-	노하우	500,000	′20.04.10.	45,455	409,090	-	409,090	454,545
	87	기술 자문	-	-	′19.11.12.	-	기술자문	15,312,000	′20.03.19.	1,392,000	12,528,000	-	12,528,000	13,920,000
2019	88	기술 이전	-	-	′19.11.15.	-	노하우	500,000	′20.04.10.	45,455	409,090	_	409,090	454,545
	89	기술 이전	-	-	′19.11.21.	-	노하우	1,100,000	′20.04.10.	100,000	900,000	-	900,000	1,000,000
	90	기술 이전	-	-	′19.11.21.	-	노하우	2,000,000	′19.12.27.	181,819	1,636,362	_	1,636,362	1,818,181
	91	기술 이전	-	-	′19.12.02.	-	노하우	1,100,000						
	92	기술 이전	-	_	′19.12.02.	-	노하우	1,100,000						
	93	기술 이전	-	_	′19.12.30.	-	노하우	1,000,000	′20.04.10.	90,910	818,180	-	818,180	909,090
	94	기술 이전	-	_	′19.12.30.	-	노하우	1,000,000	′20.04.10.	90,910	818,180	_	818,180	909,090
	95	기술 이전	-	_	′19.12.30.	-	노하우	1,000,000	′20.04.10.	90,910	818,180	_	818,180	909,090
	96	기술 이전	-	_	′19.12.31.	-	노하우	1,000,000	′20.04.10.	90,910	818,180	ВМ	818,180	909,090
	97	기술 이전	-	_	′20.01.02.	-	노하우	1,000,000	′20.04.10.	90,910	818,180	BN	818,180	909,090
2020	98	기술 이전	-	-	′20.01.02.	-	노하우	1,000,000	′20.04.10.	90,910	818,180	-	818,180	909,090
2020	99	기술 이전	-	-	′20.01.02.	-	노하우	1,100,000	′20.01.23.	100,000	900,000	-	900,000	1,000,000
	100	기술 이전	-	-	′20.01.06.	-	노하우	500,000	′20.03.20.	45,455	409,090	Z	409,090	454,545

				출원·	기술이전	V) 27 397 ~11	이지취리 취보에 드			분배액				
연도	연번	구분	지원기술명	물전· 등록번호	계약일자	도입업체	이전형태	처분액 등	분 배 일	산 학 협력단(A)	발	명	자	합 계
		-1.6		0 9 11 2	게 ㅋ ㄹ시					협력단(A)	소 계	성 명	지급액(B)	(C=A+B)
	101	기술 이전	-	-	′20.01.09.	<b>-</b> -	노하우	550,000	′20.02.14.	50,000	450,000	Z	450,000	500,000
	102	기술 이전	-	-	′20.01.16.	-	노하우	550,000						
	103	기술 이전	-	-	′20.01.17.	_	노하우	550,000	′20.04.10.	50,000	450,000	W	450,000	500,000
	104	기술 이전	-	-	′20.01.20.	_	노하우	11,000,000	′20.06.04.	1,000,000	4,500,000	-	4,500,000	5,500,000
	105	기술 이전	-	-	′20.01.25.	_	통상실시	550,000						
	106	기술 이전	-	-	′20.01.31.	-	노하우	1,000,000	′20.04.10.	90,910	818,180	-	818,180	909,090
	107	기술 이전	-	-	′20.02.01.	-	노하우	37,400,000	′20.04.10.	1,700,000	15,300,000	-	15,300,000	17,000,000
	108	기술 이전	-	-	′20.02.01.	_	노하우	5,000,000	′20.04.10.	454,546	4,090,908	-	4,090,908	4,545,454
	109	기술 이전	-	-	′20.02.01.	_	노하우	5,000,000	′20.04.10.	454,546	4,090,908	-	4,090,908	4,545,454
	110	기술 이전	-	-	′20.02.06.	_	노하우	1,000,000	′20.04.10.	90,910	818,180	-	818,180	909,090
	111	기술 이전	-	-	′20.02.07.	_	노하우	1,000,000						
2020	112	기술 이전	-	-	′20.02.07.	-	노하우	1,000,000						
	113	기술 이전	-	-	′20.02.11.	_	노하우	550,000						
	114	기술 이전	-	-	′20.03.10.	_	명의양도	4,400,000						
	115	기술 이전	-	-	′20.03.16.	-	명의양도	4,400,000						
	116	기술 이전	-	-	′20.03.16.	-	명의양도	4,400,000						
	117	기술 이전	-	-	′20.03.26.	-	명의양도	4,400,000						
	118	기술 이전	-	-	′20.03.26.		명의양도	4,400,000						
	119	기술 이전	-	-	′20.04.08.	_	명의양도	8,800,000						
	120	기술 이전	-	-	′20.06.15.	-	노하우	12,210,000	′20.07.02.	555,000	4,995,000	-	4,995,000	5,550,000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34	직무발명 미신고	
	○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르면「고등교육법」	ㅇ주의(3명)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ㅇ시정
	권리는 &이 승계하며, &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의 소유로	- 개인 명의로 등록된
	하고, 종업원등(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4건의 직무발명에 대해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	권리확보 등 <i>조</i> 치를
	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되어있고, 「안동대	취하기 바람
	학교 지식재산권 규정」제2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직무발명"이란 가. 교직원 등이 그 직무로 발명한 것	
	이 대학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나.	
	교직원 등이 정부부처, 정부 출연기관 등의 연구과제수	
	행 결과물로서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안	
	동대학교육에 귀속된 발명, 다. 기타 제3자와의 연구	
	용역과제로서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	
	과로 얻어진 발명을 의미하며, 교직원 등은 직무발명을	
	한 경우 육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도,	
	- 안동대학교 ☑과 AT는 2010. 11. 1. '-' 발명(특허등록번호 -)에 대하여 육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인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 등【붙임】"직무발명 미신고 현황"과	
	같이 2010. 11.부터 2020. 7. 감사일 현재까지 위 AT 등 교	
	수 3명은 직무발명 합계 4건에 대하여 싫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개인명의로 특허 등을 출원·등록한 사실이	
	있음	

### 직무발명 미신고 현황

연번	소속	직급	성 명	발명의 명칭	권 리	출원현	황	등록현	
22	3.5	711	78 78	필경기 경경	2 4	번 호	일 자	번 호	일 자
1	교과	_	AT	-	특 허	-	2008.10.31	-	2010.11.01
2				-	특 허	-	2010.05.19	-	2013.04.10
3	<u> </u>	_	_	-	디자인	-	2017.08.08	-	2018.06.20
4	_	-	N	-	특 허	-	2014.03.12	-	2015.07.31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35	연구비 취득 기자재 등 학교 자산 미등재  ○ 「안동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제18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르면 연구비 등으로 구입한 연구기자재, 비소모품 등은 구입 완료시에 기부채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 책임자가 소속된 대학에 기부채납하여야 하고, 연구기자재, 비소모품 및 도서를 기증받은 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기부채납확인서를 발부하고, 연구기자재 및 비소모품을 기증받은 경우에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도,  - 안동대학교는 2017. 3. 3. □과 AE이 2016. 6. 1.부터 2017. 5. 31.까지 ▶▶가 발주한 '-연구'(연구비 : 252,840 천원)과제 수행 중에 지원 연구비로 취득한 기자재 'Diffusser'(취득가액 770,000원)를 공과대학에 기부채납 하였음에도 2020. 7. 감사일 현재까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등재하지 않는 등 【붙임】 "연구비로 취득한 기자재 등 자산 미등재 현황"과 같이 위 'Diffusser'등 연구비로 취득한 82건(취득가격 합계 122,142,470원)의 기자재 등을 해당 연구책임자로부터 기부채납받고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등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주의(7명) ○통보 - 연구비로 취득한 기자재 등 82건을 학교 자산으로 등재

### 연구비로 취득한 기자재 등 자산 미등재 현황

연번	연구과제명	책임자	지원기관	구 분	기자재 등 명칭	구입일자	구입 수량	구입단가	구입금액	등재부서	비고
1				기자재	Diffusser	2017.03.03	1	770,000	770,000	공과대학	
2				기자재	Nozzle	2017.03.03	1	770,000	770,000	-	
3				기자재	Diverging cone	2017.03.03	1	1,320,000	1,320,000	-	
4	-연구	AE	▶▶부	기자재	Settling chamber tube	2017.03.03	1	1,210,000	1,210,000	-	
5				기자재	Transition tube	2017.03.03	1	1,430,000	1,430,000	-	
6				기자재	Side wall, window for observation	2017.03.03	1	1,650,000	1,650,000	-	
7				기자재	Test section	2017.03.03	1	1,650,000	1,650,000	-	
8		AT		기자재	항공카메라	2017.08.03	2	2,050,000	4,100,000	-	
9	_	AI	-	기자재	항공카메라	2017.09.19	2	1,580,000	3,160,000	-	
10	-	AX	-	비 품	무볼트 앵글, 가공합판, 조절발(보관선반)	2017.12.29	1	548,000	548,000	-	
11	-	_	-	비 품	REW301 온수기	2017.12.12	1	440,000	440,000	<b>•</b>	
12				기자재	책상	2017.11.30	1	285,600	285,600	-	
13				기자재	삼각대	2017.12.11	3	832,000	2,496,000	-	
14	_	AQ	-	기자재	타스캠	2017.12.11	3	633,000	1,899,000	-	
15				기자재	영사용스크린	2017.12.11	1	410,090	410,090	-	
16				기자재	비디오프로젝터	2017.12.11	1	2,101,280	2,101,280	-	

연번	연구과제명	책임자	지원기관	구 분	기자재 등 명칭	구입일자	구입 수량	구입단가	구입금액	등재부서	비고
17				기자재	데스트톱컴퓨터	2017.12.11	2	1,296,615	2,593,230	-	
18				기자재	복사기	2017.12.11	1	7,984,880	7,984,880	-	
19	-	AQ	-	기자재	레이저프린터	2017.12.11	2	442,375	884,750	-	
20				기자재	캠코더	2017.12.11	3	1,859,990	5,579,970	-	
21				기자재	무선마이크	2017.12.11	3	699,000	2,097,000	-	
22				재 료	HDD	2018.06.05	1	520,000	520,000	-	
23	-	-	-	재 료	HDD	2018.06.05	1	383,500	383,500	-	
24				소프트 웨 어	Tecplot Academic Suite Single License	2018.08.03	2	1,925,000	3,850,000	-	
25				기자재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전 자교탁)	2018.07.25	1	3,080,000	3,080,000	-	
26				기자재	VR	2018.09.07	1	2,199,000	2,199,000	-	
27				기자재	빅테이블 3612	2018.09.13	1	1,425,200	1,425,200	-	
28				기자재	빅테이블 3612	2018.09.13	1	1,425,200	1,425,200	-	
29				기자재	컴퓨터책상	2018.09.21	1	267,830	267,830	-	
30	-	AG	-	기자재	홍송탁자(탁자판+하부)	2018.10.12	2	491,000	982,000	-	
31				기자재	홍송탁자(탁자판+하부)	2018.10.12	2	553,000	1,106,000	-	
32				기자재	Formlabs Form Cure	2018.10.26	1	836,000	836,000	-	
33				기자재	Formlabs Form Wash	2018.10.26	1	1,149,500	1,149,500	-	
34				기자재	비디오프로젝터	2018.11.07	1	1,186,370	1,186,370	-	
35				기자재	노트북컴퓨터	2018.11.07	1	1,457,830	1,457,830	-	

연번	연구과제명	책임자	지원기관	구 분	기자재 등 명칭	구입일자	구입 수량	구입단가	구입금액	등재부서	비고
36		_		기자재	디지털카메라	2018.11.26	1	1,457,830	1,457,830	-	
37	_	_	-	기자재	강연대	2018.11.26	1	462,350	462,350	-	
38	-	_	-	기자재	파티션	2018.08.30	1	2,220,000	2,220,000	-	
39	-	_	-	기자재	유니멧 에듀세트 버전2	2018.10.26	1	2,860,000	2,860,000	-	
40	-	_	-	비 품	냉난방기	2018.12.26	1	1,185,000	1,185,000	-	
41	-	_	-	기자재	주향계	2019.01.16	2	418,000	836,000	-	
42				비 품	복사기	2019.06.03	1	3,992,440	3,992,440	<del>Ç</del>	
43	_	_	-	비 품	문서세단기	2019.06.03	1	432,320	432,320	ç.	
44	-	_	-	기자재	진동대 테이블(ST-ER-1)	2019.06.27	1	28,000,000	28,000,000	-	
45	-	-	-	기자재	시편보관대	2019.10.14	1	614,000	614,000	-	
46	-	_	-	소프트 웨 어	Sigmaplot 14.0 UP 13.0	2019.12.18	1	330,000	330,000	-	
47				기자재	컴퓨터	2019.08.12	1	311,520	311,520	-	
48	-	_	-	기자재	노트북컴퓨터	2019.08.20	1	234,460	234,460	-	
49				비 품	책상	2019.09.27	1	359,400	359,400	-	
50				기자재	책장	2019.11.25	1	306,000	306,000	-	
51				기자재	책장	2019.12.12	1	265,520	265,520	-	
52	_	_	-	기자재	모니터	2019.12.16	1	289,240	289,240	-	
53				기자재	다기능복사기	2019.12.10	1	554,000	554,000	-	
54				기자재	레이저프린터	2019.12.10	1	396,000	396,000	-	

연번	연구과제명	책임자	지원기관	구 분	기자재 등 명칭	구입일자	구입 수량	구입단가	구입금액	등재부서	비고
55		-		비 품	실험대 HB15075 1500*750*800mm	2019.06.24	1	987,000	987,000	<b>&gt;</b>	
56	_	_	-	기자재	합성용 고온 퍼니스	2019.08.02	1	1,760,000	1,760,000	<b>&gt;</b>	
57	-	-	-	비 품	패널시스템칸막이 외 부품 2종	2019.08.30	1	441,160	441,160	-	
58	-	-	-	기자재	제작선반	2019.11.18	1	200,000	200,000	-	
59				기자재	iLOG-Strain V3	2019.10.10	3	1,540,000	4,620,000	-	
60	-	-	-	기자재	변위계	2019.10.10	3	660,000	1,980,000	-	
61				기자재	제진 테이블	2019.10.10	1	3,300,000	3,300,000	-	
62	-	_	-	기자재	vortex	2019.12.05	1	500,000	500,000	-	
	합		계				82		122,142,470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36	연구과제 여비 중복 신청 및 지급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ㅇ기관경고
	제27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ㅇ경고(1명)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ㅇ주의(21명)
	한다고 되어있고, 「공무원 여비 규정」제4조, 제5조, 제8조의2에 따르면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ㅇ시정(회수)
	의하여 계산하고,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 중복 지급된 여비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하며, 국내 여행자 및 국외	합계 4,360,700원을
	여행자는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AU 등연책와 22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명으로부터 각 회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산 신청을 받은	수하여 관련회 계에 세입조치하
	회계 관계 공무원은 여비의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기바람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4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은 산학	
	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고 되어있고, 「안동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제9조	
	및 [별표 1] '연구비 비목별 집행기준'에 따르면	
	연구책임자가 연구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집행	
	계획(실행예산)에 따라 소정의 청구 관계서류를 산학협	
	력단에 요청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은 집행계획과 이그에요 거두하여 기계억이 기구하여야 하고 여그기	
	입금액을 검토하여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하고, 연구과 제와 관련한 모든 출장에 대해서 '공무원여비규정'과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있으며,	
	「안동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제12조에 따르면 연구책임	
	자는 연구비를 사용할 때에는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도,	

### 연구과제 여비 중복 신청·지급 현황

연	연 구	책 임 :	자				출 장	개	এ					٥	여비 지급'	<u></u>	정 상 지급액	과 다 지급액	
번	소 속	직	성명	소 속	직	성 명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목	적	시작일	종료일	출장지	지급일	금액	계(A)	지급액   (B)	지급액 (C=A-B)	비고
					7 E		7.1		호소현		2017.09.21	2017.09.22	울산, 거제	2017.10.11	80,000				
1	<b>o</b> 과	교 수	AU	-	공 동 연구원	AV	-조사 (3차년도)	▼▼청			2017.09.21	2017.09.21	함안	2017.12.19	40,000	160,000	80,000	80,000	1
					-, -		(- , ,		호소현장 및	및 어류조사	2017.09.22	2017.09.22	함안 합천등	2017.12.19	40,000				
2	_	_	_	_	_	_	_	_	-		2016.07.25	2016.07.25	와룡지역	2016.11.18	20,000	100,000	80,000	20,000	1
							_	-	-	-	2016.07.25	2016.07.26	영덕, 울진	2016.08.02	80,000	100,000	00,000	20,000	
							-	-	-		2016.12.02	2016.12.02	영양	2016.12.29	40,000	07.200	F7 200	40.000	
3				_	_	_	-	_	-		2016.12.02	2016.12.02	영양	2017.01.10	57,200	97,200	57,200	40,000	1
							_	-	-		2016.12.09	2016.12.09	안동	2016.12.29	20,000				
4				-	_	-	_	_	_		2016.12.09	2016.12.09	영양	2017.01.10	40,000	60,000	46,660	13,340	
							_	_	_		2016.12.09	2016.12.09	안동	2016.12.29	20,000				2
5				_	-	-	_	_	_		2016.12.09		영양	2017.01.10	57,200	77,200	63,860	13,340	
	-	_	-				_	_	_		2016.12.13		안동	2016.12.29	20,000				
6				-	-	-	_	_	_		2016.12.13		영양	2017.01.10	50,530	70,530	50,530	20,000	3
									_		2017.01.29		구례	2017.02.23	100,400				
7				-	-	-	-	-	_		2017.01.29		전남구례	2017.07.26	135,090	235,490	135,090	100,400	4
							_	_	_		2017.07.14	2017.07.15	부산	2017.08.11	95,000				
8				-	_	-	_	_	_		2017.07.14	2017.07.14	대구	2017.10.11	33,330	128,330	95,000	33,330	(5)
									_		2017.12.05	2017.12.07	서울, 전주	2018.01.12	130,000	•04000	400.000	444000	
9	-	_	-	_	_	_	_	-	_		2017.12.05	2017.12.07		2018.02.26	166,800	296,800	130,000	166,800	1
10		_	_	_	_	_		_	-		2016.10.08	2016.10.08	서울	2016.10.27	73,000	146,000	73,000	73,000	1
10		_	_				_		-		2016.10.08	2016.10.08	서울	2016.11.14	73,000	140,000	73,000	73,000	1
11	_	_	_	_	_	_	_	_	-	•	2016.04.30	2016.04.30	군위 사과 연구소	2016.07.05	40,000	80,000	40,000	40,000	1
									-	-	2016.04.30	2016.04.30	군위	2016.07.11	40,000		·		
12						_	_	_	-		2016.10.25	2016.10.25	칠곡	2016.10.27	40,000	86,900	40,000	46,900	1
14	_	_	-	_	_	_	-	_	-		2016.10.25	2016.10.25	대구	2017.01.20	46,900	00,700	40,000	±0,200	
12							-	_	-		2016.06.24	2016.06.24	예천	2016.06.30	52,000	(7 FOC	F2 000	15 500	
13	_	-	-	-	_	_	-	-	-	-	2016.06.24	2016.06.24	예천	2016.07.12	15,590	67,590	52,000	15,590	1
14	_	_				_	_	_	_		2020.02.06	2020.02.06	서울대	2020.02.13	40,000	80,000	40,000	40,000	1
14	_	_	-	_	-	-	_	_	-		2020.02.06	2020.02.06	서울대	2020.02.27	40,000	00,000	40,000	40,000	

연	연 구 :	책 임 .	자				출 장	<b>가</b>	ል				ά	i비 지급'	객	정 상 지급액	과 다 지급액	יון יי
번	소 속	직	성 명	소 속	직	성 명	연 구 과 제 명	지원기관	목 적	시작일	종료일	출장지	지급일	금액	계(A)	기급액 (B)	/시급액 (C=A-B)	비고
15	_		_	_	_	_	_	_	-	2017.09.28		대구	2017.09.29	58,800	117,600	58,800	58,800	1
13									-	2017.09.28	2017.09.28	대구	2017.10.13	58,800	117,000	30,000	30,000	1
16	_	_	_	_	_	_	-	-	-	2017.07.25	2017.07.25	서울	2017.12.27	87,800	165,800	87,800	78,000	(1)
10							_	_	-	2017.07.25	2017.07.25	서울	2017.10.17	78,000	100,000	07,000	70,000	1
4.77							-	-	-	2016.03.24	2016.03.24	청송	2016.09.30	40,000	07 (70	47 (70	40.000	
17				-	_	_	-	_	-	2016.03.24	2016.03.24	청송	2016.07.21	47,670	87,670	47,670	40,000	
	-	-	_				_	_	-	2016.03.24	2016.03.24	청송	2016.09.30	40,000				1
18				-	-	-	_	_	_	2016.03.24	2016.03.24	청송	2016.07.21	40,000	80,000	40,000	40,000	
									-	2019.01.11		사천	2019.01.25	80,800				
19	-	-	_	-	-	-	_	_	-	2019.01.11		사천	2019.02.12	78,000	158,800	80,800	78,000	1
20									-	2016.03.18	2016.03.18	목포시	2016.08.04	40,000	00.000	40,000	40,000	
20				-	_	_	_	_	-	2016.03.18	2016.03.18	목포시	2016.10.17	40,000	80,000	40,000	40,000	
21				_	_	_	_	_	-	2016.03.18		목포시	2016.08.04	40,000	80,000	40,000	40,000	(1)
									-	2016.03.18		목포시	2016.10.17	40,000		10,000	40,000	
22				_	_	_	_	_	-	2016.03.18		목포시	2016.08.04	20,000	40,000	20,000	20,000	
									-	2016.03.18		목포시	2016.10.17	20,000		,		
23	-	-	_	-	-	_	_	_	-	2018.02.02	2018.02.02	오산 오산	2019.01.24	45,000	90,000	45,000	45,000	
									-	2018.02.02		오산 오산	2019.01.24	45,000 40,000				
24				-	-	-	_	_	-	2018.02.02		오산	2019.01.24	40,000	80,000	40,000	40,000	
									_		2018.02.02	오산	2019.01.24	40,000				2
25				-	-	-	_	_	-	2018.02.02		오산	2019.01.24	40,000	80,000	40,000	40,000	
26									-	2018.02.02	2018.02.02	오산	2019.01.24	40,000	00.000	10,000	40.000	
26				-	_	_	_	_	-	2018.02.02	2018.02.02	오산	2019.01.24	40,000	80,000	40,000	40,000	
27				_	_	_	<u>_</u>	_	-	2018.09.10	2018.09.10	오산	2019.01.24	45,000	90,000	45,000	45,000	
21									-	2018.09.10		오산	2019.01.24	45,000	20,000	40,000	45,000	
28				_	_	_	_	_	-	2018.09.10		오산	2019.01.24	40,000	80,000	40,000	40,000	
	_	_	_						-	2018.09.10		오산	2019.01.24	40,000		10,000	20,000	(3)
29				-	-	_	_	_	-	2018.09.10		오산	2019.01.24	40,000	80,000	40,000	40,000	_
									-	_	2018.09.10	오산	2019.01.24	40,000				
30				-	-	-	_	_	-	2018.09.10 2018.09.10		오산 오산	2019.01.24	40,000	80,000	40,000	40,000	
							_	_		2016.09.10		조선 서울	2017.05.04	78,000				
31				-	-	-			-						159,400	81,400	78,000	1
	-	-	-				-	-	-	2016.12.07		서울	2016.12.13	81,400				
32				_	-	_	_	_	-	2019.10.15		구미 서울	2019.10.29	53,500	182,300	128,800	53,500	2
									-		2019.10.18		2019.10.29	128,800	07.770	(( ( ( ( ( ( ( ( ( ( ( ( ( ( ( ( ( ( ( (	20,000	
33	_	_	_	_	_	_	_	_	-	2018.08.08	2018.08.09	울릉	2018.09.06	66,660	86,660	66,660	20,000	1

연	연 구 🤋	책 임 :	자				출 장	<b>가</b>	ል				٥	i비 지급'	액	정 상 지급액	과 다 지급액	,ı) —
번	소 속	직	성명	소 속	직	성 명	연 구 과 제 명	지원기관	목 적	시작일	종료일	출장지	지급일	금액	계(A)	기급액 (B)	/시급액 (C=A-B)	비고
							_	_	-	2018.08.08	2018.08.08	대구	2018.10.02	20,000				
24							_	-	-	2019.03.28	2019.03.28	예천	2019.04.29	57,400	151 500	F7 400	04.120	
34				_	_	_	_	-	-	2019.03.28	2019.03.28	세종	2019.05.15	94,120	151,520	57,400	94,120	2
25							_	_	-	2019.04.11	2019.04.11	세종	2019.04.29	40,000	107.740	40,000	(7.740	
35				-	-	_	_	_	-	2019.04.11	2019.04.11	경주	2019.06.11	67,740	107,740	40,000	67,740	3
36				_	_	_	_	_	-	2016.08.10	2016.08.11	평창 진부	2016.09.27	66,680	106,680	66,680	40,000	
50	_	_	_						-	2016.08.10		영주	2016.12.29	40,000	100,000	00,000	40,000	(1)
37				_	_	_	_	_	-	2016.08.10		평창진부	2016.09.27	66,680	106,680	66,680	40,000	
									-	2016.08.10		영주 평창진부	2016.12.29 2016.09.27	40,000 109,290		<u> </u>		
38	-	-	-	-	-	-	_	_	-	2016.08.10		명정신도 영주	2016.09.27	50,670	159,960	109,290	50,670	1
									-	2016.09.09		대구	2016.12.06	59,400				
39				-	-	_	_	_	-	2016.09.09	2016.09.09	대구	2016.12.12	59,400	118,800	59,400	59,400	1
40				_	_	_	_	_	-	2018.07.29	2018.07.29	영천	2018.08.31	52,000	92,000	52,000	40,000	2
40	-	-	_						-	2018.07.29	2018.07.29	영천	2018.08.31	40,000	92,000	32,000	40,000	
41				_	_	_	_	_	-	2018.09.01	2018.09.01	청송	2018.12.18	53,600	93,600	53,600	40,000	3
**							_	-	-	2018.09.01	2018.09.01	영주	2018.11.02	40,000	70,000	00,000	10,000	
42				_	_	_	_	-	-	2016.11.24	2016.11.24	대구	2017.01.31	40,000	80,000	40,000	40,000	
42							_	_	-	2016.11.24	2016.11.24	대구 칠곡	2017.03.30	40,000	00,000	40,000	40,000	
43				_	_	_	_	_	-	2016.11.24	2016.11.24	대구	2017.01.31	40,000	80,000	40,000	40.000	
43				_	_	_	_	_	-	2016.11.24	2016.11.24	대구 칠곡	2017.03.30	40,000	00,000	40,000	40,000	
44							_	-	-	2016.11.24	2016.11.24	대구	2017.01.31	64,900	107 200	(4,000	(2.400	
44				-	-	_	_	-	-	2016.11.24	2016.11.24	대구 칠곡	2017.03.30	62,400	127,300	64,900	62,400	1
4-	-	-	_				_	_	-	2016.11.24	2016.11.24	대구	2017.01.31	40,000	00.000	40,000	40.000	
45				_	-	_	_	_	-	2016.11.24	2016.11.24	대구 칠곡	2017.03.30	40,000	80,000	40,000	40,000	
							_	_	-	2016.11.24	2016.11.24	대구	2017.01.31	40,000				
46				-	_	_	_	_	-	2016.11.24	2016.11.24	대구 칠곡	2017.03.30	40,000	80,000	40,000	40,000	
							_	_	-	2019.12.05	2019.12.05	부산	2019.12.11	94,400				
47				-	_	_	_	_	-	2019.12.05	2019.12.05	부산	2020.01.15	72,700	167,100	94,400	72,700	2
							_	_	-		2018.06.01	수원, 신인군		40,000				
48	-	-	-	-	-	_	_	_	-	2018.06.01		봉화	2018.07.02	40,000	80,000	40,000	40,000	1
							_	_	-	2019.07.08		영덕	2019.07.16	61,800				
49				-	_	-	_	_	_	2019.07.08	2019.07.08	전북 순창	2019.07.16	53,600	115,400	61,800	53,600	
F0	-	-	_											•	00.000	40,000	40.000	2
50				-	_	_	_	_	-	2019.07.08	2019.07.08	영덕	2019.07.16	40,000	80,000	40,000	40,000	

연	연 구 🤋	책 임 :	자				출 징	<b>가</b>	ዼ				٥	i비 지급'	액	정 상 지급액	과 다 지급액	חום
번	소 속	즥	성 명	소 속	직	성 명	연 구 과 제 명	지원기관	목 적	시작일	종료일	출장지	지급일	금액	계(A)	/시급액 (B)	/시급액 (C=A-B)	비고
							_	_	-	2019.07.08	2019.07.08	전북 순창	2019.07.16	40,000				
F4							-	_	-	2019.07.08	2019.07.08	영덕	2019.07.16	40,000	00.000	40,000	40.000	
51				_	-	_	_	-	-	2019.07.08	2019.07.08	전북 순창	2019.07.16	40,000	80,000	40,000	40,000	
							_	_	-	2019.07.08	2019.07.08	영덕	2019.07.16	40,000	00.000	40,000	40,000	
52				-	-	_	_	_	-	2019.07.08	2019.07.08	전북 순창	2019.07.16	40,000	80,000	40,000	40,000	
							_	-	-	2019.07.08	2019.07.08	영덕	2019.07.16	40,000	00.000	40,000	40.000	
53				-	-	_	-	_	-	2019.07.08	2019.07.08	전북 순창	2019.07.16	40,000	80,000	40,000	40,000	
F.4							_	-	-	2015.11.13	2015.11.13	길안	2015.12.23	20,000	72 (00	((,020	( (70	
54				_	-	_	_	-	-	2015.11.13	2015.11.13	청송	2015.11.18	53,600	73,600	66,930	6,670	1
55				_	_	_	_	_	-	2016.05.07	2016.05.07	영월	2016.05.11	40,000	80,000	40,000	40,000	2
33									-	2016.05.07		영월	2016.07.06	40,000	00,000	40,000	40,000	4
56				_	_	_	_	_	-	2016.05.12		길안	2016.05.16	20,000	138,000	118,000	20,000	3
		_							-	2016.05.12		수원	2016.05.26	118,000				
57	_	_	_	_	_	_	_	_	-	2016.06.13		문경	2016.06.17	40,000	121,800	81,800	40,000	4
							-	-	-	2016.06.13		안성	2016.07.28	81,800	,		,	
58				_	_	_	_	_	-	2016.07.05	2016.07.05	충주	2016.11.25	71,600	91,600	71,600	20,000	
							-	-	-	2016.07.05		길안	2016.07.20	20,000		1 2,000		(5)
59				_	_	_	_	-	-	2016.07.05		길안	2016.07.20	20,000	78,400	58,400	20,000	
<u> </u>							_	-	-	2016.07.05	2016.07.05	음성	2016.09.19	58,400	70,100	50,100	20,000	
60				_	_	_	_	_	-	2016.07.14	2016.07.14	길안	2016.07.20	20,000	30,000	20,000	10,000	6
00							_	-	-	2016.07.14	2016.07.14	길안	2016.07.28	10,000	30,000	20,000	10,000	
61				_	_	_	_	_	-	2017.06.09	2017.06.09	영주	2017.08.08	26,700	36,700	26,700	10,000	7
01							_	_	-	2017.06.09	2017.06.09	남선	2017.08.08	10,000	30,700	20,700	10,000	
62				_	_	_	_	_	-	2017.08.04	2017.08.07	제주	2017.10.10	155,100	256,700	155,100	101,600	8
02				_	_	_	_	_	-	2017.08.04	2017.08.04	당진	2017.08.11	101,600	230,700	155,100	101,000	0
(2							-	-	-	2017.08.29	2017.08.30	남원	2017.09.25	73,300	107 700	72.200	22.200	0
63	-	-	-	_	-	_	-	-	-	2017.08.29	2017.08.29	전주	2017.09.07	33,300	106,600	73,300	33,300	9
64				_	_	_	_	_	-	2017.09.22		대구	2017.11.14	33,300	90,600	57,300	33,300	10
04							_		-	2017.09.22		영천	2017.11.14	57,300	20,000	37,300	33,300	100
65				_	_	_	_	_	-	2018.01.12	2018.01.12	영주	2018.02.06	26,300	66,300	40,000	26,300	(11)
							_	_	-	2018.01.12		서울	2018.05.09	40,000	20,000	10,000		
									-	2018.02.28	2018.02.28	경주	2018.03.08	40,000				
66				_	_	_	-	_		2018.02.28	2018.02.28	경주	2018.04.20	40,000	80,000	40,000	40,000	12

여	연 구 :	책 임 :	자				출 출	· 개	ል				٥	i비 지급역	객	정 상 지급액	과 다 지급액	) <b>-</b> -
연 번	소 속	직	성 명	소속	직	성 명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목 적	시작일	종료일	출장지	지급일	금액	계(A)	기급액 (B)	시급액 (C=A-B)	비고
67				1	ı	-	-	_	-	2018.02.28	2018.02.28 2018.02.28	경주 경주	2018.03.08 2018.04.20	65,200 57,600	122,800	65,200	57,600	
								_	-	2018.05.21	2018.05.21	양산	2018.06.25	33,300				
68				_	-	-	_	_	-	2018.05.21	2018.05.21	영주,봉화, 북후면	2018.07.25	26,600	59,900	33,300	26,600	13
							_	_	-	2018.07.17	2018.07.17	양산	2018.07.25	33,300				
69				_	-	-	-	_	-	2018.07.17	2018.07.17	영주,봉화, 북후면	2018.07.25	26,600	59,900	33,300	26,600	14)
70				_		_	_	_	-		2018.08.03	청송	2018.12.27	33,300	59,900	33,300	26,600	(15)
70									-		2018.08.03	상주	2018.12.27	26,600		33,300	20,000	
71				_	_	_	_	_	-		2018.08.03	청송	2018.12.27	46,900	91,700	46,900	44,800	15
									-		2018.08.03	상주 태백	2018.12.27	44,800 33,300	· · · · · · · · · · · · · · · · · · ·			
72				-	-	-	-	_	-	_	2018.09.10	예천	2018.10.31	33,600	66,900	33,600	33,300	
							-	_	_		2018.09.10	창원	2018.11.16	50,300				
73				-	-	_	_	_	-		2018.09.10	태백	2018.10.31	33,300	83,600	50,300	33,300	16
							_	_	-	2018.09.10	2018.09.10	예천	2018.10.31	26,600				
74				_	_	_	_	_	-	2018.09.10	2018.09.10	창원	2018.11.16	33,300	59,900	33,300	26,600	
							-	_	-	2018.09.29	2018.09.29	의성	2018.10.31	48,200	02.000	40.200	44.000	
75				_	_	-	_	_	-	2018.09.29	2018.09.29	상주	2018.11.16	44,800	93,000	48,200	44,800	
							_	_	-	2018.09.29	2018.09.29	의성	2018.10.31	40,000				17
76	-	_	-	_	_	_	_	_	-	2018.09.29	2018.09.29	상주	2018.11.16	26,600	66,600	40,000	26,600	
							_	_	-	2018.10.05	2018.10.05	칠곡	2018.12.27	26,600				_
77				_	-	-	_	_	-	2018.10.05	2018.10.05	창원	2018.11.16	33,300	59,900	33,300	26,600	18
							-	_	-	2018.10.16	2018.10.16	영천	2018.10.31	18,700				_
78				_	-	-	-	_	_	2018.10.16	2018.10.16	영천	2018.12.27	23,700	42,400	23,700	18,700	19
							<del>-</del>	_	_	2018.10.19		전주	2018.12.27	33,300				
79				-	-	-	_	_	_	2018.10.19	2018.10.20	서울	2018.11.23	81,900	115,200	81,900	33,300	20
								_	_	2018.10.29		영주	2018.10.31	26,600				
80				-	-	_		_	-	2018.10.29		9 경천	2018.11.16	50,600	77,200	50,600	26,600	
							_	_	-	2018.10.29	2018.10.29	영주	2018.10.31	26,600				21)
81				-	-	_	-	_	-	2018.10.29	2018.10.29	영천	2018.11.16	26,600	53,200	26,600	26,600	
82	-	-	ı	-	ı	-	-	_	-	2019.01.04	2019.01.04	예천	2019.02.28	20,000	40,000	20,000	20,000	22

연	연 구 🤋	책 임 :	자				출 징	개	ዼ				٥	여비 지급	액	정 상 지급액	과 다 지급액	,ı) —
번	소 속	직	성 명	소 속	직	성 명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목 적	시작일	종료일	출장지	지급일	금액	계(A)	기급액 │ (B)	/시급액 (C=A-B)	비고
							_	-	-	2019.01.04	2019.01.04	예천	2019.05.08	20,000				
00							_	-	-	2019.02.12	2019.02.12	전주	2019.02.28	88,300	104 100	00.200	25.000	
83				-	_	_	-	-	-	2019.02.12	2019.02.12	의성	2019.06.12	35,800	124,100	88,300	35,800	23
0.4				_	_		-	_	-	2019.02.19	2019.02.21	전주,서울	2019.06.12	146,600	172 200	146 (00	26,600	24)
84				_	_	_	_	-	-	2019.02.19	2019.02.19	의성	2019.06.12	26,600	173,200	146,600	26,600	( <del>4</del> )
							_	_	-	2019.04.30	2019.04.30	청송	2019.07.03	36,000				_
85				-	-	_	-	_	-	2019.04.30	2019.04.30	경주,포항, 군위,문경	2019.06.20	59,200	95,200	59,200	36,000	25
86				_	_	_	_	_	-	2019.05.25	2019.05.26	경산	2019.07.03	80,400	147,000	90 400	66,600	
00				_	_	_	_	_	-	2019.05.25	2019.05.26	광주	2020.01.15	66,600	147,000	80,400	00,000	26
87				_	_	_	-	-	-	2019.05.25	2019.05.26	경산	2019.07.03	66,600	133,200	66,600	66,600	
0/				_		_	-	-	-	2019.05.25	2019.05.26	광주	2020.01.15	66,600	155,200	00,000	00,000	
88				_		_	-	-	-	2019.05.29	2019.05.30	경산	2019.08.14	53,300	79,900	53,300	26,600	
00				_		_	_	_	-	2019.05.29	2019.05.29	예천	2020.01.15	26,600	79,900	33,300	20,000	
89				_	_	_	_	_	-	2019.05.29	2019.05.30	경산	2019.08.14	68,500	103,500	68,500	35,000	27
09							_	-	-	2019.05.29	2019.05.29	예천	2020.01.15	35,000	103,300	00,500	33,000	
90				_	_	_	_	_	-	2019.05.29		경산	2020.01.15	60,000	86,600	60,000	26,600	
-									-	2019.05.29		예천	2020.01.15	26,600	00,000	00,000		
91				_	_	_	_	-	-	2019.05.29		경산	2019.06.11	10,000	66,600	56,600	10,000	28
							_	-	-	2019.05.29		경산	2019.07.03	56,600				
92				_	_	_	_	-	-	2019.06.03		경산	2019.07.03	40,400	73,700	40,400	33,300	29
							_	-	-	2019.06.03			2020.01.15	33,300				
93				-	-	_	_	_	-	2019.06.20		문경 예천	2019.07.25	20,000	46,600	26,600	20,000	
0.1									-	2019.06.20		문경	2019.07.25	42,200		42.202	25.000	30
94				-	_	_	_	_	-	2019.06.20		예천	2019.12.30	35,000	77,200	42,200	35,000	
95				_	_	_	-	-	-	2019.06.25	2019.06.25	북후, 봉화, 태백	2019.08.12	26,600	59,900	33,300	26,600	31)
	_	_	_				_	-	-	2019.06.25	2019.06.25	경산, 문경	2020.01.15	33,300	,	,	,	
96	_	_	_	_	_	_	_	_	-	2019.07.01	2019.07.02	경산	2020.01.17	75,200	101,800	75,200	26,600	
90							_	-	-	2019.07.01	2019.07.01	부여	2019.07.25	26,600	101,000	73,200	20,000	
					-			-	-	2019.07.01	2019.07.02	경산	2020.01.17	60,000				(32)
97				-	-	_	-	_	-	2019.07.01	2019.07.01	부여	2019.07.25	59,200	119,200	60,000	59,200	

여	연 구 🌣	책 임 :	자				출 장	개	<u>\$</u>					Ċ	<sup>며비 지급</sup>	액	정상	과 다 지급액	11) -
연 번	소 속	직	성 명	소 속	직	성 명	연 구 과 제 명	지원기관	목	적	시작일	종료일	출장지	지급일	금액	계(A)	정 상 지급액 (B)	/시급액 (C=A-B)	비고
98				_	_	_	_	_	-		2019.07.03	2019.07.03	서울	2019.08.12	77,700	148,500	77,700	70,800	
									-		2019.07.03		서울	2019.11.26	70,800	140,500	77,700	70,000	(33)
99				_	_	_	_	_	-		2019.07.03		서울	2019.08.12	77,700	117,700	77,700	40,000	
									-		2019.07.03		서울	2019.11.26	40,000		,	,	
100				_	_	_		-	-		2019.07.04	2019.07.04	상주	2019.08.12	20,000	46,600	26,600	20,000	34)
100							_	-	-		2019.07.04	2019.07.04	예천	2019.07.25	26,600	10,000	20,000	20,000	
101				_	_	_	-	-	-		2019.07.09	2019.07.09	정선,북후, 태백	2019.08.12	26,600	53,200	26,600	26,600	
							_	-	-		2019.07.09	2019.07.09	경산, 군위	2020.01.17	26,600	,	<u> </u>	,	
102				_	_	_	-	-	-		2019.07.09	2019.07.09	정선,북후, 태백	2019.08.12	59,600	101,400	59,600	41,800	35
							_	-	-		2019.07.09	2019.07.09	경산,군위	2020.01.17	41,800		,		
							-	_	-		2019.07.16	2019.07.16	영주,태백	2019.08.12	26,600				
103				-	-	_	-	-	-		2019.07.16	2019.07.16	영덕경주,포함, 군위문경	2020.01.17	40,000	66,600	40,000	26,600	36
101							-	-	-		2019.07.18	2019.07.18	경산	2019.08.12	43,600	(2 (00	12 (00	••••	
104				-	_	-	_	_	-		2019.07.18	2019.07.18	길안	2020.01.17	20,000	63,600	43,600	20,000	37
			•				_	_	-		2019.07.19	2019.07.19	풍산	2019.08.12	20,000				
105				-	-	_	-	_	-		2019.07.19	2019.07.19	상주	2020.01.17	33,300	53,300	33,300	20,000	
	-	-	-				_	_	-		2019.07.19	2019.07.19	풍산	2019.08.12	20,000				- 38
106				-	-	-	_	_	_		2019.07.19	2019.07.19	상주	2020.01.17	54,300	74,300	54,300	20,000	
107				_		_	-	-	-		2019.08.13		경주,문경, 군위,포항	2020.01.17	72,600	112,600	72,600	40,000	39
107							_	_	_		2019.08.13	2019.08.13	영덕	2019.12.30	40,000	112,000	12,000	10,000	
100									-		2017.03.02		서울	2017.03.08	45,000	00.000	4= 005	45.000	
108	-	-	-	-	_	_	-	-	-		2017.03.02		서울	2017.03.30	45,000	90,000	45,000	45,000	1
계	22	2명			60명										10,468,950	10,468,950	6,108,250	4,360,700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37	연구년 연구결과물 미제출 및 지연제출	
	○ 「안동대학교 연구교수 규정」 제7조 및 제11조에	ㅇ 경고(1명)
	따르면 연구교수는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ㅇ 주의(4명)
	연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저술은 3개월	ㅇ 시정(회수)
	이내로 할 수 있고 학술연구교수로 선정된 자는	- 연구비를 지원받고도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국내(연구재단등재	연구보고서 및 결과물을 제출하지
	후보지이상)・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별쇄본) 또는	
	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연구결과보고서 및	귀스크시 키기
	결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교수에 대하여는	회계에 세인주치
	연구비 전액을 환수하며, 향후 연구교수 선발 및 5년간	하기 바람
	이 대학교에서 지원하는 연구과제 선발에서 제외하고,	
	「안동대학교 교육공무원 해외파견에 관한 지침」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정한 기한 내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발표하지 못하였을 경우 등 해당 될 경우	
	에는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하고, 파견연구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연구를 종료한 때에는 종료 후 1개월	
	내에 소정 서식에 의한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제출 후 2년 이내에 국내(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지이상) · 외 학술지에 게재하고 게재 확인된	
	별쇄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안동대학교 ■과 AW은 학술연구교수로 선정되어	
	2015. 9. 1.부터 2016. 8. 31.까지 '-' 과제 연구를	
	목적으로 연구비 5백만원을 지급받고도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8. 8. 31. 퇴직하는 등	
	【붙임】"연구과제 결과 제출현황"과 같이 2014. 12.	
	부터 2020. 3.까지 위 AW 등 연구교수 및 파견연구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보조금을 지원받은 교원 5명은 연구과제 결과를 제	
	출하지 않거나 짧게는 21일, 길게는 1,023일 지연 제	
	출한 사실이 있음.	

### 연구과제 결과 제출현황

∆ <del>j</del> u]	¬н	곁	의보고서 >	제출자	وطرادات	od_m)	연구(피	건)기간	제출	기한	쟤	출일	지연	깕
연번	구분	샼	직급	성명	과제명	연구비	사작	磊	보고서	실적물	보고서	실적물	보고서	섈
1	학술 연구	即	ı	AW	-	5,000	′15.9.1	′16831	′169.30.	′18.8.31	미제출	미제출		
2	학술 연구	-	ı	-	-	7,000	′15.9.1	′16831	′169.30.	′188.31	′19.7.19	′19.7.19	1,023	323
3	해외 파견	-	-	-	-	13,000	′141226	′161.29	′16.229	′18.215	′16.216	′18.3.19	-	33
4	해외 파견	-	-	-	-	10,000	′16819	′17.818	′17.9.18	′19.9.18	′17.11.6	′19.12.23	50	97
5	해외 파견		-	-	-	10,000	′161222	′181.31	′18.228	′20229.	′18.3.20	′20.3.31	21	33
	합계				45,000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연번 <b>38</b>	지 적 사 항 LINC+ 육성사업비 지원 교재 개인출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운영 규정」제35조에 따르면 사업단의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무형의 과실(산업재산권, 수익금, 특허료, 기술	<ul><li>주의(1명)</li><li>통보</li></ul>
	이전료 등을 포함한다)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해당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에 귀속함을 원칙 으로 하고, 「안동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제2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실용신안권. 디자인권·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과 반도체배치설계권, 퍼블리시티권, 캐릭터권, 데이터베이스권, 종자보호권, 노하우, 산업자문 등을	판된 저서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권리확보 등 조치를 취하기 바람
	포함하는 의미의 총칭을 말하며, 직무발명이란 교직원 등이 그 직무로 발명한 것이 대학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등이고, 직무발명의 권리는 산학 협력단이 승계하며, 직무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산학 협력단 소유로 하고,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은 이를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교직원 등은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직무발명신고서 등 서류를 갖추어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안동대학교 ■과 AX은 2018. 1. 2.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비에서 '**학(개발기간 '17.7.~'17.12.)' 교과목 교재개발비 원고료 4,107천원을 지급받고도, 교재개발 내용을 싫과 협의없이 임의로 2018. 2. 20. □ □ □ □ □ □ □ □ □ □ □ □ □ □ □ □ □ □ □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39	연구노트 미작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9조에	ㅇ 주의(11명)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성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이하 "연구노트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제공	
	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연구자는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	
	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연구노트 지침(과기부훈령)」	
	제6조에 따르면 연구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안동대학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규정」제5조에 따르면 연구자는 연구노트의 작성·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식성·된다 등의 의무를 경찰이 이행하여야 만나고 되어 있는데도,	
	以上 네 <i>工</i> ,	
	- 안동대학교 ○과 AY는 2018. 3. 1.부터 2018. 12. 20.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인 '-(연구비 86,468천원)'과제를 수행	
	하면서 연구노트를 작성하지 않는 등 【붙임】"연구	
	노트 미작성 현황"과 같이 2016. 3.부터 2019. 1. 까지	
	위 AY 등 교원 11명이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 13건에	
	대해 연구노트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연구노트 미작성 현황

	연구	책임자		연구수행내역				
연번	소속	직급	성명	과제명	연구	기간	지원기관	지원금액
	11-47	주 H	78.20	과제 3	시작	종료	시원기원	시된급력
1	○과	-	AY	<del>-</del>	2018.03.01	2018.12.20	-	86,468
2	○과	-	_	-	2016.12.11	2017.12.10	-	40,000
3	_	_	_	-	2018.03.01	2018.12.31	-	80,000
3	_	_	_	-	2018.09.10	2018.12.28	-	6,000
4	<b>슈</b> 과	_	BN	-	2017.10.01	2018.01.31	-	20,000
5	○과	_	_	-	2017.10.01	2018.01.31	-	20,000
6	□과	-	_	-	2017.08.14	2018.08.13	-	50,000
7	-	_	_	1 <del>-</del>	2016.03.01	2017.02.28	-	20,000
8	-	-	_	-	2017.10.01	2018.01.31	-	15,000
9	-	-	-	-	2017.10.01	2018.01.31	-	5,000
10	<b>■</b> 과		_	<del>-</del>	2017.05.10	2017.12.31	-	50,000
10	<u> </u>	-	_	-	2017.10.01	2018.01.31	-	15,000
11	-	-	_	-	2017.10.01	2018.01.31	-	20,000
				합계(13건)				427,468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면 <b>40</b>	지 역 사 양  공동실험실습관 기기사용료 미수납  ○ 「안동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규정」 제10조에 따르면 공동실험실습관 운영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기사용 요금을 징수하되, 기기별 사용요금은 운영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따로 정하고, 「안동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운영(수리, 유지보수, 소모품 비용)에 필요한 소정의 기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기기 사용 후 사용료를 6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사용료 납부 독촉 및 기기이용 제한을 안내하고, 1년 이상 사용료를 미납할 경우는 이후의 기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 안동대학교는 2020. 1. 9. ■■ 소속 교직원 AZ이 사용한 기기(전계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의 사용료 180 천원을 2020. 7. 17. 감사일 현재 납부받지 않는 등 [불임] "기기사용료 미수납현황"과 같이 2020. 1. 부터 2020. 7. 감사일 현재까지 위 전계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 등 AZ이 사용한 기기의 사용료 2,970천원을 납부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ul> <li>주의(2명)</li> <li>시정(회수)</li> <li>미수납된 기가사용료 합계 2,970천원을 미납자로부터 납부 받아 관련회계에</li> </ul>

### 기기사용료 미수납 현황

			T		I	I	(12.11	,
०∄न्ग	회원		가 ㅇ ㅋl ㅋl ㅠl	71 O =		사용료	11 보 의 취	nj –
연번	소속	성명	사용기기명	사용료	결과 발급일	사용료 납부일	납부기한	비고
1	-	AZ	전계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	180,000	2020-01-09		2020-07-08	
2	-	AZ	전계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	180,000	2020-01-09		2020-07-08	
3	-	AZ	전계방출형 전자탐침 미세분석기	120,000	2020-01-09		2020-07-08	
4	-	AZ	전계방출형 전자탐침 미세분석기	120,000	2020-01-09		2020-07-08	
5	-	AZ	X-선 형광분석기	90,000	2020-01-09		2020-07-08	
6	-	AZ	전계방출형 전자탐침 미세분석기	240,000	2020-01-10		2020-07-09	
7	-	AZ	공촛점 레이저 주사현미경	60,000	2020-01-10		2020-07-09	
8	-	AZ	전계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	180,000	2020-01-10		2020-07-09	
9	-	AZ	전계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	120,000	2020-01-10		2020-07-09	
10	-	AZ	전계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	120,000	2020-01-16		2020-07-15	
11	-	AZ	전계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	180,000	2020-01-16		2020-07-15	
12	-	AZ	이중빔 집속이온빔 장치	240,000	2020-01-16		2020-07-15	
13	-	AZ	이중빔 집속이온빔 장치	180,000	2020-01-16		2020-07-15	
14	-	AZ	이중빔 집속이온빔 장치	180,000	2020-01-17		2020-07-16	
15	-	AZ	이중빔 집속이온빔 장치	240,000	2020-01-17		2020-07-16	
16	-	AZ	전계방출형 전자탐침 미세분석기	240,000	2020-01-17		2020-07-16	
17	-	AZ	전계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	300,000	2020-01-17		2020-07-16	
	항	계		2,970,000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41	계약체결 부적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및	ㅇ 경고(6명)
	「같은 법 시행령」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은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경쟁입찰을 실시	
	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밖에 없음이 명백한 경우 및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재공고입찰에도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 수인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는데도,	
	- 안동대학교는 2018. 12. 19. 일반경쟁 대상인 '2018학년도	
	안동영어마을 입소생 성적우수자 해외 어학연수(계약	
	금액 41,100천원)'를 주식회사 ◇◇와 수의계약 체결하는	
	등 【붙임1】 "일반경쟁 대상 용역 수의계약 현황"과 같이	
	2018. 12.부터 2019. 12.까지 위 건 등 일반경쟁대상	
	총 2건, 합계 84,396천원을 수의계약 체결한 사실이 있음.	
	- 안동대학교는 2020. 2. 12. '4차 산업혁명 WE Agree	
	사업단 드론교육 위탁사업'을 ♡♡, ♤♤, ♬♬과 각각	
	수의계약(개별 계약금액 19,600원, 금액합계 58,800천	
	원) 체결하는 등 【붙임2】 "분할 수의계약 현황"과 같이	
	2017. 6.부터 2020. 2.까지 위 건 등 총 35건, 합계	
	603,432천원을 분할하여 수의계약 체결한 사실이 있음.	

#### 【붙임1】

#### 일반경쟁 대상 용역 수의계약 현황

(단위 : 천원)

연	건명	소관부서	계약	계약일자 -	계약대	내상자	주요거래품목	계약
번	신명 	2.ゼナベ	구분	계약될사	상호명	업종	구조기대품학	금액
1	2018학년도 안동영어마을 입소생 성적우수자 해외 어학연수	€원 (대학회계)	용역	2018.12.19	주식회사 ◇◇	유학, 어학연수	해외 어학연수 대행 등	41,100
2	2019학년도 안동영어마을 입소생 성적우수자 해외 어학연수	<b>●</b> 원 (대학회계)	용역	2019.12.17	주식회사 ◇◇	유학, 어학연수	해외 어학연수 대행 등	43,296
			합계					84,396

#### 【붙임2】

### 분할 수의계약 현황

연	7] p}	2 =1 H ) ]	계약	عاا دادها عا	계약대	·· 내상자	조 스 키 레 포 ㅁ	계약
번	건명	소관부서	구분	계약일자	상호명	업종	주요거래품목	금액
1	4차 산업혁명 WE Agree 사업단 드론교육(비교과목)(4차)	-	용역	2020.02.12	ආදා	방제드론, 항공방제 등	드론국가자격취 득교육	19,600
2	4차 산업혁명 WE Agree 사업단 드론교육(비교과목)(4차)	-	용역	2020.02.12	<b>\$</b> \$	드론조종 교육, 드론제조 등	드론국가자격취 득교육	19,600
3	4차 산업혁명 WE Agree 사업단 드론교육(비교과목)(4차)	-	용역	2020.02.12	-	드론조종 교육, 드론제조 등	드론국가자격취 득교육	19,600
4	실험실 및 교육환경 개선 지원(4차)	-	물품	2019.12.27	-	시 <del>무용</del> 기구, 실내장식 등	드론국가자격취 득교육	15,832
5	실험실 및 교육환경 개선 지원(4차)	-	물품	2019.12.18	-	정보통신 공사, 컴퓨터 사무기기 등	DELL보스트로 3671	21,968
6	실험실 및 교육환경 개선 지원(4차)	-	물품	2019.12.18	-	컴퓨터 주변기기, 소프트웨 어 개발 등	모바일학습촬영 시스템, TV이동형 스탠드 등	18,678
7	실험실 및 교육환경 개선 지원(4차)	-	물품	2019.12.18	-	통신공사, 사무용기 기및주변 기기 등	스위칭허브, NS서버 등	17,052

연	건명	 소리 H 기	계약	계약일자	계약대	개상자	주요거래품목	계약
번	신경	소관부서	구분	세약할사	상호명	업종	下並/141古古	금액
8	실험실 및 교육환경 개선 지원(4차)	-	물품	2019.12.16	-	전자칠판, 전자교탁 등	스마트보드, 프리젠터 등	13,017
9	실험실 및 교육환경 개선 지원(4차)	-	물품	2019.12.11	-	연구 및 생산용 시약 등	원심분리기, 초저온 냉동고	20,020
10	Plant Factory 교육환경 양액제어 및 재배 시스템 개선(4차)	-	물품	2019.12.10	-	기계부품 가공, 기계제장등	양액제어, 튜브 유동식 펌프, 배양액 순환 시스템 등	19,800
11	Plant Factory 교육환경 양액제어 및 재배 시스템 개선(4차)	-	물품	2019.12.10	-	비철금속, 파이프	재배베드 스트럭쳐, 알루미늄 파이프 등	18,700
12	4차 산업혁명 WE Agree 사업단 교수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운영(4차)	-	용역	2019.12.02	-	기업교육 서비스소 프트웨어 개발	사업관리, 온라인교육 콘텐츠개발	16,000
13	4차 산업혁명 WE Agree 사업단 교수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운영(4차)	-	용역	2019.12.02	-	학술연구, 경 <b>왕</b> 설등등	사업관리, 오프라인교육, 연수프로그램 개발 등	20,000
14	4차 산업혁명 WE Agree 사업단 농산업 4차 산업혁명 해외 선도대학 벤치마킹 국외 파견(4차)	-	용역	2019.10.10	-	여행업 등	비행기 표	12,425
15	4차 산업혁명 WE Agree 사업단 농산업 4차 산업혁명 해외 선도대학 벤치마킹 국외 파견(4차)	-	용역	2019.10.10	-	여행사	숙박비, 식대 등	17,336
16	캡스톤디자인 실습실구축지원사업 실험실습기자재비(LINC+)	-	물품	2020.02.11	-	화학기기, 실험기자재	Ball Mill cabinet type roller 700mm 2단 6roll, Gust pump	10,100
17	캡스톤디자인 실습실구축지원사업 실험실습기자재비(LINC+)	-	물품	2020.02.11	-	촬영장비, 전가기기	카메라, 컴팩트 캠코더, 렌즈, 조명, 오디오, 보조용품, 배터리	19,140
18	캡스톤디자인 실습실구축지원사업 실험실습기자재비(LINC+)	-	물품	2020.02.11	-	소프트웨 어 자문, 개발 및 공급	3D 프린터, 필라멘트	20,000
19	캡스톤디자인 실습실구축지원사업 실험실습기자재비(LINC+)	-	물품	2020.02.03	-	시약 및 과학기자재	SORVALL Legend Micro Centrifuge 21R, Mini-PROTEA N Tetra Cell and PowerPac Basic Power Supply, PIPETMAN L Multichannel P8×200L	14,322

연	7] m	소키비기	계약	3) OFO[3]	계약대	· 사상자		계약
번	건명	소관부서	구분	계약일자	상호명	업종	주요거래품목	금액
20	캡스톤디자인 실습실구축지원사업 실험실습기자재비(LINC+)	-	물품	2020.01.31	-	과학기자재, 시약	NanoReady Touch, Gel Documentation system, Vortex Mixer	19,800
21	캡스톤디자인 실습실구축지원사업 실험실습기자재비(LINC+)	-	물품	2020.01.29	-	시청각 기자개 및 교수기기	개방형 열람대, 칸막이형 열람대, 의자, 대기용 장의자, 락카(6인용), 락카(2인용), 입식정보검색대	22,000
22	HuStar 바이오 혁신아카데미사업	දු	물품	2019.12.13	-	교재, 교구, 컴퓨터 등	자동피펫세트 등	11,903
23	HuStar 바이오 혁신아카데미사업	ද්ද	물품	2019.12.13	-	과학기기등	1,4-Dimethowy benzene 등	12,241
24	HuStar 바이오 혁신아카데미사업	දුද	물품	2019.12.12	-	과학기등	Real time PCR(Biomolecu lar system, MIC-2)	17,780
25	HuStar 바이오 혁신아카데미사업	දු	물품	2019.12.10	-	과학기등	동결건조기(FD TA-4504)	17,600
26	HuStar 바이오 혁신아카데미사업	ද්	물품	2019.12.10	-	과학 기자재 등	Syringe filter 등	12,091
27	HuStar 바이오 혁신아카데미사업	ද්ද	물품	2019.12.09	-	과학기기등	10ml syringe 등	13,970
28	HuStar 바이오 혁신아카데미사업	ද්දි	물품	2019.12.06	-	과학 기자재 등	원심분리기, 콜드랩챔버, 순수제조장치	14,930
29	HuStar 바이오 혁신아카데미사업	<del>Ç</del>	물품	2019.11.05	-	과학 기자재 등	ABS Plus(Absorbanc e Microplate Reader)	19,250
30	HuStar 바이오 혁신아카데미사업	ද්	물품	2019.11.01	-	과학기기등	중앙실험대 외 등	20,237
31	백신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사업(1차년도)	දු	물품	2019.11.26	-	과학기기 등	UV 광원 발산 장치	10,450
32	백신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사업(1차년도)	<del>Ç</del>	물품	2019.11.26	-	과학 기자재 등	화학발광 이미지 분석시스템	19,250
33	백신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사업(1차년도)	ද්දි	물품	2019.11.26	-	연구 기자재 등	마이크로플레이 트리더	19,800
34	2018학년도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	용역	2017.6.19	-	통신판매업	입학원서 접수대행	21,235
35	2018학년도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용역	2017.6.19	-	통신판매업	입학원서 접수대행	17,705
합 계								603,432

기관명 : 안동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2	건설공사 품질관리 부적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제1항 및「같은 법 시행	ㅇ 경고(4명)
	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ㅇ 통보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설계도서에 명시	품질관리 관련법령 상의 절차를 준수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하기 바람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에 따르면 품질	
	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는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바닥면적 20㎡ 이상)을 설치하고	
	건설기술인(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는데도,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 이상 건축물 건축	
	공사, 총공사비 2억원 이상 전문공사	
	- 안동대학교는 2018.11.13. ㈜☆☆(대표 BA)과 계약한	
	"안동대학교 남자기숙사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계약금액	
	6,927,305천원, 공사기간 : '18.11.26.~'21.2.17.)"를 추진하	
	면서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 및	
	설계도서에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며,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임에도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건설기술인을 배치	
	하지 아니하는 등 【붙임】"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조치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8.11.부터 2020.7. 감사일	
	현재까지 위 공사 등 2건의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 및 설계 도서에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오시에 당시하시 아니아였으며, 신설당사 품절단디를 위한 시험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에이에게 가입된 가린가 ㅆㅁ.	

#### 【붙임】

### 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조치 부적정 현황

ادرائم	7 11 21	계약	계약일	계약	품질시험	품질 관리 관련 조치					
연번	공사명	상대자	착공일 준공예정일	금액	대상 (기준)	비용 계상 및 설계도서 명시 (○,×)	시험실 설치 (○,×)	건설기술인 배치 (○,×)			
1	안동대학교 남자기숙사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	2018.11.13. 2018.11.26. 2021.02.17.	6,927,305	10,651㎡ (660㎡이상 건축공사)	×	×	×			
2	안동대학교 남자기숙사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	-	2018.11.19. 2018.11.26. 2021.02.17.	2,453,447	24억5천만원 (2억원 이상 전문공사)	×	×	×			

기관명: 안동대학교

여번 지 적 사 핤 처 분 43 시설공사 시공 검사 부적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ㅇ 경고(2명)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에 따르면 이 시정(회수) - 부적정 시공 4건에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대하여 과다하게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지급된 공사금액 1,658천원을 ▲▲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감독하여야 하고, 계약 (주)로부터 회수하 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여 관련회계에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를 함에 있어서 세입조치하기 바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이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이 시정 - 부적정 시공 1건에 되어 있는데도, 대하여 ▲▲(주)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 안동대학교는 "체육관 강의실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조치하기 바람 (계약금액 3,963,136천원, 공사기간 : '16.7.4.~'17.12.27.)"를 추진하면서 당초 3m 높이로 설계된 증축동 1층 복도 의 천장공사 시공 중에 환기·오수·배수 등의 배관을 증축동에서 리모델링동으로 연결 처리하여야 하는 현장 사정에 따라 위 천장높이를 0.2m 부족한 2.8m로 시공하였음에도 관련된 벽면마감 공사비 1,017천원을 감액 조치하지 않는 등 【붙임】 "시설공사 시공 부 적정 현황"과 같이 위 증축동 천장높이 부족시공 등 5건의 부적정 시공에 대하여 재시공 요구(1건, 11,832 천원 상당) 또는 공사비 감액(4건, 1,658천원 상당)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시설공사 시공 부적정 현황

	계약잌	וא	N +1	7.7	N =) =)	-1 -		부적건	성 내역	조치 필	요 사항
공사명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 금액	계약 상대자	공종 (내용)	부적정 사유	당초 설계	실제 시공	부족 수량	공사 금액	재시공	회수
				도장공사 (다채무늬 도료)	증축동 복도	616 m²	583 m²	33 m²	703		$\sqrt{}$
				미장공사 (모르 타르)	증축동 복도 천장높이 부족 시공 (1층) 설계 3m, 시공 2.8m (2층) 설계 3m.	300 m²	<b>294</b> m²	6 m²	170		$\checkmark$
				수장공사 (석고 보드)	(2층) 설계 3m, 시공 2.9m	304 m²	<b>299</b> m²	5 m²	144		$\checkmark$
체육관 강의실	2016.04.27.		▲▲(주)	증축동 부	부도 천장공사 소계				1,017		
체육관 강의실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2016.07.04. 2017.12.27.	3,963,136	▲▲(주) 대표 BQ	목공사 (흡음 목재판)	대강의실 벽 마감 재료분리 부적정	109 m²	98 m²	<b>11</b> m²	641		$\checkmark$
				대강의실	벽면공사 소계				641		
				건축공사 (천장재등)	무용실 천장높이 부족 시공 (설계) 3.2m (시공) 3.0m	1식	1식	1식	11,832	<b>✓</b>	
				무용실 천	선장공사 소계				11,832		
합계				5건					13,490	재 / (1건,1 회 (4건,	1,832)   수

<sup>※</sup> 원가계산 기준 금액

기관명 : 안동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4	시설공사 감독 부적정	,
	<ul> <li>「건설기술진홍법」제4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 공사가 설계도서,계약서,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 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하며,공사감독자는 이에 따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5조에 따르면 공사 감독자는 공사감독일지 및 검측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는데도,</li> </ul>	
	- 안동대학교는 2017. 3. 10. ㈜●●(대표 BB)와 계약체결한 "체육관 강의실 증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2차, 계약금액 301,160천원, 공사기간 : '17.3. 10.~'18. 2. 28.)"를 추진하면서 공사감독일지 및 검측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붙임】"시설공사 공사감독일지 및 검측대장 미작성 현황"과 같이 2017. 3.부터 2019. 10.까지 추진한 총 6건의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일지 및 검측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붙임】

## 시설공사 공사감독일지 및 검측대장 미작성 현황

_									
연	공사명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	계약상	대자	작성 (○,	
번	6 7F 78	게 ㅋ ㅋ	선 6 원	七6日	금액	회사명	대표	공사 감독일지	검측 대장
1	체육관 강의실 증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2차)	2017.03.10.	2017.03.10.	2017.12.27.	301,160	-	ВВ	×	×
2	국제교류관 외 4개동 전등기구 교체공사	2017.09.21.	2017.09.29.	2017.12.21.	309,144	-	-	×	×
3	인재양성관 외 4개동 전등기구 교체공사	2017.09.21.	2017.09.29.	2017.12.21.	321,617	-	-	×	×
4	생활과학대 외 4개동 전등기구 교체공사	2017.09.21.	2017.09.29.	2017.12.21.	322,638	-	-	×	×
5	종합연구동 외 4개동 전등기구 교체공사	2017.09.21.	2017.09.29.	2017.12.21.	331,417	-	-	×	×
6	자연·생명과학 2호관 강의동 환경개선 및 기타공사	2019.07.10.	2019.07.11.	2019.10.28.	350,735	-	-	×	×
	계(6건)								

기관명: 안동대학교

여번 지 적 사 핤 처분 45 물품관리 부적정 「물품관리법」제19조, 제26조, 제30조, 제31조 및 제45조에 o 경고(42명)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연 1회 그 소관 물품에 대한 ㅇ 통보 - 물품의 실제현황과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재물조사의 보고서를 물품대장이 일치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되도록 물품을 관리하고, 분실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물품관리에 관한 물품에 대하여는 법령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물품관리법 사무에 종사하여야 하고, 물품은 항상 사용하거나 처분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 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국가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물품 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하고, 물품관리관 · 물품운용관 ·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사용공무원은 물품을 잃어버리 거나 훼손하면 변상할 책임을 져야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르면 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은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있는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재물조사 결과 허위작성에 관한 사항】------ ① - 안동대학교 ▼은 「2019년 재물조사 실시계획(안)」(총장 결재, '19.12.17.)에 따라 2020.1.2.부터 1.15.까지 ▷ ◆과의 재물조사를 실시하면서 소속 BC이 2009.9.4. 출납받은 노트북컴퓨터(취득부서:◆과, 취득일자:'09.9.4., 규격:삼성전자, CN/NT-R510-BA01G, Core2Duo P8600 2.4, 취득가액: 964천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사용자:BC)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물품이 존재	
	하는 것처럼 재물조사 결과를 작성하는 등 【붙임1】	
	"재물조사결과 허위작성 현황"과 같이 위 ☑ 및 ▶은	
	소속 교직원이 출납받은 위 노트북컴퓨터 등 총 22점의	
	물품에 대하여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물품이	
	존재하는 것처럼 재물조사 결과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	
	【물품분실에 관한 사항】 ②	
	- 위 BC은 출납받아 사용하던 노트북컴퓨터(취득부서:	
	◆과, 취득일자: '09.9.4., 규격: 삼성전자, CN/NT-R510-BA01G,	
	Core2Duo P8600 2.4, 취득가액:964천원) 1대를 일자 미상일	
	에 분실하였음에도 이를 물품관리관 등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붙임2】"물품 분실 미보고 현황"과 같이 위	
	BC 등 교직원 27명은 노트북컴퓨터 등 총 39점, 구입가	
	합계 53,998,020원의 물품을 분실하고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붙임1】

## 재물조사 결과 허위작성 현황

					1									인키, 펀)	
연	단과대학	취득	7 2	수	7 7) 71	당초	-1-1	취득	실제	장부상	재물	조사		물품관리	4
번	(학과)	일자	종류	량	규격명	보관장소	단가	가액	물품 현황	물품 현황	담당자	반장	물품 담당자	물품 운용관	분임물품 관리관
1	<b>▼</b> (◆과)	′09.09.04	노트북 컴퓨터	1	삼성전자, CN/NT-R5 10-BA01G, Core2Duo P8600 2.4	BC 교수 연구실	964,990	964,990	분실	존재	1	-	-	-	-
2	-	′07.06.16.	태블릿 컴퓨터	1	태블릿컴퓨터, LG전자, C1-52300N, Core Duo U2500(1.2GHz)	1	1,854,720	1,854,720	분실	존재	-	-	-	-	-
3	1	′09.09.04.	노트북 컴퓨터	1	노트북컴퓨터, 삼성전자, CN/NT-R510-BA01G, Core2Duo P8600 2.4	-	964,990	964,990	분실	존재	1	-	-	-	-
4	-	′07.06.26	태블릿 컴퓨터	1	LG전자, C1-52300N, Core Duo U2500 (1.2GHz)	-	1,854,720	1,854,720	분실	존재	-	-	-	-	-
5	-	′04.09.16	노트북 컴퓨터	1	노트북컴퓨터, 삼성 전자, SQ25RHZ000/ GOV, Pentium M LV 1.3GHz	-	1,716,080	1,716,080	분실	존재	-	-	-	-	-
6	-	′06.12.06	노트북 컴퓨터	1	삼성전자, NT-R45/C 171G, Pentium M 740 1.73GHz	-	1,159,200	1,159,200	분실	존재	-	-	-	-	-
7	-	′04.09.16	노트북 컵퓨터	1	삼성전자, SQ25RHZ0 00/GOV, Pentium M LV 1.3GHz	-	1,716,080	1,716,080	분실	존재	-	-	-	-	-

연	단과대학	취득		수		당초		취득	실제	장부상	재물	조사		물품관리	1
번	(학과)	일자	종류	량	규격명	5고 보관장소	가장소 단가 가약		물품 현황	물품 현황	담당자	반장	물품 담당자	물품 운용관	분임물품 관리관
8	-	′09.09.04.	노트북 컴퓨터	1	삼성전자, CN/NT-R5 10-BA01G, Core2Duo P8600 2.4	-	964,990	964,990	분실	존재	-	-	-	-	-
9	-	′04.09.16	노트북 컴퓨터	1	삼성전자, SP30DHZ0 00/GOV, Pentium M 1.5GHz	-	1,650,080	1,650,080	분실	존재	-	-	-	-	-
10	-	′04.09.16.	노트북 컴퓨터	1	삼성전자, SP30DHZ0 00/GOV, Pentium M 1.5GHz	-	1,650,080	1,650,080	분실	존재	-	-	-	-	-
11	-	′09.09.04.	노트북 컴퓨터	1	삼성전자, CN/NT-R 510-BA01G, Core2Duo P8600 2.4	-	964,990	964,990	분실	존재	-	-	-	-	-
12	-	′09.09.16.	노트북 컴퓨터	1	삼성전자, SQ25RHZ0 00/GOV, Pentium M LV 1.3GHz	-	1,716,080	1,716,080	분실	존재	-	-	-	-	-
13	-	′05.02.23.	노트북 컴퓨터	1	삼성전자, SQ25, Penti um M LV 1.3GHz	-	1,813,390	1,813,390	분실	존재	-	-	-	-	-
14	-	′15.10.29.	노트북 컴퓨터	1	HP, CN/HP probook 450 L9S62PA, Intel Core i7 5	-	1,200,000	1,200,000	분실	존재	-	-	-	-	-
15	-	′08.11.07.	노트북 컴퓨터	1	삼성전자, CN/NT-R5 10-AS241G, Core2Duo P8600 2.	-	998,490	998,490	분실	존재	-	-	-	-	-
16	-	′04.09.16.	노트북 컴퓨터	1	삼성전자, SP30DHZ0 00/GOV, Pentium M 1.5GHz	-	1,650,080	1,650,080	분실	존재	-	-	-	-	-

연	단과대학	취득		수	7-1-1	당초	2.2	취득	실제	장부상 	재물	조사		물품관리	]
번	(학과)	일자	종류	량	규격명	보관장소	단가	가액	물품 현황	물품 현황	담당자	반장	물품 담당자	물품 운용관	분임물품 관리관
17	-	′04.09.16.	노트북 컴퓨터	1	삼성전자, SP30DHZ0 00/GOV, Pentium M 1.5GHz	-	1,650,080	1,650,080	분실	존재	1	-	-	-	-
18	ı	′04.09.16.	노트북 컴퓨터	1	삼성전자, SQ25RHZ0 00/GOV, Pentium M LV 1.3GHz	-	1,716,080	1,716,080	분실	존재	ı	-	-	-	-
19	-	′09.12.30.	노트북 컴퓨터	1	삼성전자, CN/NT-R5 10-BA01G, Core2Duo P8600 2.4	-	964,990	964,990	분실	존재	-	-	-	-	-
20	-	′4.09.16.	노트북 컴퓨터	1	삼성전자, SP30DHZ0 00/GOV, Pentium M 1.5GHz	-	1,650,080	1,650,080	분실	존재	-	-	-	-	-
21	-	′04.09.16.	노트북 컴퓨터	1	삼성전자, SP30DHZ0 00/GOV, Pentium M 1.5GHz	-	1,650,080	1,650,080	분실	존재	1	-	-	-	-
22	-	′09.12.30.	노트북 컴퓨터	1	삼성전자, CN/NT-R5 10-BA01G, Core2Duo P8600 2.4	-	964,990	964,990	분실	존재	1	-	-	-	-
	합	계		22				31,435,260							

### 물품 분실 미보고 현황

연	학과	715 41 1	7.7	수	7 -1 -1	당초	-1.1	취득	분실
번	(물품사용자)	취득일자	종류	· 량	규격명	보관장소	단가	가액	일자
1	◆과 (교수 BC)	2009.09.04	노트북 컴뮤터	1	삼성전자, CN/NT -R510-BA01G, Cor e2Duo P8600 2.4	BC 교수 연구실	964,990	964,990	미상
2	-	2009.09.04.	노트북 컴퓨터	1	노트북컴퓨터, 삼 성전자, CN/NT-R 510-BA01G, Core2 Duo P8600 2.4	-	964,990	964,990	미상
3	-	2007.06.16.	태블릿 컴퓨터	1	태블릿컴퓨터, LG 전자, C1-52300N, Core Duo U2500 (1.2GHz)	-	1,854,720	1,854,720	미상
4	-	2007.06.26	태블릿 컴퓨터	1	LG전자, C1-5230 0N, Core Duo U2 500(1.2GHz)	-	1,854,720	1,854,720	미상
5	-	2004.09.16	노트북 컴퓨터	1	노트북컴퓨터, 삼 성전자, SQ25RHZ 000/GOV, Pentiu m M LV 1.3GHz	-	1,716,080	1,716,080	미상
6	-	2006.12.06	노트북 컴퓨터	1	삼성전자, NT-R45 /C171G, Pentium M 740 1.73GHz	-	1,159,200	1,159,200	미상
7	-	2004.09.16	노트북 컵퓨터	1	삼성전자, SQ25RH Z000/GOV, Penti um M LV 1.3GHz	-	1,716,080	1,716,080	미상
8	-	2009.09.04.	노트북 컴퓨터	1	삼성전자, CN/NT -R510-BA01G, Cor e2Duo P8600 2.4	-	964,990	964,990	미상
9	-	2004.09.16	노트북 컴퓨터	1	삼성전자, SP30DH Z000/GOV, Penti um M 1.5GHz	-	1,650,080	1,650,080	미상
10	-	2004.09.16.	노트북 컴퓨터	1	삼성전자, SP30DH Z000/GOV, Penti um M 1.5GHz	-	1,650,080	1,650,080	미상
11	-	2009.09.04.	노트북 컴퓨터	1	삼성전자, CN/N T-R510-BA01G, Co re2Duo P8600 2.4	-	964,990	964,990	미상
12	-	2009.09.16.	노트북 컴퓨터	1	삼성전자, SQ25RH Z000/GOV, Penti um M LV 1.3GHz	-	1,716,080	1,716,080	미상
13	-	2005.02.23.	노트북 컴퓨터	1	삼성전자, SQ25, P entium M LV 1.3 GHz	-	1,813,390	1,813,390	미상

연 번	학과 (물품사용자)	취득일자	종류	수 량	규격명	당초 보관장소	단가	취득 가액	분실 일자
14	-	2015.10.29.	노트북 컴퓨터	1	HP, CN/HP prob ook 450 L9S62PA, Intel Core i7 5	-	1,200,000	1,200,000	미상
15	-	2009.09.04.	노트북 컴퓨터	1	노트북컴퓨터, 삼 성전자, CN/NT-R 510-BA01G, Core2 Duo P8600 2.4	-	964,990	964,990	미상
16	-	2008.11.07.	노트북 컴퓨터	1	삼성전자, CN/NT -R510-AS241G, Co re2Duo P8600 2.	-	998,490	998,490	미상
17	-	2004.09.16.	노트북 컴퓨터	1	삼성전자, SP30DH Z000/GOV, Penti um M 1.5GHz	-	1,650,080	1,650,080	미상
18	-	2004.09.16.	노트북 컴퓨터	1	삼성전자, SP30DH Z000/GOV, Penti um M 1.5GHz	-	1,650,080	1,650,080	미상
19	-	2004.09.16.	노트북 컴퓨터	1	삼성전자, SQ25RH Z000/GOV, Penti um M LV 1.3GHz	-	1,716,080	1,716,080	미상
20	-	2009.12.30	노트북 컴퓨터	1	삼성전자, CN/NT -R510-BA01G, Cor e2Duo P8600 2.4G Hz	-	964,990	964,990	미상
21	-	2004.09.16.	노트북 컴퓨터	1	삼성전자, SP30DH Z000/GOV, Penti um M 1.5GHz	-	1,650,080	1,650,080	미상
22	-	2009.12.30.	노트북 컴퓨터	1	삼성전자, CN/NT -R510-BA01G, Cor e2Duo P8600 2.4	-	964,990	964,990	미상
23	-	2009.12.30.	노트북 컴퓨터	1	삼성전자, CN/NT -R510-BA01G, Cor e2Duo P8600 2.4	-	964,990	964,990	미상
24	-	2008.08.11.	노트북 컴퓨터	1	삼성전자, NT-Q45 /W240G, Core2 D uo T8300 2.4GHz	-	1,330,000	1,330,000	미상
25	-	2007.04.24.	노트북 컴퓨터	1	삼성전자, NT-R55 /W200G, Core2 D uo T7200(2.0GHz)	-	1,522,080	1,522,080	미상
26	-	2007.04.24.	노트북 컴퓨터	1	삼성전자, NT-R55 /W186G, Core2 D uo T5600(1.83GH z)	-	1,365,840	1,365,840	미상
27	-	2003.09.30.	노트북 컴퓨터	1	Toshiba, JP/Satelli te 5200, Pentium4 M 2.0GHz	-	2,940,000	2,940,000	미상
28	-	2007.03.19.	노트북 컴퓨터	1	LG전자, M1-P7200 MN, Core2 Duo T7200(2.0GHz)	-	1,804,320	1,804,320	미상

연 번	학과 (물품사용자)	취득일자	종류	수 량	규격명	당초 보관장소	단가	취득 가액	분실 일자
29	-	2012.09.21.	노트북 컴퓨터	1	삼성전자, CN/NT 202B5B-S03G, Intel Core i5 2520	-	949,400	949,400	미상
30	-	2009.12.14.	노트북 컴퓨터	1	삼성전자, NT-R52 2-AS31, Intel Core 2 Duo P8700(2.53 GHz)	-	1,900,000	1,900,000	미상
31	-	2009.12.14.	노트북 컴퓨터	1	삼성전자, NT-R52 0-PS53S, DualCore P8700 2.53GHz	-	1,650,000	1,650,000	미상
32	-	2013.06.12.	노트북 컴퓨터	1	삼성전자, CN/NT 550P7C-S03G, Inte l Core i7 3630QM (2.4GHz)	-	1,500,000	1,500,000	미상
33	-	2011.06.16.	노트북 컴퓨터	1	Dell, CN/Latitude 2120(P02T002), Int el Atom N455(1.6 6GHz)	-	750,000	750,000	미상
34	-	2010.12.17.	노트북 컴퓨터	1	Dell, CN/P09S001 (Vostro 3300/i543 332B7), Core i5 43 0M(2.26GHz)	-	1,200,000	1,200,000	미상
35	-	2009.11.09	노트북 컴퓨터	1	Apple Computer, CN/MacBook Pro MA897KH/A, Cor e2Duo(2.4GHz)	-	1,600,000	1,600,000	미상
36	-	2004.09.16	노트북 컴퓨터	1	삼성전자, SQ25, P entium M LV 1.3 GHz	-	1,716,080	1,716,080	미상
37	-	2007.11.14	노트북 컴퓨터	1	삼성전자, CN/NT 202B5B-S03G, Intel Core i5 2520	-	1,105,740	1,105,740	미상
38	-	2012.03.14	노트북 컴퓨터	1	삼성전자, NT-R20 /Y160G, Core2 D uo T5500 1.66GH	-	949,400	949,400	미상
	핝	계		38				53,998,020	

기관명 : 안동대학교

	명 : 안동내약과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6	소프트웨어 관리 부적정	
	○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제3조	ㅇ 경고(1명)
	제1항 및 제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의	ㅇ 주의(1명)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보 담당 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분기별로 소프트웨어의	
	관리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는데도,	
	- 안동대학교는 2019. 9. 16. OrCAD(R) PCB Designer Pro	
	fessional with PSpice(R) 5종(구입가액:16,913천원)을 구입	
	하고도 소프트웨어 관리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붙임】"소프트웨어 관리대장	
	및 설치 현황표 미작성 현황"과 같이 2019.9.16.부터	
	2020. 6. 23.까지 위 OrCAD(R) PCB Designer Professional	
	with PSpice(R) 등 총 2,218종(구입가 합계 : 211,681천원)	
	을 구입하여 설치하고도 소프트웨어 관리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붙임】

### 소프트웨어 관리대장 및 설치 현황표 미작성 현황

							(11. 11. 11.	
연			수량	단가	급액	작성 여부		
번	구입일	소프트웨어명				소프트웨어 관리대장	소프트웨어 설치현황표	
1	2019.09.16	OrCAD(R) PCB Designer Professional with PSpice(R)	5	3,382	16,913	×	×	
2	2019.11.01	STATA	1	1,445	1,445	×	×	
3	2020.03.01	Microsoft Windows Upgrade Academic Edition	578	102	58,956	×	×	
4	2020.03.01	한컴 오피스 CLA Level A	400	65	26,000	×	×	
5	2020.03.01	V3 Campus Pack	500	34	17,000	×	×	
6	2020.03.01	Adobe PhotoShop Academic Edition	500	107	53,500	×	×	
7	2020.05.25	SketchUpPro-2020-1	1	5,000	5,000	×	×	
8	2020.06.01	SPSS Statistics 26 Premium	200	67	13,400	×	×	
9	2020.06.11	Autodesk Revit LT 2021	1	6,110	6,110	×	×	
10	2020.06.22	Working Model 2D	31	297	9,207	×	×	
11	2020.06.23	OrCAD(R) PCB Designer Professional with PSpice(R)	1	4,150	4,150	×	×	
		계 (11종)	2,218		211,681			